



PART

V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 정부

제1절 서민을 우선하는 지역민생정책 추진

1.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역경제과 지방행정사무관 김 시 원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 초과한 시기에 도입된 제도로, 지역 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발굴·지정하여 서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격 수준, 위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하며, 음식점 뿐 아니라 이·미용, 세탁, 숙박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지정된 업소는 연 2회 일제정비와 분기별 현행화를 통해 사후관리를 받으며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및 관리 강화

2011년 약 2천여개소로 시작한 착한가격업소는 2024년 9,723개소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2024년에는 국민이 직접 저렴한 가격에 청결한 가게를 추천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공모를 처음 실시하여 전년 대비 2,551개 업소가 신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기존의 업주 신청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신뢰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표 5-1-1] 착한가격업소 증감 현황 및 지정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3년	'24.3월	증감	'24.6월	증감	'24.9월	증감	'24.12월	증감
	합계	7,172	7,226	54 ↑	7,716	490 ↑	8,757	1,041 ↑	9,723
합계	외식업								
	소계	한식	일식	중식	양식	기타			
9,723	7,378	5,836	144	573	164	661			
	개인서비스업								
	소계	세탁	이용	미용	목욕	숙박	기타		
	2,345	212	306	1,414	94	97	222		

지정 확대와 더불어, 업소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병행되었다. 착한가격업소 누리집(www.goodprice.go.kr)에 '업소정보 오류신고' 및 '소비자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소비자가 직접 가격 정보 오류나 이용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사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2) 국비 기반 맞춤형 지원 확대

2022년 9월 외식 물가가 9.0%까지 상승하면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2023년에 국비 15억원이 지원되었으며, 2024년에는 업소 수 증가에 따라 예산을 48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1곳당 평균 85만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지방공공요금 감면, 업소별 필요 물품 지원 등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2024년에는 배달료 지원사업이 새롭게 도입되어,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음식을 주문할 경우 2천원 할인쿠폰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용률을 높이고 업소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3) 민간 협력 기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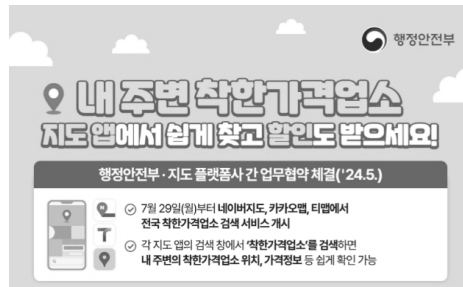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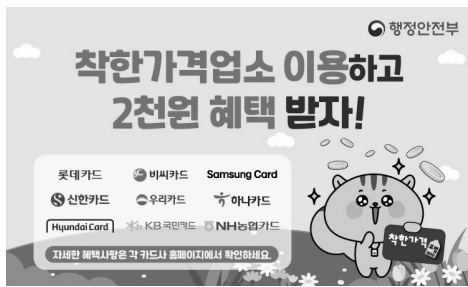
정부의 정책 지원 확대와 함께 민간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동참하였다.

카드사 할인 행사는 2023년 신한카드와의 협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24년에는 행정안전부와 9개 카드사 간 업무협약을 통해 전면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카드 결제시 1회당 2천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 유입 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주요 지도앱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여 착한가격업소 위치, 가격정보, 길찾기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림 5-1-1] 착한가격업소 카드결제 혜택 제공

[그림 5-1-2] 착한가격업소 지도검색 서비스 제공



아울러, KB금융그룹은 우수 착한가격업소 477개소를 KB마음가게로 선정하고, 2024년부터 3년간 매월 30만원, 총 1,08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협력하였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소를 우선 선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그림 5-1-3] KB마음가게 업무협약 및 현장 방문('24.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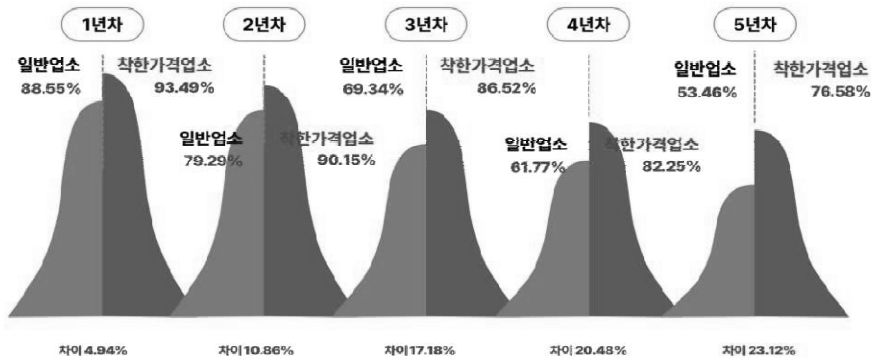


4) 착한가격업소 제도 정책효과 분석

착한가격업소의 정책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연구’도 추진하였다.

연구 결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일반 업소에 비해 1년 생존율이 4.9%p, 5년 생존율이 23.1%p로 높게 나타나, 정책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8개 품목 외식비 평균 가격은 일반 업소 대비 19.06% 낮았으며, 일부 품목은 12년 동안 동일 가격이 유지되어 지역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5-1-4] 착한가격업소 생존율 변화



※ 출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연구('24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이처럼 2024년에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지정 확대, 맞춤형 국비 지원, 민간 협력 강화 등 다방면에서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였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운영 내실화와 사후관리 강화에 집중하고, 업주 및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인식 제고와 이용률 향상을 위해 지자체 및 민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 지역금융 협력모델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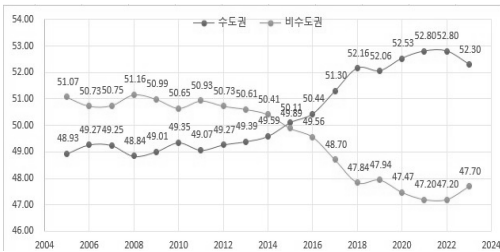
지역금융지원과 행정사무관 이 미 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 수도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1.8%를 차지하는 반면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4%, 생산량은 국내 총생산의 52.5%가 집중(2021년 기준)되어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2015년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GRDP :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을 추월하면서 심화되고 있으며 그 차이도 매년 증가해 왔다.

금융에 있어서도 2023년 기준 전금융기관 여·수신 규모는 수도권이 전체 비중의 60~70%를 차지하여 비수도권의 2배에 달한다.

[그림 5-1-5] '04년~'23년 수도권 GRDP 비율(%)**추이**



[표 5-1-2] 수도권, 비수도권 예대율 현황('23) (단위:조)

	수신(A)	여신(B)	여수신 비율(B/A)
전국	4,635	3,132	67.6%
서울	2,573	1,155	44.9%
경기	608	658	108.2%
인천	118	151	128.4%
수도권	3,299	1,964	59.5%
비수도권	1,336	1,168	87.4%
수도권 비중	71.2%	62.7%	

※ 출처: 국가통계포털, 지역금융기관 생태계 구축 방안연구('24년, 인하대 산학협력단)

이뿐만 아니라 지역 총생산 대비 지역 총소득 비율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지역으로 지속적인 자금의 역외 유출이 발생하고 있어 비수도권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표 5-1-3] 17개 시·도 역외유출율

구분	2015년 (조원)			2023년 (조원)		
	지역총생산	지역총소득	역외 유출율	지역총생산	지역총소득	역외 유출율
수도권	874	966	△10.5%	1,259	1,404	△11.5%
비수도권	869	785	9.7%	1,146	1,041	9.2%

※ 역외 유출율 : $\{(1 - (\text{지역내 소득} / \text{지역내 총생산}))\} \%$

이에 정부는 지역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금융 협력모델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금융 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금융 지원이 가능한 방안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자체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효과가 크다.

이에 우수한 지역 금융 협력사례를 발굴하여 타 지자체에 확산하고 지자체, 지역금융 등과의 협업을 통한 상생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 지원 사업은 전국 243개 지자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4월23일부터 5월22일까지 한달 간 신청을 접수했다.

사업 유형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①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②금융·직접 지원, ③금융·컨설팅 지원 등 총 3개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38개의 협력모델 사업계획이 추천되었다.

[표 5-1-4] 지역금융 협력모델 유형별 사업 예시

▶ 1유형 (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농민, 대학생 등 대상 보증 대출 사업(특례보증, 이차보전, 보증료 지원 등) • 신용대출 사업(소상공인 중금리 대출 등) • 지역금융기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시 발행수수료 면제
▶ 2유형 (금융·직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 정비를 위한 철거 및 자금 대출 지원 • 전통시장 편의 시설 정비 및 자영업자 금융 지원 • 착한가격업소 물품지원 및 카드결제시 환급 또는 배달료 캐시백 지원 등 • 걷기 챌린지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여 보증재단에 기탁, 취약계층 지원
▶ 3유형 (금융·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농부 대상 스마트팜 컨설팅 및 농업자금 금융 지원 • 시니어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 자금 금융 지원 • 지역커뮤니티 내 금융 교육 제공 및 지역활성화 자금 지원

심사 및 선정 절차는 2차례의 서면심사와 최종 발표심사 단계로 추진되었으며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1차 심사에서 10개의 집중 관리 모델을 선정하였다 집중관리 모델은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9월 27일 사업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그림5-1-6] 지역금융 협력모델 컨설팅단 운영('24.9.27.)



행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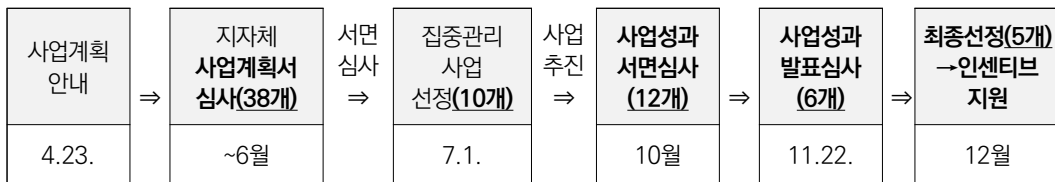
사업설명(지자체, 협력기관)

자문(컨설팅단)

10월에 치러진 2차 서면심사에서는 집중관리 모델외에 운영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사업의 효과성, 지속가능성, 지자체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12개의 사업모델을 선정하였다.

이후 11월 22일에 12개 사업모델을 대상으로 최종 6개의 모델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6개 모델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 10억원(특별교부세) 이 지급되었다.

[표 5-1-5] 협력모델 선정 절차



선정된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역금융 협력 최우수 지자체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고 최대 10년 간 장기 분할 상환제를 도입한 제주특별 자치도에 돌아갔다. 전국 최초로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제를 도입하고 최저 수준의 대출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우수 지자체는 ▲ 지역주도 미래성장 펀드를 운영한 ‘부산광역시’로 지역 운용사가 주도하여 지역 투자가 확대되도록 펀드 구조를 설계하여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 양방향(여신,수신) 이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광주광역시 북구’, ▲전국 최초 도-시·군 합동 소상공인 지원재원 조성을 의무화한 ‘전라남도’가 우수로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지역금융기관과 시가 1:1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조성한 경상북도 포항시가 장려로 선정되었다.

[그림5-1-기] 2024년 지역금융 협력 우수사례

2024년 지역금융협력 우수사례

최우수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氣살리기 프로젝트

전국 최초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제 도입
→ 소상공인 빚 부담 완화, 경영 안정화

- * 제주신보
- * 농협은행
- * 제주은행

우수 / 부산광역시 지역주도 '미래성장 벤처펀드'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지역 리그
 수도권 리그
 글로벌 리그

지역 운용사가 주도하여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70% 이상 투자

↓

지역 도중 투자기관 육성, 지역 유망기업 성장 지원

* 산업은행, 부산은행, 한국벤처투자 등

우수 / 광주북구 양방향(여신, 수신) 이자지원 서비스

민·관 이자지원 소상공인 우대적금

* 북구 새마을금고, 광주문화신협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대출지원

* 광주은행, 광주문화신협, 새마을금고, 광주신보

우수 / 전라남도 광역+기초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재원 조성 의무화

전국 최초 도(30억)+시군(30억) 소상공인 지원 재원 의무 출연제 도입

* 전라남도, 22개 기초자치단체, 전남신용보증재단

장려 / 경북 포항시 민·관 1:1 매칭 소상공인 지원재원 조성

포항시

- * iM뱅크
- * 포항새마을금고
- * 경북오전신협
- * 포항수협
- * 경북신보

금융기관 출연 의무화
→ 지원재원 2배 확보 효과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과 금융이 힘을 합칩니다!

행정안전부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이번 지역협력 우수사례 선발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경제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심을 갖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향후 더욱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융 지원 외에도 교육·컨설팅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다만 협력모델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효과적인 실행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역사회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이에 관련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홍보 및 확산에 관심을 기울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행안부 주도로 MOU 체결하는 등 안정적 장치를 마련해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3. 지역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지방계약 제도 개선

회계계약제도와 행정사무관 홍 성 권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건설업계·제조업체 등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 분야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2023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였다.

이와 함께,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방계약 차원의 대책도 함께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기술개발 지원 확대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은 일반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경우에 가능하나, 특정규격 자재는 순공사원가의 1%를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규격 자재 가격의 비중이 순공사원가의 1%를 초과하는 사례가 드물어 일부 품목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물가변동 적용 요건에 맞지 않아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특정규격 자재 가격의 비중을 순공사원가의 0.5% 초과로 확대하여 급격한 물가변동시 시의적 조정을 통해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기존에 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9종 이외에 녹색기술제품,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인증제품, 물산업 우수제품 등 4종의 품목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을 제한경쟁입찰 대상에 추가하였다.

2) 부실시공 방지 등 안전관리 강화

2023년 4월 인천의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 사고 등으로 인해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부실 감리업체에 대한 부정당제재를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부실시공을 한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최소 5개월에서 최대 13개월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였으나, 부실시공에 대한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업체에 대하여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4개월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였다.

이에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감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당한 시공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9개월까지로 강화하였다.

3)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연장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당초 종료될 예정이었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이후 다시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하였다.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였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물품·용역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하였으며,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었다.

또한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였다.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되어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속한 계약·집행이 가능하도록 유찰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를 하여야 하나, 계약제도 특례에 따라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표 5-1-6]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주요내용

구분	현행 규정	특례적용 시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	2.5% 이상
계약보증금	공사 : 계약금액의 15% 이상 물품·용역 : 계약금액의 10% 이상	공사 : 7.5% 이상 물품·용역 : 5% 이상
공사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의 40% 이상	20% 이상
수의계약 절차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검사기간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연장 7일	7일, 연장 3일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3일 이내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 완화와 수의계약 및 제한입찰 대상 확대는 지역의 영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감리업체에 대한 부정당제재 기준 강화는 안전한 공사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건설투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게 적정 공사비를 보전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에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혜택 강화 추진

지방세특례제도와 주무관 김성기
지방세특례제도와 주무관 조형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24년 주택의 매매거래량은 642,576건을 기록하였다. 지난 5년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거래량에 그치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증가한 것을 보면 그동안 침체되었던 주택시장이 다소 활성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택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가 심화되는 측면이 있었던 바,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에 거래가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표 5-1-7] 지역별 주택 거래량 및 증감율

구분	누계(1~12월)		
	거래량	전년동기비	5년 평균비
전국	642,576	15.8%	△22.8%
수도권	305,988	27.0%	△22.1%
서울	93,418	45.1%	△16.0%
비수도권	336,588	7.1%	△23.5%

출처: 주택통계(국토부)

[표 5-1-8] 주택 유형별 거래량 및 증감율

구분	누계(1~12월)		
	거래량	전년동기비	5년 평균비
전체	642,576	15.8%	△22.8%
아파트	492,052	19.5%	△13.9%
(수도권)	223,340	34.0%	△8.4%
(서울)	58,282	59.9%	9.1%
아파트외	150,524	5.1%	△42.3%

출처: 주택통계(국토부)

전국의 주택거래량은 전년대비 15.8% 증가하였는데, 이 중 수도권이 27%,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은 45.1%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비수도권의 주택 거래량 증가율은 7.1% 증가에 그쳐

V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 정부

수도권으로의 집중화가 두드러졌다. 특히 서울지역의 아파트는 거래량이 59.5% 증가하는 등 수도권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수도권 아파트의 거래 쏠림현상이 건축비용 증가 등과 맞물리다 보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비아파트)의 신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비아파트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서민의 주거환경이 불안정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어 서민층의 내 집 마련과 임차 주거환경 개선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전세 가격의 상승 및 월세로의 전환 가속화는 저소득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였다. 특히 서민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제 지원 정책을 강화하였다.

본 고에서는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상시거주를 위해 유상취득 하는 주택으로서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감면(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3조제2항)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해당 감면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 까지로 3년 연장하였다.

[표 5-1-9]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주요 내용

구분	종전	개정
서민주택 (40㎡ 이하, 1억원 미만)	☎ 100	☎ 100 (현행과 동일)

2) 소형 주택에 대한 감면 확대

1인·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맞춰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을 확대하였다.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12억원 이하 限)을 처음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이하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하는데, 소형 **非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 전용면적 60㎡이하, 취득가격 수도권6억원 비수도권3억원 이하인 다가구주택, 연립, ·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표 5-1-10] 소형 비아파트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 주요 내용

구분	종 전	개 정
생애최초 소형 非아파트 취득	₩ 100 (200만원 限)	₩ 100 (300만원 限)

역전세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매입하는 임차인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적용시 '소형·저가 임차주택'을 매입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보도록 하여, 추후 他 주택 취득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적용하는 소형·저가 임차주택은 임차인이 1년 이상 상시거주한 소형주택*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이다.

* 전용면적 60㎡이하, 취득가격 수도권3억원 비수도권2억원 이하인 다가구주택, 연립, ·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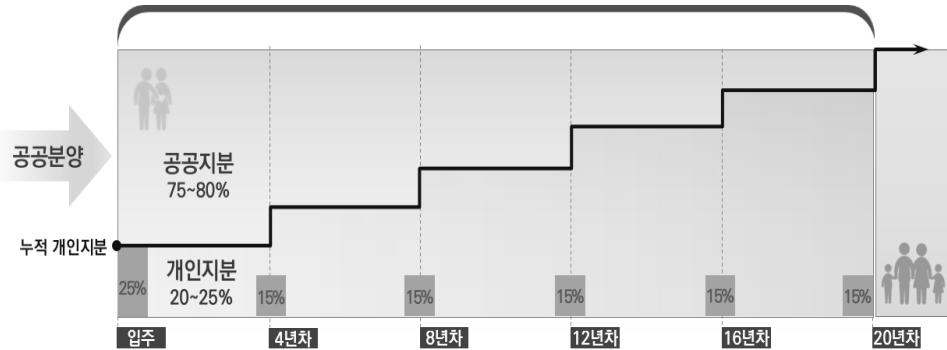
[표 5-1-11] 소형·저가 임차주택 매입 특례 주요 내용

구분	종 전	개 정
소형·저가 임차주택 매입 후	他주택 취득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대상X	他주택 취득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대상○

3)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신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초기 자금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가 도입되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 30년의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4 참조)이다.

[그림 5-1-8]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2021년 6월 10일 보도자료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참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개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을 신설하였는 바, 공공주택사업자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까지의 기간 동안 수 분양자와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의 25%를 감면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적립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 5-1-1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감면 신설 주요 내용

구분	종 전	개 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신설	☞ 25(3년간)

4)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

서민 주거안정 제고를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3년 연장하면서 감면 대상자를 지방주택공사까지 확대하였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 참조)으로, 종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한해 취득세 25%, 재산세 50% 감면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2024년에 동일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주택공사를 감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감면대상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를 합리화하였다.

[표 5-1-13]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 주요내용

구분	종 전	개 정
매입임대 주택 및 건축물	☞ 25, ☞ 50 (감면 적용 대상 : LH)	감면 연장 (감면 적용 대상 : LH+지방주택공사)

5) 공공주택사업자 매도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 연장 및 확대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등을 건축하여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임대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3년 연장하면서 감면율을 종전 10%에서 15%로 확대하였다. 또한, 감면대상자(건축주)의 범위를 부동산 취득 후 60일내 약정을 체결한 경우까지 확대하면서 감면 대상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주택, 임대형기숙사, 오피스텔)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표 5-1-14] 공공주택사업자 매도 약정 임대주택 감면 확대 주요 내용

구분	종 전	개 정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 ※ 주택 등 건축용 취득 부동산+신축 부동산	☞ 10	☞ 15

다. 평가 및 발전방안

본 고에서는 소형주택과 공공사업자에 대한 감면을 위주로 서술하였는데, 앞서 소개한 개정사항 외에도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취득세 최대 50%), 소형주택(비아파트) 신축에 대한 감면(취득세 최대 50%) 등 건축주에 대한 감면도 신설하여 미분양 주택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지원도 모색하였다.

[표 5-1-15]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현황

구분	'20.12	'21.12	'22.12	'23.12	'24.12
전국	12,006	7,449	7,518	10,857	21,480
수도권	1,245	601	1,292	2,167	4,251
비수도권	10,761	6,848	6,226	8,690	17,229

출처: 주택통계(국토부)

금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침체된 소형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공분양·임대주택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지방세 지원 대상의 기준과 범위를 더욱 세분화하여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특히 지역별 주택시장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세제 혜택을 결합한 포괄적 주거복지 로드맵 마련이 요구된다. 세제 혜택이 주택 공급 및 관리 정책과 연계되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정책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5. 출생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혜택 강화 추진

지방세특례제도와 주무관 김성기

지방세특례제도와 주무관 장은영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18년 0.98의 출산율로 최초 1명 미만의 출산율을 기록한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 극심한 저출생 현상을 보이고 있다.

* (합계출산율) ('19) 0.92 → ('20) 0.84 → ('21) 0.81 → ('22) 0.78 → ('23) 0.72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불균형은 향후 경제성장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출생 및 양육 비용 부담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특히 주택, 교육, 양육 비용 등 복합적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2024년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해당 대책에서는 ①일과 가정의 양립, ②교육 및 돌봄, ③주거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제시하였고, 세부 내용에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할인, 전기차 구매보조금 추가지원 등과 함께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와 더불어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 확대 등 출생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특례사항을 발굴하여 개정하였다. 본 고에서는 2024년에 개정된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23년에 개정하여 2024년에 시행된 출산가구 지원과 관련한 지방세 특례에 대하여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다자녀 양육용 차량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

자녀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육목적 자동차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종전에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을 양육하는 자의 차량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140만원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하고 있었다.

2024년에는 3자녀 양육자에 대한 감면을 3년 연장하면서 2자녀 양육자에 대한 감면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감면을 확대하도록 하면서, 18세 미만의 자녀 2인을 양육하는 자의 차량 1대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되,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7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표 5-1-16]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주요 내용

구분	종 전		개 정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	3자녀 이상	₩ 100 (6인승 이하, 140만 원)	3자녀 이상	₩ 100 (6인승 이하, 140만 원)
	2자녀	신 설	2자녀	₩ 50 (6인승 이하, 70만 원)

이번 개정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他 정책(다자녀 특별공급, 주택자금 대출, 세액공제 등)과의 일관성 및 지방 재정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3자녀 이상과 2자녀 양육자의 감면을 차등 지원토록 도입하였다.

2) 유치원·어린이집 감면 연장 및 확대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 및 저출산 대응 지원 등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감면을 3년 연장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였다.

종전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설치 의무대상*에 한정하여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2024년에는 모든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에 감면을 적용토록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을 또한 종전 취득세 50%에서 100%로 확대하였다.

*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영유아보육법 제10조 참조)

[표 5-1-17] 유치원·어린이집용 부동산 감면 연장 및 확대(어린이집) 주요 내용

구분	종 전		개 정	
어린이집	직영어린이집	☞ 100	직영어린이집	감면 연장
	대기업 위탁어린이집	☞ 50, ☞ 100	대기업 위탁어린이집	☞ 100
	중소기업 위탁어린이집	신 설	중소기업 위탁어린이집	☞ 100
유치원	☞ 100		감면 연장	

3) 출생가구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시행

2023년에 주택 취득비용 절감을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생 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다. 2024.1.1.부터 2025.12.31.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100%를 50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다만,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감면을 적용하며, 감면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

[표 5-1-18] 출생가구 주택 취득 감면 시행 주요 내용

구분	종 전	개 정
특례 신설 이후 출생하는 자녀의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	신설	취득세 100% (500만원 한도) ※ 최소납부세제 제외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전술한 바와 같이 범부처 차원에서 저출생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저출생 대책과 관련하여 다자녀·출생 가구,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육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약 43만 가구에 해당하는 3자녀 이상 양육 가구에 비해 2자녀 양육 가구는 약 220만가구로, 이는 금번 개정으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가 크게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 5-1-19] 미성년 자녀 양육 가구 통계('23년 기준)

구분	총계(가구수)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이상
전국	4,590,741	1,986,795	2,168,505	398,258	37,183

금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와 신생아 출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는 가족 단위의 이동 편의성을 높여 육아 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집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는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기업들의 육아 친화적인 근로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세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특히 육아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의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을 통해,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출산 친화적 사회 기반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추후 해당 감면의 일몰 도래시 감면 실적 분석을 통한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를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2절 | 취약계층 및 재난피해자 생활안전망 강화

1.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개선

복구지원과 주무관 박 대 영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그동안 자연재난 복구 지원 제도가 여러 차례의 개선 과정을 거치면서 지원 항목 및 범위 등이 다양해지고 지원 수준도 향상된 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부는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재난 피해 복구 지원체계 안정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와 심각성에 따라 피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의 재난 피해자에 대하여 일반재난지역에 제공하는 24개 항목의 간접지원 이외에 건강보험료, 통신·전기료 감면 등 13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추가 제공하고, 재난이 발생한 지자체의 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비 부담분 중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여 신속한 피해 수습·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 부는 이러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작동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 국고 추가분 = (총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 선포기준액) × 국고추가지원율(약 50~80%)

2020년에는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규정상 재난 종료 후 피해 조사를 실시 하게 되어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한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이와 같은 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기여하고 있다.

* 인명피해 42명(사망 39, 실종 3), 주택 피해 10,007동(전파 249, 반파 345, 침수 9,413) 등

- * 집중호우 3차례(우선 '20.8.7, 우선'20.8.13, 8.24), 태풍 2차례(우선'9.15, 9.23)
-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개정('21.2.24)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필요시 중앙합동조사 前 사전피해조사 실시 근거 마련

나. 추진내용 및 성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서, 재난이 종료되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선포 대상을 확정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선포되어 재난 종료 후 최종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는 통상 15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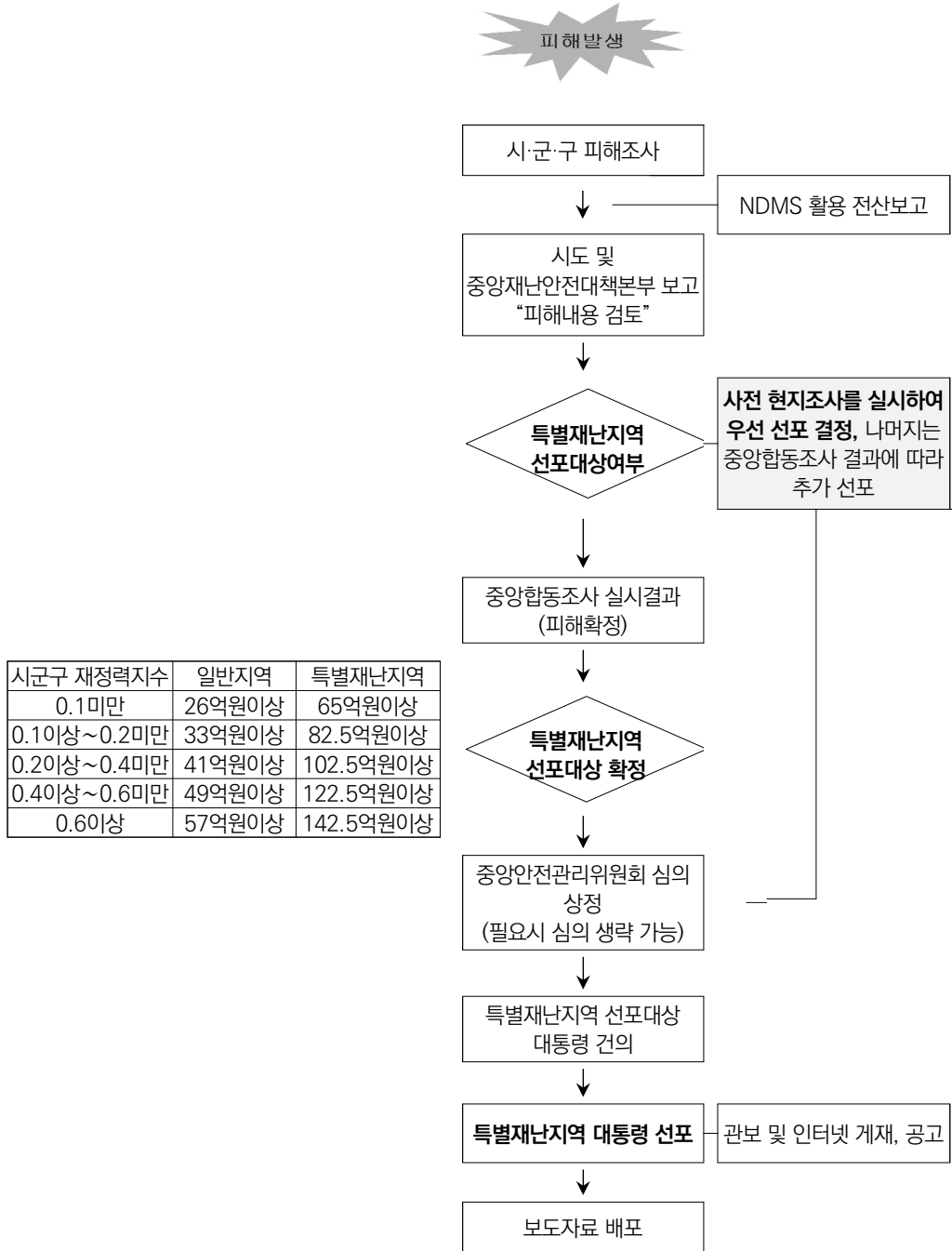
2024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에 대하여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심각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국무총리)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예외 절차를 마련하여 대규모 재난 시 피해지역의 조기 안정을 도모하였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표 5-2-1] '24년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연번	재난명	연도	기간	선포일자	선포지역
1	7.8.~19. 호우	2024	7.8.~19.	7.15.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안면
				7.25.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
				8.13.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
2	9.19.~21. 호우	2024	9.19.~21.	10.15.	전남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군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경남 창원시 웅동1동, 김해시 칠산서부동
3	11.26.~28. 대설·강풍·풍랑	2024	11.26.~28.	12.18.	경기 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안흥면·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표 5-2-2] 특별재난지역 선포 흐름도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절차 개선은, 보다 신속한 복구 체계를 정립하여 피해 주민들의 조기 일상 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이는 재난 피해지역의 조기 안정과 국가의 수습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개선 조치가 대규모 피해를 입은 피해지역의 신속한 재난 피해 복구지원과 지역사회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 부는 재난 복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국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개선

재난구호와 주무관 우수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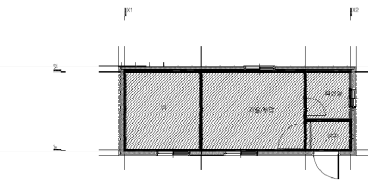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재난 발생 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학교, 체육관, 연수·숙박시설 등 다양한 임시주거시설이 제공된다. 그중 자가복구(재건, 신축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주거 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산사태 등으로 자기 소유의 주택이 매몰·파괴되어 인근 마을 등에 무상 또는 전·월세 등의 형태로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에 제공되었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2인 기준으로서 약 7평의 기본동이 제공되며, 4명 이상인 가구에 1동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기본형에 다양한 형태의 모듈을 추가할 수 있도록 이재민 맞춤형 임시주거시설 제공을 검토하게 되었다.

[그림 5-2-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평면도 및 투시도



층	실명	산출근거	면적
1층	방	2.700x2.800	7.56㎡
1층	거실/침실	3.700x2.800	10.36㎡
1층	화장실	1.600x1.734	2.77㎡
1층	합계	1.600x1.566	1.7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기본형 표준설계도서



실내투시도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점검 및 자치단체 설명회 개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개선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과거 산불, 호우 등으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 제공된 경북 울진군·예천군, 강원 강릉시 등 현장점검을 6차례 실시하여 현장의 불편사항을 청취하였다. 주요 불편사항으로는 가구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공간이 다소 협소하다는 의견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 제공되는 곳이 주로 농촌임을 고려할 때, 농기구 등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아울러, 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2회 개최하여 주요 행정사항과 함께 해당 불편사항 등을 전달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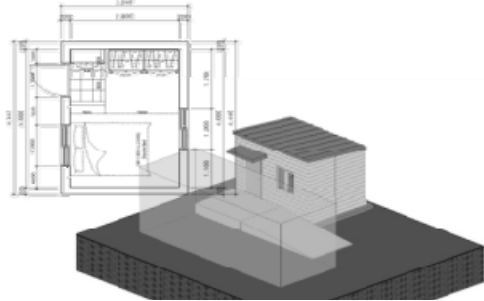
2) 신규 모델 개발 및 적정 단가 산출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모델(부속동)을 개발하고, 표준설계도서 인정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를 통해 이재민 편의성 및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부속동 형태 및 본동과 부속동의 배치를 조정하는 등 보완·수정 과정을 거쳤고, 4가지의 부속동 제공 형태(방2+다용도실1, 방1, 창고1, 방1+창고)를 개발·심의하였으며, 최종 심의 후 국토부 신청을 통해 표준설계도서로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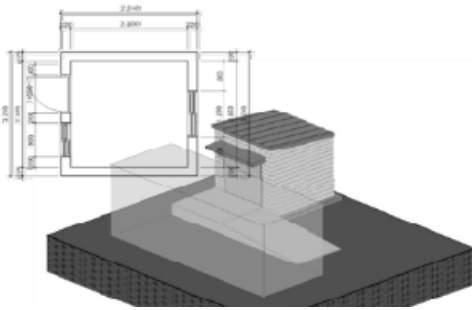
[그림 5-2-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신규모델(추가되는 부속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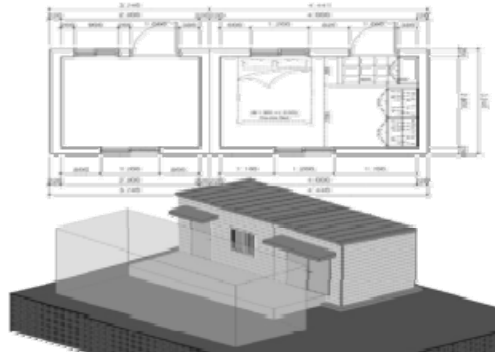
부속동1(방2개+다용도실 1개 추가)
크기: 3m×3m, 실면적:7.8㎡



부속동2(방 1개 추가)
크기: 3m×4.2m, 실면적:11.2㎡



부속동3(창고 1개 추가)
크기: 3m×7.5m, 실면적:19㎡



결합형(방1개+창고 1개 추가)
크기: 3m×8.2m, 실면적:22.4㎡

또한 신규모델 제작·설치 단가(지자체 복구계획 수립 시 적용 단가) 산출을 위하여 지침상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공급모델별 견적가격을 조사하고, 전문가 및 지자체를 포함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한 달 생산 가능량 10동 이상, 10동 제작 소요일 30일 이하

이때, 기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단가가 2022년도에 산정되어 그간의 원가 상승으로 기존 단가로는 추후 제작·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 단가산정기관(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의 원가 산정 결과(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인상)를 바탕으로 기재부 협의를 거쳐 본동의 단가도 인상하여, 각 형태별 단가를 확정지었다.

[표 5-2-3]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단가

품 목	단가(원)
본동	44,000,000
부속동3(창고 1개)	6,000,000
부속동2(방 1개)	24,000,000
결합형(창고 1개+방 1개)	30,000,000
부속동1(본동 + 방 2개 + 다용도실 1개)	40,000,000

3)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지침 개정

이와 같이 구성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신규모델과 단가가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신규 형태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재부 등 관계기관 의견조화와 행정예고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표 5-2-4]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형태별 지원 기준

1) 본동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기본 1동 제공, 4인 이상인 경우 추가로 1동 제공(부속동 1로 대체 가능)
2) 부속동 1	세대원 4인 이상인 경우 추가 제공하는 것으로 입주자가 본동 1동 추가 제공 대신 해당 형태로 제공받길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3) 부속동 2	세대원 3인인 경우 추가 제공하는 것으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4) 부속동 3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시설 및 구호약자에게 필요한 보조기구·장비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입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제공하는 것으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5) 결합형	세대원 3인이면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시설 및 구호약자에게 필요한 보조기구·장비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입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제공하는 것으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6) 그 밖의 사항	부속동 1을 지원할 경우 부속동 2, 3, 결합형은 함께 제공될 수 없음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재난형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의 피해 정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 속에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제공 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이재민 맞춤형 주거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보다 향상된 이재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외에도 행정안전부는 주거지 피해를 입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독립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연수시설·민간숙박시설이나, 재난 시 즉시 활용이 용이한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을 사전에 임시주거시설로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PART

VI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 정부**

제1절 연대와 나눔으로 성숙한 지역사회 조성

1. 범국민 나눔운동(‘온기나눔’) 추진

민간협력과 주무관 권 민 서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우리사회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단적인 기후변화 현상(폭염·혹한), 각종 재난·재해로 인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로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서로가 돕는 국가적 나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고 다양한 계층의 일상적인 자원봉사 참여 및 자원봉사 영역 확장을 위하여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중인 자원봉사·기부활동을 공동의 슬로건 아래 범국민적 활동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나눔·봉사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 등을 펼치고, 지자체·민간과 업무협약을 맺어 대국민 통합·나눔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시기별「온기나눔 캠페인」집중기간 운영 및 다양한 홍보 활동 추진

행정안전부는 캠페인이 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기부·자선단체,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민·관협의체인 범국민 및 지역별 추진본부를 구성·운영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온기나눔 캠페인의 취지를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유명인 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된 홍보영상을 배포하고, 기업과 연계하여 ‘온기나눔’이 부착된 물품을 배포하거나 자원봉사 경험을 나누면서 나눔·봉사 문화 확산을 도모하였고, 이에 「온기나눔 캠페인」의 공익성 및 효과성 등을 평가받아 매경미디어그룹이 주관하는 ‘2024 국가대표브랜드’를 수상할 수 있었다.

[그림 6-1-1] 「온기나눔 캠페인」매일경제 주관 국가대표브랜드 공익정책부문 대상 수상(4.25.)



온기나눔 슬로건

홍보영상(쓰양)

국가대표브랜드 大賞 수상(4.25.)

시기별 특성에 맞추어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상생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과의 지속적 소통으로 온기를 나누고 지역공동체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에 지역사회 곳곳에 자원봉사자 총 619,000명이 참여하여 10,503건의 따뜻한 손길을 펼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표 6-1-1] 맞춤형 집중기간 운영

[겨울철 집중기간] (12.5.~2.29.)	복지시설 방문, 취약계층 릴레이 봉사, 겨울나기 키트 제작·지원 등 *총 2,337건, 98,433명 참여
[봄철 집중기간] (4.15.~6.15.)	봄맞이 쾌적한 환경 만들기, 축제·행사와 함께 나눔 즐기기, 농촌 일손돕기 등 *총 4,169건, 238,054명 참여
[여름철 집중기간] (7.1.~9.30.)	여름철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집중호우, 폭염, 태풍 등 예방 및 지원활동 *총 2,664건, 217,989명 참여
[추석맞이 집중기간] (9.4.~9.13.)	주변 이웃과 명절 온기 나누기, 안전한 명절 연휴 즐기기, 미담 알리기 등 *총 1,333건, 64,730명 참여

2) 지역단위 「스케일업(Scale-up) 프로젝트」전개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를 통해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자본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자원봉사센터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스케일업(Scale-up: 지역 문제해결력을 키우고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주민(외국인, 귀농·귀촌인 등)과 주민의 관계형성을 통해 환영하고 수용하는 지역문화를 정착하고 ①관계개선), 비어있는 공간을 지역활력 거점으로 정비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고 ②빈집활용), 타지역민의 방문과 인구 유입을 유도 ③볼런투어 Voluntour/자원봉사여행:여행과 자원봉사를 결합한 신조어)하는 등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및 자원을 활용하여 5가지 사례를 발굴하였다.

[표 6-1-2] 지역사회 활력증진 자원봉사 지원

구분	유형	센터명	주요 사업 내용
1	관계개선	충북 제천시	- 고려인 동포 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지속적 활동과 상생의 공동경험 - 인구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이주민을 환대하는 지역의 문화 형성
2		충남 태안군	- 이주민의 역이주 예방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자원봉사 '관계안내인'을 양성 - 원주민과의 관계 형성 및 봉사활동 참여로 공동체 의식 및 소속감 증대를 통한 마을 정착 모델 개발
3	공간활용	전북 고창군	-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정비를 통해 쾌적한 마을환경과 활력증진 - 서비스 제공 지역 내 기관들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정책 및 사업과 연계하여 프로젝트의 확장
4	볼런투어	경북 의성군	- 지역주민, 청년 자원이 함께 하는 체류형 볼런투어를 통해 관계인구 역할과 정주 가능성 증대 - 단순 농촌 봉사활동이 아닌 특색있는 봉사활동 콘텐츠 개발로 타지역의 봉사단과 지역 주민의 관계 형성에 기여
5		경남 하동군	- 하동지역 계절 맞춤형 연합봉사활동 및 마을활동가와 함께하는 밀착형 소그룹 활동 - 지역 기반의 다양한 기관, 단체 네트워크를 통한 기획으로 프로젝트 추진의 효율성 향상

다. 평가 및 발전방안

행정안전부는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자발적 노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자원봉사가 국가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지역 봉사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소외된 이웃,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게된 이웃들에게 작은 배려, 연대의 씨앗을 심는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고 지방소멸·고령화 등 당면한 지역문제 해결에도 기여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5개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거점으로 나눔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며,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모델을 개발하고 자원활동가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자원봉사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2. 자원봉사 활성화

민간협력과 행정사무관 심 규 동

가. 추진 배경 및 개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자원봉사법)은 시민사회 성숙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이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확대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2006년 제정되었다.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의 증가, 초고령화 및 저출생, 지방 소멸 등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시민 활동의 참여 동기가 단순한 이타적 동기에서 자기 성장적 동기로 변화하는 등 내·외부적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이에 맞는 자원봉사 활성화의 기반 구축, 자원봉사자 인정·예우 강화 등 관리, 1365자원봉사포털의 운영 및 개선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행정안전부는 제4차 자원봉사 진흥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바탕으로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발맞춘 2024년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문제 발굴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형 자원봉사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자원봉사 참여영역을 확장하고,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 연계를 통해 봉사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였다.

내·외부적 환경 변화에 발 맞춘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해당 연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자원봉사법 개정 전담(TF)를 구성·운영하여 민간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 자원봉사 시스템 및 정책 기반 강화 등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국내·외 보고서·연구논문·통계자료 등 분석, 정책영역별 FGI 및 설문조사, 전문가 면담 등

아울러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량 및 사회적 위상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직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연구하는 한편, 자원봉사관리자를 전문 직업군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 관리'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위한 워크숍에 지속 참여하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개정 시 '자원봉사관리원'을 직업으로 등재하는데 협의하였다.

2) 1365자원봉사포털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 추진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1365자원봉사포털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정부·민간의 나눔시스템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기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365자원봉사포털과 타 나눔시스템 간 연계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장학사업 대상자에 대한 봉사활동 실적 정보가 수기 서류 확인으로 관리되던 것을 1365 자원봉사포털의 실적 정보 연계로 개선하여 업무 효율 및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방지를 위해 장기 미사용자 회원정보 정비 및 분기별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성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개인 자원봉사자들이 손쉽게 자신의 취향·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활동에 접근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활용도가 높은 자원봉사 신청 및 조회 서비스를 민간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방 사업을 추진하였다. 민간 서비스 개방을 위해 삼성월렛,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함께 자원봉사와 기부·자선 활성화를 위한 민·관 시스템 연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3) 자원봉사자 인정·예우 등 관리 강화 및 자원봉사 홍보를 통한 문화 확산

매년 대한민국자원봉사 대상*을 운영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들을 인정·예우하여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해오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청년' 분야를 별도로 신설하여 공적기간이 아닌 자원봉사 확산·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포상하여 청년 세대의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 (규모) 총 246점 (훈·포장, 대통령·총리표창 등 70점, 장관표창 176점)

자원봉사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대회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V'를 지원하여 새롭고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사례가 공유 및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부터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종합보험을 지속 추진·운영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 부담을 완화하였고, 사고 유형별 안전수칙 등 사전 예방교육 및 안전 컨설팅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자원봉사대회' (세계자원봉사협의회 주최)에서 정책부스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자원봉사 현황(K-Volunteer), 「온기나눔 캠페인」, 1365 자원봉사 시스템, 자원봉사 종합보험을 전 세계에서 참여한 자원봉사 관계자들에게 안내하고 홍보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절반이 넘게 감소한 자원봉사자 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1365 자원봉사포털 운영·개선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2022년부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 나가고자 다양해지고 있는 자원봉사 수요에 맞추어 전문 기술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일감을 발굴하고,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매칭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새롭고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일감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공모전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자원봉사 활동 인원) '22년 191만명 → '23년 208만명 → '24년 219만명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합당한 인정과 예우를 위해 자원봉사시간의 인증방식을 다양화·정교화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UN이 지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이하여 더 많은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3. 기부 투명성 제고 및 기부 문화 확산

민간협력과 행정사무관 정 희 원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법에서는 민간의 자율적 기부행위에 대해 모집등록과 결과 보고, 정보공개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등 공공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자연재해, 각종 사회문제가 지속되면서, 기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비대면 모금과 온라인 기부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변화된 기부 환경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부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 기부금품법 및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기부금품법 개정

기부금품법은 1949년「기부통제법」을 시작으로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51년)」,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95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06년)」으로 발전해 왔으며, 2024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이는 약 20년만의 개정으로, 기존의 통제·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법률 명칭뿐만 아니라 목적에도 기부문화 활성화를 명시하여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신설하고,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기부의 날’, ‘기부주간’ 및 ‘포상’ 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부금품의 범위를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대통령령으로 규정) 등으로 확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에 최근 일반화된 온라인에서의 기부금품 모집을 반영하여 ‘정보통신망’을 추가함으로써 실제 기부 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수단을 제도에 반영하였다.

한편,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사용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고, 모집자의 성명, 소관 등록청, 모집목적, 모집비용 비율 등 정보를 기부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영수증 발급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내역을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부금품이 목적에 따라 조속히 사용되도록 사용기한을 2년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기부금법 시행령 개정

2024년 7월에는 개정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부금품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먼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금전과 물품 외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양도가 가능한 상장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 유가 증권을 기부금품 범위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기부 목적 범위에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대응 등을 추가하여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의 해결·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부의 날 및 기부 주간에 국가, 지자체 등이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부금품은 공개장소에서의 접수가 원칙이나 접수 경로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계좌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ARS 및 우편·택배를 통한 접수방법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모집자가 모집등록 신청 및 모집·사용 결과보고 등을 등록청에 제출하거나 기부 통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모집자 및 등록청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부금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집목표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추가하여 기부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 및 정보공개 등을 위해 구축·운영하는 기부통합 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자료요청 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3)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기부금품법에서는 민간의 기부 활동 외에도 국가 등의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기부금품법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국가, 지자체 등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는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일 수 있음을 경계하여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한 경우,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 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접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기관의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가부 심의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는 14개 기관에서 총 17건의 기탁금품에 대한 심의 요청이 있었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7건의 기탁물품에 대해 이해관계 여부, 자발성, 행정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16건의 기탁물품의 접수를 가결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기부금품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고 그동안 통제·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기부문화 활성화의 큰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앞으로는 개정 법령의 현장 안착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등록청과 모집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모집된 기부금품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명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모집비용 충당비율에 대한 적정기준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기부금품 모집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또한, 유사 제도 간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 및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향후에도 모집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제2절 시대·지역을 아우르는 국민대통합 가치 확산

1. 제22대 총선 공명선거 지원

선거회차지법규과 주무관 류 현 정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공정하게 선출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과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의하여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을 구성하고, 그들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고, 정부도 각종 공직선거가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선거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선거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가 더욱 공정하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일부 단체, 유튜브 등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있었고, 사전투표소로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된 불법카메라가 모두 철거되기도 하였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더욱 많은 공무원이 선거사무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였고, 선관위에서도 정부에 투표표 사무 인력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으로는 과중한 선거사무 대비 낮은 보상 등으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표 6-2-1] 선거개요 및 결과

- 선거일시 : '24. 4. 10.(수), 06:00~18:00
※ 사전투표 : 4.5.(금) ~ 6.(토), 매일 06:00~18:00
- 선출대상 : 국회의원 300명(지역 254, 비례 46),
※ 재보궐선거 : 45명(기초단체장 2, 광역의원 17, 기초의원 26)
- 선거인 수 : 44,280,011명(제21대 총선 대비 285,764명 증가)
- 후보자 등록 현황 : 총 952명 ※ 경쟁률 3.2 : 1
- 투표결과 ※ 투표율 : 67.0%(44,280,011명 중 29,654,450명 투표)
 -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161명, 국민의힘 90명, 개혁신당 1명, 새로운미래 1명, 진보당 1명
 - 비례대표 : 국민의미래 18명, 더불어민주당연합 14명,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 2명

1) 공명선거 지원 협조체제 구축

행정안전부는 2024년 1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명선거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해당 계획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명선거 지원 협조체제 구축, △법정선거사무의 엄정 수행,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 적극전개 등의 중점과제로 구성되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매 선거마다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국무총리실,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2023년 12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 과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제22대 총선 관련 협조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24. 3.28.) 참석,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선거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공명선거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대내적으로는 자치분권국장을 단장으로 한 공명선거지원대책추진단³⁾을 구성하여 공명선거 관련 부서별 소관 업무(선거인명부 작성 지원, 국민운동단체 등 선거 중립, 지방자치단체 행사성 경비 집행 관리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을 논의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만전을 기하였다.

3)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주민과, 민간협력과, 새마을발전협력과, 공무원단체과, 복무감찰담당관, 회계제도과로 구성

2024년 1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4개월 간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관계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선거기간 사건·사고 대응, 투·개표소 설치 및 인력 운영 등 선거 지원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였다.

2) 법정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수행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 관련 각종 공보물 및 안내문 발송 등의 법정선거사무를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법정선거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제22대 총선의 준비를 위해 재외선거 업무편람('23.12.28.), 공직선거 업무편람('24.2.8.) 등의 책자를 제작·배포하였고, 2~3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 공무원 약 7,800명을 대상으로 10개 권역을 순회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6-2-2] 자치단체 선거담당공무원 교육 개요

- 기간 : '24. 2. 15.(목) ~ 3. 8.(금)
- 대상 : 선거·전산·결격사유 담당자 약 7,800명
- 주요내용
 -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처리 및 프로그램 운용 요령
 - 선거중립 및 선거 관여행위 금지, 사건·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등

3)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책자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24.1.19.)하였고, 공무원 선거중립 교육('24.2.7.)을 실시하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계기로 장관 명의의 서한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발송('24.2.6.)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합동감찰반을 편성·운영('23.12. ~ '24.4.9.)하여 선거기간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매진하였다.

4)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전개

높은 투표율은 선거에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법정 선거사무 일정에 맞춰 공무원의 선거 중립, 투표 참여의 중요성, 투표 참여 절차 등의 내용을 카드뉴스, 웹툰, 홍보영상, 포스터 등으로 제작하여 SNS 등을 통해 공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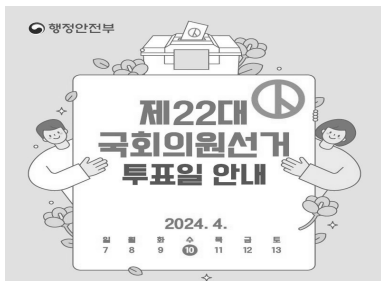
2024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양 부처는 담화문을 통해 정부가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히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새롭게 도입되고 개선된 절차를 소개하였다. 또한 가짜뉴스, 허위선동, 후보자 등을 상대로한 선거폭력 등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 표명과 함께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였다.

[그림 6-2-1] 홍보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포스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리플릿



카드뉴스



웹툰



홍보영상(투표안내)



홍보영상(공무원 선거중립)

5) 공명선거를 위한 조치 및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 점검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투개표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늘렸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였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국민의 참정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처음으로 관외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전 과정에 경찰이 호송하도록 하였다.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하여 사전투표지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였고, 국민들의 전산망 해킹에 대한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안 조치를 완료하였다.

개표 과정에는 기계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직접 손으로 투표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한층 더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유튜버가 사전투표소로 예상되는 장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여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2024년 3월 2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투표소를 긴급 점검(총 26곳에서 불법카메라 의심 장비 발견)하는 등 국민적 부정선거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투표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을 개정(24.3.)하여 투표사무원의 수당을 6만원에서 9만원으로, 개표사무원의 수당을 6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각각 인상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24.4.)하여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에게 1일의 휴무를 부여하고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일의 휴무를 추가로 부여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은 67.0%로 1992년 이후 치러진 총선 중 최고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31.3%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은 역대 사전투표율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⁴⁾였다. 이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력을 다하였다. 그 결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또한 선거사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지방공무원이 선거사무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실제 선거사무에 종사하게 되는 지방공무원들은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휴무 제공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공직선거가 차질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사회통합지원과 시설사무관 엄 수 빈

가. 추진배경 및 개요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은 분단, 전쟁, 권위주의 정권의 독재를 경험했지만, 이러한 질곡을 딛고 지속적인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루어왔다. 부침은 있었지만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성취를 보여주었다. 많은 고통과 희생이 수반되었지만,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국내뿐만 아니라 민주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아울러 한국 민주화운동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 민주주의 랜드마크’인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건립 준공하였다.

4) 2024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은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36.9%이고 2025년 실시된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율 34.7%를 포함하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세 번째로 높은 기록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

정부는 과거 국가폭력과 인권탄압의 상징이었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시설 관리권을 경찰청(인권센터로 사용)으로부터 2018년 12월 이관받아 과거를 기억하고 민주정신을 계승하는 기념관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한 후, 신관 건립공사와 옛 대공분실 리모델링을 추진하였다.

2019년 9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신관 건립 규모를 산정(6,660㎡)하고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2019년 12월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당선작은 '역사를 마주하는 낮은 시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존 건축물(대공분실)과 부지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주요 전시시설을 지하에 조성하는 안을 선보였다.

2021년 6월 신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뜬 후, 2024년 9월 건립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옛 대공분실은 2022년 6월부터 구조·내진보강을 시작하여 2024년 9월 전시공간 리모델링을 완료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이 민주화의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고 민주화를 넘어 평화와 인권을 포괄할 수 있는 세계적인 연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전시내용을 수정 및 세부적인 보완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림 6-2-2] 신관으로 내려가는 중앙계단



[그림 6-2-3] 교육동 및 민주광장



2) 민주화운동기념관 전시내용

새로 건립된 신관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한 대표적 11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LED 화면에 입체적으로 전시할 예정이다.

※ 11개 주요 민주화운동 :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인천5·3민주항쟁, 6·10민주항쟁

[그림 6-2-4] 신관 전시실 내부



[그림 6-2-5] 특별도슨트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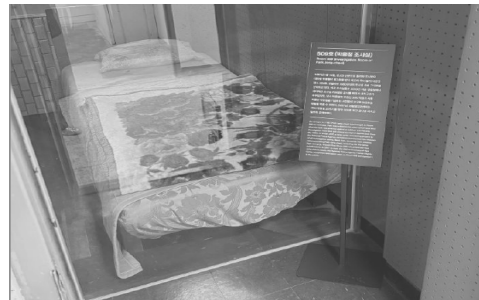


고문·조작 등 각종 불법행위가 있었던 옛 대공분실 구관은 1970~80년대 분위기를 재현하고 5층 박종철 열사 조사실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구관은 건물 전체를 감싸는 Soundscape 음향 효과(철길 위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 나선형 철제 계단 올라가는 소리 등)를 통해 옛 대공분실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 중이다.

[그림 6-2-6] 구관 전시실



[그림 6-2-7] 509호 박종철 열사 조사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정부는 2025년 6·10민주항쟁 기념식과 연계하여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주화운동기념관이 민주화의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고 민주화를 넘어 평화와 인권을 포괄할 수 있는 세계적인 연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사회통합지원과 행정사무관 황 유 경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그간 국가폭력 사건들의 진상규명과 보상에 관한 개별법이 시행되어 보상이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지만,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 지원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가폭력, 적대세력,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자 2024년 7월 1일 광주와 제주에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를 출범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준공

정부는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부지 선정을 위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접수하고 현장실사, 심사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광주광역시(옛 국군광주병원 부지)를 최적의 대상지로 결정하였다. 이후 현상설계공모를 실시하여 2021년 12월 당선작을 선정하였는데, 당선작은 숲과 소통하고,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을 조성하는 안을 선보였으며, 총사업비 107억원을 투입하여 2023년 1월 착공하였으며, 연면적 2,200㎡ 규모(지상 3층, 지하 1층)로 2024년 4월에 준공하였다.

[그림 6-2-8]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외관



[그림 6-2-9]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중정



2)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공식 출범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광주 뿐만 아니라 4·3사건의 피해자가 많은 제주도에서 치유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2023년 2월 제주에도 치유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광주와 제주에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공식 출범(‘24.7.1.) 하였다.

[그림 6-2-10]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그림 6-2-11]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에 앞서, 2024년 3월 창립이사회를 개최하여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을 위한 핵심 규정 및 규칙을 의결하였고, 공식 출범 전 준비사항 등에 대한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또한, 2024년 5월에는 광주와 제주에서 개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24년 5월 10일 광주, 5월 13일 제주에서 각각 설명회를 가졌으며, 직원 채용 일정, 시스템 정비 일정 등을 알리고, 2024년 7월에 출범하는 치유센터의 시설과 치유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다.

[그림 6-2-12] 개관 현판식



[그림 6-2-13] 개관식 기념사



3)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치유 서비스 지원

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이전에 시범적으로 제공되던 치유 및 재활 서비스(심리 상담 및 신체재활 프로그램)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치유·재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광주센터에서는 광주 외 지역에서 300건의 집단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5·18 성폭력 피해자 자조 모임 “열매”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요리 치유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제주센터는 방문치유팀을 신설해 2,553건의 찾아가는 치유 서비스를 실시하고,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의 치유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양 센터는 치유 대상자 추가 발굴(15회)과 신규회원 등록(233명) 등 대상자 확대에도 힘썼다.

[그림 6-2-14] 5.18성폭력피해자 집단상담



[그림 6-2-15] 광주센터 요리 프로그램



[그림 6-2-16] 제주센터 원예 프로그램



[그림 6-2-17] 제주센터 치료 역량 강화 교육



더불어 직원들의 소진 예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트라우마 치유시스템 구축과 사례관리시스템 재정비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전문가 의견 반영 등을 통해 기관의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하였다.

[표 6-2-3]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2024년도 추진 실적

(단위: 건, 기간: '24.7.1.~12.31.)

구분	합계	치유·재활 프로그램					교육		예방·홍보		
		개인		집단			직원교육	외부교육	캠페인	행사	언론 홍보
		상담	신체 치유	상담	심리 치유	신체 치유					
합계	17,572	3,084	4,444	153	3,206	731	1,058	1,945	2,736	78	137
광주	9,698	2,080	2,145	46	1,051	110	969	1,815	1,270	78	134
제주	7,874	1,004	2,299	107	2,155	621	89	130	1,466	-	3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지난 5년간 광주, 제주지역에서 추진한 트라우마 치유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2024년 7월 1일 국가에서 설립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트라우마치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치유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폭력의 재발을 예방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에도 기여하고, 국가폭력 트라우마와 관련한 연구 개발을 꾸준히 수행하여 기관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PART

VII

정부운영 지원

제1절 품격 있는 국가의전 및 정부포상

1. 국경일 행사 거행

의정담당관실 주무관 원 종 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행정안전부는 2024년 4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행사를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국경일의 의미를 전달하고, 가치(value)·메시지를 중심으로, 현장 참석자와 방송시청 국민 모두 만족하는,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품격 있는 정부 행사를 통해 국정 신뢰도 제고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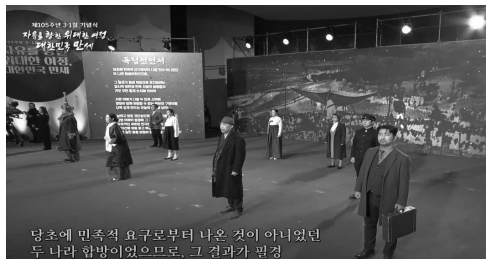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은 3·1절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유관순기념관(서울 중구)에서 개최하였으며, 대통령, 독립 유공자 후손 및 유족, 관련 단체 관계자, 국가 주요인사, 국위선양에 기여한 국민 등 각계 각층의 대규모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로 개최되었다.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가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3·1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메시지가 있는 다양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참신한 콘텐츠 구성으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독립선언서 낭독과정을 하나의 뮤지컬 형식으로 연출하여 독립선언서의 의미와 내용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주제영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3·1운동과 독립에 앞장선 선열들의 노력으로 이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통합의 마음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 일 시 : 2024. 3. 1.(금) 10:00~11:00
- 장 소 : 유관순기념관
- 참 석 : 1,140여 명
 - 대통령,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정당·종단대표, 국가 주요인사, 국민 등
- 주 제 :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

[그림 7-1-1]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독립선언서 낭독 **[그림 7-1-2]**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기념공연



2)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선열들의 나라사랑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정철학을 공유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품격있는 행사로 개최되었다.

‘되찾은 나라,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통해,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을 돌아보며,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전달하였다.

독립운동 사진과 당시 태극기를 영상(사막)으로 표출하고 광복 당시의 벽찬 심정과 기쁨을 대북공연으로 표현한 개식공연, 광복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루어 낸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등장하는 태극기와 광복 이후 79년의 대한민국과 국민의 위대한 여정을 담은 주제영상, 오케스트라 연주와 솔로공연, 대합창으로 장엄하고 웅장하게 광복의 기쁨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기원한 경축공연 등 국민이 공감하는 경축식 행사로 진행하였다.

- 일 시 : 2024. 8. 15.(목) 10:00~11:1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참 석 : 1,630여 명
 - 대통령 내외,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정당·종단대표, 국가 주요인사, 국민 등
- 주 제 : ‘되찾은 나라,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

[그림 7-1-3]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주제영상

[그림 7-1-4]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만세삼창



3)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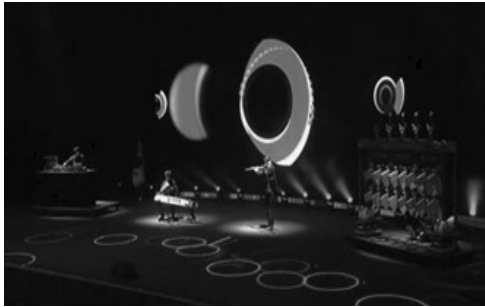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을 각계계층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흥익인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의미의 뜻깊은 경축식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하였다.

‘다시 필 단목잎에 삼천리 곱다’를 주제로 세계 곳곳에서 흥익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펼치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과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성과를 통해 대국민 자긍심을 고취하는 행사로 진행하였다.

국악과 전자음악의 융합된 소리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소리로 밝혀지는 대한의 빛’이라는 주제를 표현한 개식공연, 주제어인 ‘단목’에 대한 설명과 단목잎 하나하나 모여 숲을 이루고, 다시 필 단목잎을 통해 미래의 우리의 역할에 대한 의미 전달한 주제영상, 전통음악과 현대예술 기술을 접목한 경축공연을 진행하여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 일 시 : 2024. 10. 3.(목) 10:00~10:5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참 석 : 1,150여 명
 - 국무총리, 정당·종교대표, 국가 주요인사, 단군 관련단체, 국민 등
- 주 제 : ‘다시 필 단목앞에 삼천리 고향’

[그림 7-1-5]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 개식공연 [그림 7-1-6]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공연



4) 578돌 한글날 경축식

578돌 한글날 경축식을 국무총리, 국가 주요인사, 종교계, 주한외교단, 한글 관련 단체,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하였다.

‘괜찮아?! 한글’이라는 주제로 한글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국내에서는 외래어 남발 등 한글 사용을 등한시하는 상황을 공유하고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경축식을 통해 전달하였다.

한글을 배우면서 느꼈던 한글의 매력, 외래어 사용 등에 대한 우려, 전 세계인이 배우는 한글의 위상과 한글을 더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여는 이야기, 외국인 유학생, 국어교사, 일반시민 등의 인터뷰를 통해 한글 사용의 실태, 올바른 한글 사용 방향에 대한 의미를 전달 한 주제영상, 한글의 자모로 풀어낸 민요 ‘한글 뒤풀이’와 대한민국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표현한 ‘희망의 아리랑’의 경축공연, 한글사랑을 실천하는 국민의 만세삼창 등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과 주제가 잘 전달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일 시 : 2024. 10. 9.(수) 10:00~10:45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참 석 : 920여 명
 - 정당·종교대표, 국가 주요인사, 한글 관련단체, 국민 등
- 주 제 : '괜찮아?! 한글'

[그림 7-1-7] 578돌 한글날 경축식 주제영상 [그림 7-1-8] 578돌 한글날 경축식 경축공연



2. 국가상징 선양

의정담당관실 주무관 박 은 선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국가상징은 그림, 문자 및 도형 등으로 나타낸 공식적인 징표이다. 오랜 세월동안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역사와 전통, 문화, 정치, 사상 등에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국민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져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에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 국가 상징은 같은 국민 또는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을 심어주어 재외국민, 재외동포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시키는 국민통합의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국새, 나라문장 등을 주요 국가상징으로 관리하고 있다. 각 상징별로 역사성과 시대정신, 문화적 배경 등이 함축되어 있으며 국난극복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하면서 공식 국가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으로, 국새 및 나라문장은 대통령령으로, 애국가와 무궁화는 관습으로 정착되어 대한민국의 국가상징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림 7-1-9] 대한민국의 국가상징



이외에 공식적인 국가상징 외에도 우리나라 정부를 상징하는 정부기가 있으며 대통령을 상징하는 대통령 표장 등이 있다.

[그림 7-1-10] 정부기



행정안전부는 국가상징 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함은 물론 국가상징 선양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어린이들이 국가상징에 대하여 흥미를 갖고 이해하기 쉽도록 ‘어린이용 국가상징 교육책자’를 제작, 전국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에 보급하여 국가상징을 바르게 이해하고 국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사장에서의 국기계양, 국민의례 시행 방법, 절차 등 시행 권고안을 마련하여 올바른 시행과 확산을 도모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에게 태극기를 보급하여 새로운 국가 구성원에게 소속감을 주고 해외 동포들에게 고국의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밖에도 태극기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하여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올바른 태극기 관리·사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였고 국경일 등 국기 게양일에 전 국민의 태극기 게양 운동을 전개하여 국민들의 애국심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어린이용 국가상징 교육책자 발간·배포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국새, 나라문장의 내력과 현황, 용도, 사진 등을 담은 어린이용 국가상징 교육책자를 20여 페이지 분량으로 15만부를 발간하였다.

초등학교 국가상징 교육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보완하여 제작하였으며, 구성형식은 국가상징물에 대한 설명 및 미션 완성의 형식으로 하여 퀴즈식, 스티커 붙이기, 그림그리기, 괄호안 채우기, 사다리 타기 등으로 구성하고, 사진과 어린이 캐릭터 그림을 적절히 배치하여 어린이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교육내용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발간한 교육책자는 교육청,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초등학교에 수요를 조사한 후 2,400여개 초등학교,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배부하고, 책자를 활용하여 국가상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의 국가상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가정체성 확립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그림 7-1-11] 국가상징 홍보·교육 책자



어린이용 국가상징 교육 책자

2) 다양한 계층에 대한 태극기 및 리플릿 보급

2024년 8·15 광복절을 전후하여 다문화가정 310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247개, 탈북민 50개 등 총 607여개의 가정용 태극기와 리플릿을 보급하였다.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7개소를 통해 새로운 국가 구성원이 된 다문화가족에게 태극기를 보급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 등에게 태극기를 보급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을 전해주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2024년 가정용 태극기는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하여 세대별로 국기를 달 수 없는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난간용과 벽면용 태극기를 보급하였으며, 국기 꽃이대의 사용방법(동영상)을 담은 QR코드 부착하여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그림 7-1-12] 가정용 태극기



가정용 태극기



태극기 리플릿

3) 제79주년 광복절 태극기 달기 홍보영상 등 다양한 홍보

가)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 활용 홍보

공동주택 출입구 계양, 공동주택의 창문 부착형 계양, 차량용 태극기 계양 등 계양 안내

나) 태극기 달기 홍보 영상 제작으로 여러 매체 홍보

- ① 도심지(옥외)광고판 표출(7~8월)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구좌를 활용한 매체협업으로 아파트·오피스 보드를 통한 표출

- ② 지자체 동영상을 활용한 청사,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 서울지하철(9호선) 방송
- ③ 우리부 홈페이지, 카드뉴스, 유튜브, 청사관리소 등을 통한 표출
- ④ 2024년 파리 올림픽 태극기의 감동, 일상에서도 펠력이길을 주제로 태극기 달기 장관 기고문(동아일보) 게재 등

[그림 7-1-13] 태극기 달기 홍보(주요 홍보 내용)

-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 활용 안내 등



공동주택 출입구 계양



창문 부착형 계양



차량용 태극기 계양

- 태극기 달기 홍보 동영상 사·도 등 전달(우리부 홈페이지 게시)



- 기고문(동아일보 게시)

**東亞日報
기고**

2024년 8월 9일 금요일 A29면 오피니언

올림픽 태극기의 감동, 일상에서도 펠력이길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우리 선수들이 고된 훈련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은 매일 수어식 국기 게양대에 자랑스러운 태극기로 높이 올라 국민께 진한 감동을 주고 있다.

오늘 8월 9일은 1906년 제정된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생(1912~2002)이 마린톤 금메달을 목에 건 날이다. 태극기를 세웠으나 태극기를 달지 못해 아쉬움에 오른 손기정 선생은 고개를 푹 숙였다고 한다. 나라를 되찾고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가슴에 달 수 있게 되었지만 일상에서는 태극기의 소중함이 점점 잊혀지고 있는 듯하여 안타깝음이 크다. 국경일마다 주택가 곳곳에서 펠력이길 태극기를 요즘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태극기라는 낯은 언제인지 어디서 구입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최근 태극기와 관련된 흥미로운 기사를

봤다. 대구의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제헌절을 맞아 태극기 그리기 수업을 하고, 정성스럽게 그린 태극기를 집장마다 달게 했다는 내용이였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태극기 그리기는 순서를 배우고 색칠하다 보니,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프랑스 올림픽 경기 때 매일 사상학에서 만 날 태극기가 기대된다"고 했다.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계도보다는 이렇듯 태극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마음이 생기기 하는 것이 먼저다. 태극기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태극기를 게양하고 친숙하게 여기는 문화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더 쉽게 태극기를 구입하고 게양하는 여건도 조성해야 한다.

내년은 광복 80주년인 되는 해다. 정부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

고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한편 태극기 게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내년 달박에는 '태극기 다는 날'이 처음으로 표시된다. 평소 태극기를 가까이하고 안재근 달 수 있지만 적어도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태극기를 함께 다는 날은 기억하자는 취지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중교통, 친일반 광고를 통해 태극기 다는 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각급 학교에서 국기 교육을 실시하고, 태극기 포스터 그리기, 글짓기 대회 등을 열어 태극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

태극기를 손쉽게 구입하고 게양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주민센터와 자치단체 민원실에 국기 판매소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편의점이나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도 태극기를 판매하도록 관계 기업과 협의하고 있다. 요즘 아파트는 국기꽃이 없

나, 걸 공간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 국기꽃이 없는 아파트는 창문에 태극기를 부착하거나, 통 출입구마다 자율적으로 게양대를 설치해 좀 더 편리하게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태극기의 태극 문양은 음(陰)과 양(陽)의 조화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卦)'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뜻한다. 태극기에 담긴 뜻을 해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화를 꾀 공존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즉, 국가 상징인 태극기에는 국민 화합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우리는 파리 올림픽에서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선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며 진한 감동을 느끼고 있다. 선수단과 응원단이 한마음으로 만들고 있는 태극기의 물결이 이번 광복절에는 집집마다 펠력이길 기대해 본다.



이 상 민 행정안전부 장관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국가상징 홍보책자 발간 배포, 태극기 보급 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상징을 선양하고 홍보하는 한 해였다.

특히 초등학생을 위한 국가상징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국가상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경일 등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태극기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우수 지방자치단체 등에 표창을 실시하는 등 국기의 존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향후에도 우리부는 국가상징제도의 연구·개선과 국가상징물의 올바른 관리와 선양 활동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3. 정부포상 운영

상훈담당관실 주무관 신 동 일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정부포상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조국의 독립과 건국에 공로가 있는 선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1949년 4월 27일 처음으로 「건국공로훈장령」을 제정·공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무궁화대훈장령 등 9개의 각종 훈장령이 제정되어 각 개별법령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1963년 12월 14일에 「상훈법」을 제정하여 통합함으로써 오늘날의 정부포상 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정부포상은 「헌법」 제80조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그리고 제89조에 “영전수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전수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서훈업무에 관한 일반법으로 「상훈법」과 「상훈법 시행령」이 있어 훈장 및 포장의 종류, 수여 절차, 기타 상훈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표창제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이 있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각 행정기관의 장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포상제도는 「상훈법」에 의한 무궁화대훈장 등 12종의 훈장을 최고의 정점으로 하여 12종의 포장과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각 중앙행정기관장 표창 순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여기서 각 중앙행정기관장의 표창은 각 부처에서 자체 기준에 의하여 수여되고 있으며,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의 수여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관장하고 있다.

[그림 7-1-14] 정부포상 종류 및 명칭

훈장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포장
 무궁화대훈장	등급없음					건국포장
	수여대상 : 대통령·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수여대상 : 건국 또는 국기를 공고히 한 유공자					
 국민훈장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국민포장
	수여대상 :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 유공자					
 무공훈장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포장
	수여대상 : 전시(비상사태), 전투참여 유공자					
 근정훈장	청조	황조	홍조	녹조	옥조	근정포장
	수여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직무 경려자					
 보국훈장	동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보국· 예비군포장
	수여대상 :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수교훈장	광화대장·광화장	홍인장	승례장	창의장	숙정장	수교포장
	수여대상 : 국권 신장, 우방과의 친선 유공자					
 산업훈장	금답	은답	동답	월답	석답	산업포장
	수여대상 : 국가산업발전 유공자					
 새마을훈장	자립장	자조장	협동장	근면장	노력장	새마을포장
	수여대상 : 새마을운동 유공자					
 문화훈장	금관	은관	보관	옥관	화관	문화포장
	수여대상 :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체육훈장	정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	체육포장
	수여대상 : 체육발전 유공자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혁신장	응비장	도약장	진보장	과학기술 포장
	수여대상 : 과학기술발전 유공자					

개인포장 수장



대통령표창 수장

국무총리표창 수장

단체포장 수치



대통령표창 수치

국무총리표창 수치

VII
정부가요령 지원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합리적이고 품격있는 정부포상 운영

2024년도 정부포상 및 시상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대한민국 상훈 포털과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과 공개 검증을 실시하여 정부포상과 시상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포상이 국정과제 추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기준 및 대상을 새로운 사회가치에 맞게 조정하였고, 관례적으로 운영되거나 유사·중복된 포상은 폐지 또는 감축했다. 국정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지원하고 성공적으로 국제행사를 개최한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국정운영의 동력원이 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신설하거나 확대 지원함으로써 중요 국가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정부표창의 영예성 제고와 수상자의 자긍심 향상을 위하여 「정부 표창 규정」, 「모범공무원 규정」 등 대통령령을 일부 개정하여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모범공무원 증서의 규격을 기존 A4 사이즈(205×292mm)에서 훈·포장과 표창 증서의 중간사이즈(240×340mm)로 확대하는 한편, 훈·포장 온라인 불법매매 현황의 정기적 점검 등 사후관리를 통해 정부포상의 영예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우리민족의 정신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보존성을 지닌 전통한지를 정부포상 증서로 사용함으로써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2024년에도 훈장증 및 포장증에 1,834매, 표창장에 3,231매를 전통 한지로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2) 국민추천포상 내실화

우리 주변에서 묵묵히 일하며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헌신하고 노력해 온 숨은 공로자를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추천하여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 제도는 2011년 시작한 이래 시행 14년차를 맞이했다.

2024년의 경우 다양한 연령층의 공로자가 확대 발굴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널리 알리고,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포함한 다단계 공적 검증과 역대 수상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행정안전부 주관 2차 현지확인 조사에서는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합동 현지확인을 실시함으로써 공적심사 검증에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홍보에서는 포스터, 전광판, 방송, 포털사이트, 지하철, 광역버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제도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했다. 특히 젊은 층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국민참여형 홍보를 강화한 결과, 543건이 추천되었다.

추천된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소관 부처의 확인 및 행정안전부의 공적 심사와 더불어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각계의 명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정부포상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20명의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특히 심의위원회 구성 시에는 국민추천포상 기 수상자를 위촉하여 국민대표의 목소리를 심사에 적극 반영하였고,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등 국민이 뽑는 유일한 포상의 의미를 더했다.

최종 선정된 수상자는 실 공장을 운영하며 평생 모은 재산을 고려대학교 의료원에 기부한 한중섭님, 근검절약으로 모은 재산 8억여원을 서울대학교에 유증한 故 이순남님, 귀금속 공예사업 수익 200억원 이상을 기부·후원한 사업가 이재호님, 지체장애의 어려움을 딛고 10년째 라오스에 20개 오지학교를 건축하고 장학금을 지원한 약사 조근식님,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32년간 다양한 봉사과 기부를 실천한 전 공무원 윤영근님, 국방 발전과 군 장병 가족 처우 개선을 위해 10억원을 기부한 사업가 조성근님, 58여 년간 4만여 명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이발 봉사를 한 이발사 김광주님 등이 그 주인공이다.

[표 7-1-1] 국민추천 포상 공로자

훈격	성명	공적요지
국민훈장 석류장 (2등급)	한 종 섭 (88)	(기부)고려대학교의료원에 의학 발전기금 10억여 원을 기부하고, 성가복지병원에 의학발전기금 3백만 원을 기부하였으며, 사후에도 약 9억 원 상당의 본인 자택을 기부 약정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할머니
국민포장	故 이순난 (향년 93)	(기부) 한 달 수도료로 3,000원을 납부하고 물티슈도 4등분하여 사용하는 등 근검절약을 통해 평생 모은 재산(아파트 4억5천만원 상당, 금융자산 4억 원)을 서울대학교에 유증하여 미래 인재육성에 기여한 할머니
	이 재 호 (82)	(기부)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사재 200억 원 출연)을 설립하여 주얼리 산업 발전과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서울시립대학교에 사재 10억 원을 기부한 사업가
	조 근 식 (67)	(국제구호) 지체장애의 어려움을 딛고 10년째 라오스에 20개 오지학교 신축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장학금 지원을 통해 국경을 허무는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한 약사
	윤 영 근 (66)	(봉사)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공무원 재직부터 퇴직 이후까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봉사(14,368시간), 복지시설 기부(3천만 원), 자선공연 등 재능기부를 실천한 전 공무원
	조 성 준 (49)	(기부) 예비역 간부와 군 가족을 자신의 회사에 채용하고, 장병 사기진작, 군 복무 중 전사·순직한 가족 등 지원을 위해 약 10.4억 원을 기부하여 국방 발전과 군 장병·가족 처우개선에 노력한 사업가
대통령표창	김 광 주 (82)	(봉사) 58년 동안 4만여 명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이발 봉사를 했으며, 현재 거동이 불편함에도 본인 아파트 한켠에 의자와 전신 거울을 설치하여 수시로 봉사하는 이발사
	권용호(74)· 김동조(70) 부부	(기부) 5년간 부부 합산 4천만 원씩 기부할 것을 약속하고 농사가 잘 안 되었을 때에도 마이너스 통장까지 사용하며 기부를 실천한 농민 부부(농민 부부로 전국 최초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윤 재 근 (69)	(봉사) 구리시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단체를 직접 결성하여 접수리, 중증장애인 목욕봉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세심한 후원으로 따뜻한 지역정서 조성에 기여한 회사원
	권 민 호 (42)	(생명구조) 비번 중 청주 눈썰매장 붕괴 현장에서 무너진 구조물 및 얼음에 깔려 있는 사람 2명을 심폐소생술을 통해 구조하고, 가족여행 중 고속도로 화재 현장에서 차량 화재를 초기 진압하여 대형사고 방지
	안양호스피스 선교회	(봉사) 26년간 안양시 내 병원 호스피스 활동 및 의료비 지원(1.6여 억원)을 통해 호스피스 봉사분야 개척, 호스피스 전문 봉사자 교육체계 수립 등에 기여한 봉사단체
국무총리 표창	이 종 규 (74)	(국제구호) 울진군 시골 의사로 활동하며 미얀마, 네팔 등 해외 의료봉사와 국내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 및 기부를 꾸준히 실천하여 한국의 나눔문화를 전파하는데 기여한 의사
	김 창 순 (57)	(봉사) 32년간 야학교사로 지식 나눔 재능기부와 복지단체 기부(약 17백만 원) 등을 실천하고, 자녀(딸)도 야학 봉사에 동참하는 등 시민 평생교육 실현에 기여한 공무원
	정 대 원 (54)	(봉사) 24년간 소외계층,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20,900시간), 정기적인 헌혈(200회 이상) 및 헌혈증(100매) 기증으로 이웃사랑 실천, 장애인 체육 지원 및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한 회사원

훈격	성명	공적요지
	송 상 례 (55)	(기부) 30여년간 양말 기부(약 1.9억 원 상당)를 통해 이웃에 온정을 전하고 소외계층(노인정, 양로원 등)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여 따뜻한 지역 조성에 기여한 주부
	문 희 승 (44)	(생명구조) 민간해양구조대 대장으로 낚시어선 및 모터보트 충돌시 발생한 익수자 구조, 표류 선박 예인 등 다양한 해상안전 봉사를 통해 국민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양 보 라 매 (42)	(헌혈) 아버지 간병과 야간 근무 병행으로 생계유지를 하며 헌혈 512회 및 헌혈증 350장 기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한 회사원
	이상희 앤 프렌즈	(기부) 20년 넘게 후원 콘서트 꾸준히 진행하고 국제백신연구소와 국립암센터에 수익금 7억 2천여 만원을 기부하여 환자 지원과 의약 발전 등에 기여한 재능 기부 단체
	밥차와 동행하는 이들	(봉사) 10여 년간 대구시 동구 주민을 위해 무료 밥차 운영(320회 10만여 명 이상), 재해복구, 생활지원, 국제대회 지원 활동으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봉사단체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어느덧 15번째의 국민추천포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신보다 더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는 미담의 주인공들을 다수 발굴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이들의 가슴 뭉클한 미담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전파되어 행복한 나눔과 따뜻한 동행이 확산되고 우리 사회가 보다 따뜻하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국민 중심의 정부포상을 운영하였다.

아울러, 2011년에 시작된 국민추천포상은 우리 생활 속에서 묵묵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이웃들을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포상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629명의 국민들께 포상이 수여되었다. 국민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유일한 포상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봉사·기부 외에도 직무나 단체활동 등을 통해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고 포상하여 우리 사회에 나눔과 배려의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부포상 제도 보완과 함께 주요 국가시책 추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포상 기준과 대상을 조정하고, 포상 운영 시에는 공적과 성과에 따른 포상 원칙을 준수할 것이다. 일반국민에 대한 포상 확대 등을 통해 각계각층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는 분들이 포상을 받는 풍토를 조성하여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고 공정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제2절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청사관리

1. 정부청사 건축사업 기획 및 건립 추진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 주무관 김 선 경

가. 추진배경 및 개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과거 조선총독부 건물이었던 중앙청 건물('96년 철거)의 청사 공간 부족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중앙행정기관을 한 곳에 집중시켜 행정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1966년 정부종합청사 계획을 수립하고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정부서울청사 본관을 건립하였다.

그 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도권 인구 과밀화와 편중 현상은 해결해야 할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되었으며, 그 대안으로 정부과천청사 건립을 추진하였다('79~'93년). 정부과천청사 건립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오히려 수도권을 더 넓게 확대시킨 면도 없지 않았고, 단순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넘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실현을 위해 정부대전청사 건립을 추진하였다('93~'97년).

정부대전청사 건립 이후 대전광역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수도권 인구 분산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으나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이후 2002년 제16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이 논의되면서 2005년 3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제정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05.10.5.)'에 따라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세종청사를 건립하게 되었다(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은 '18년부터 '22년까지 건립).

2024년 2월에는 정부대전청사의 민원 업무공간을 청사 건물과 별도로 분리하는 민원동 건립사업을 완료하고, 2025년 4월에는 건물의 노후화로 지진에 취약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을 완료하는 등 다양한 정부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특별행정기관)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비전문가의 청사 관리로 인한 건물의 급격한 노후화, 불필요한 유지관리 예산의 투입, 소모성 임차료 지급 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2003년 춘천지역에 지방청사 합동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청사의 합동화)에 따라 광역시·도 중심으로 도청소재지, 혁신도시, 지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17개 지역을 선정하고 증장기계획 수립 후 단계적으로 합동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춘천·제주·광주·대구·경남·고양·인천·충남·경북 등 9개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현재 부산 및 대전지역의 지방청사 합동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그간의 정부종합청사 및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기관의 청사 건립 업무를 위탁받아 추진하기도 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가고시센터(증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방행정연수원, 행정기록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중센터를 건립하였으며, 2024년에는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4월), (구)남영동 대공분실 정비(6월), 민주화운동기념관(9월) 건립을 완료하였다.

[표 7-2-1] 2024년 정부청사 건축사업 추진 현황

연번	사업명	위치	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대지	건물			
1	부산지방합동청사	부산 동구 초량동	24,961	48,985	1,646억 원	'18.~'27.	자체
2	대전지방합동청사	대전 서구 둔산동	30,000	56,033	1,628억 원	'24.~'29.	자체
3	서울 창성동 별관 재건축	서울 종로구	4,236	10,590	325억 원	'18.~'25.	자체
4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대전 서구 둔산동	7,000	8,953	244억 원	'20.~'24.	자체
5	민주화운동기념관	서울 용산구 갈월동	6,391	6,657	364억 원	'19.~'24.	위탁
6	(구)남영동 대공분실 정비	서울 용산구 갈월동	6,391	2,975	111억 원	'21.~'24.	위탁
7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광주 서구 화정동	4,000	2,200	107억 원	'21.~'24.	위탁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정부지방합동청사(부산·대전)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는 부산북항재개발구역 신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부산세관 등 3개 국가기관과 입차 및 노후청사를 사용하는 특별행정기관 등 11개 기관을 한 곳에 모아 지역주민의 행정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합동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추진을 위해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입주기관 현지조사, 기관별 특수시설 등 소요면적에 대한 조정 및 협의를 거쳐 2018년 6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설계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2023년 10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공사 등 입찰을 추진하여 2025년도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정부대전지방합동청사는 정부대전청사 남서측 공원에 위치할 예정이며 입차 및 노후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8개 기관을 입주기관으로 선정하여 2023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거쳐 2024년 7월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여 사업규모를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설계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026년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2)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재건축)

2016년 9월 경주 지진 및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며 취약시설 조치 시급성이 대두되었다.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은 1960년 건축되어 노후화가 심하고 지진에 취약한 상태였다. 2017년 6월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평가 결과 구조물 보강 및 재건축이 필요한 'D등급'으로 평가되고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이 '붕괴위험(CO)' 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LCC(생애주기비용) 분석 결과 개보수보다는 신축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진단되어 구조물을 보강하여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여 재건축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다.(2018년도 예산에 설계비 687백만 원 긴급 반영)

2018년 4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사를 선정하여 2019년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다.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문화재 시굴조사(3개월) 및 문화재 정밀발굴조사(10개월)를 2022년 11월까지 완료하였고, 2023년 2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25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3)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2019년 4월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들의 민원동 건립 요구에 따라 정부대전청사의 민원업무공간을 독립된 건물로 분리하여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방문객과 입주공무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민원동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입주 대상기관 수요조사·협의 및 입지선정 과정을 통해 2020년 2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사를 선정하여 2021년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2022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였고, 7월까지 기관 입주를 완료하였다.

[그림 7-2-1]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 조감도



[그림 7-2-2] 정부대전지방합동청사 조감도



[그림 7-2-3]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조감도



[그림 7-2-4]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전경사진



다. 평가 및 발전방안

행정안전부는 1970년 정부서울청사를 시작으로 과천·대전·세종 등 4개 정부종합청사를 건립하여 국가 균형발전 등 시대 변화와 정부조직 변동,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청사 신규 수요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다. 또한 지방청사 합동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9개 지방합동청사를 자체적으로 건립하고 다양한 청사 건립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와 입주기관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유지관리비·임차비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왔다.

향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건립, 국회 이전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세종시 중심행정타운 주변에 청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반시설 건립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의 청사 건립 및 유지관리 경험 등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부세종청사 완성도 제고,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건립,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같은 국가적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다.

2. 도시숲 조성 및 옥상정원 관리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 주무관 채 하 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도시숲 조성 사업은 청사주변 국민 생활권역에 풍부한 수목 식재로 도심 속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흡착·흡수, 국민 여가생활 인프라 확대 등 “정감있는 친환경 녹색청사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옥상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3개 사업에 214억 원을 투입하여 3개년(‘21~’23년)간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정부청사 옥상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초본류, 블록 등으로 단순 조성되어 이용이 저조했던 옥상정원(1동, 7~8동) 구간에 큰나무 식재와 편의시설물 설치, 생태 연못, 특색있는 공간 조성 등 집중 보완하여 국가의 상징성 제고와 도심 속 한국적 자연미를 더한 ‘쉽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었으나,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변화하는 옥상정원을 보며 민원은 감소하였고, 입주기관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으로 이용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었다.

[표 7-2-2] 도시숲 조성(정부청사 옥상 미세먼지 차단 숲) 추진상황

- **(1차 사업)** 옥상정원(9~13동)에 큰나무 식재(소나무 등 32종 1,462주)와 옹기정원, 석가산, 생태연못, 암석원 등 조성 완료(54억 원, '22. 10.)
- **(2차 사업)** 옥상정원(14~17동)에 큰나무 식재(소나무 등 1종 1,495주)와 캐스케이드, 조각공원, 수목원, 석부작 등 조성 완료(57억 원, '23. 7.)
- **(3차 사업)** 옥상정원(1동, 7~8동)에 큰나무 식재(소나무 등 27종 5,715주)와 생태연못, 실개천 조성 등 집중 보완(10억 원, '23. 11.)

[그림 7-2-5] 옥상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완료 사진



1차 사업 완료사진

2차 사업 완료 사진

3차 사업 완료 사진

2) 세종청사 옥상정원 관람운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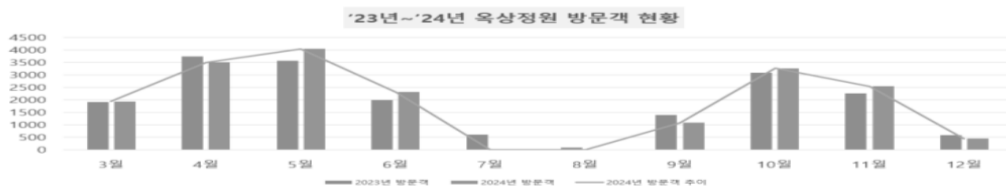
2024년 옥상정원 관람 운영 시 여름철 온열질환과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 혹서기 휴장기 휴장하였으며, 새롭게 조성된(14~15동) 3코스를 개방하여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과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전년 대비 휴장기간을 감안하였을 때 관람객이 약 2.7% 증가 하였다.

[표 7-2-3] 옥상정원 관람객 변화 추이

- **관람객 변화 추이** : ^(14~19년) 13,478명(78명) ⇨ ^(20년) 1,109명(43명) ⇨ ^(21년) 3,506명(32명) ⇨ ^(22년) 15,088명(87명) ⇨ ^(23년) 19,289명(66명) ⇨ ^(24년) 19,178명(82명)
- ※ () 안은 실제 운영한 기간의 일평균 방문객 수

• 최근 관람객 현황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	15,088	-	-	-	723	2,132	2,701	-	-	1,635	4,516	2,591	790
2023	19,289	107	402	1,411	3,741	3,582	1,997	603	95	1,404	3,086	2,265	596
2024	19,178	-	-	1,947	3,513	4,050	2,317	-	-	1,086	3,269	2,549	447



[그림 7-2-6] 옥상정원 관람객 사진



3) 정부청사 울타리숲 조성

청사 주변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연출하기 위해 미관을 저해하는 철제 울타리(8.9km)의 사계절 차폐가 가능한 측백나무 식재와 녹음제공을 위한 느티나무 등 큰나무 식재로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다.

큰나무 식재 작업중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통신선, 전기선 등으로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었으나, 관련부서와 협조체계구축으로 큰 사고 없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표 7-2-4] 정부청사 울타리 숲 추진상황

- (1차 사업) 세종청사 1~5동 울타리숲(큰나무 7천본, 관목 2만3천본)조성(18억, '21. 12.)
- (2차 사업) 세종청사 6~12동 울타리숲(큰나무 1천6백본, 관목 4만6천본) 조성(18억, '22. 3.)
- (3차 사업) 세종청사 12~15동 울타리 숲(큰나무 1천본, 관목 2만3천본) 조성(32억, '24. 12.)

[그림 7-2-7] 울타리 숲 조성사업 완료 사진



1차 사업 완료사진

2차 사업 완료 사진

3차 사업 완료 사진

4) 실내 다중이용공간 공기정화 식물 도입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공무원들에게 푸르름과 온기, 청정한 공기가 넘실거리는 녹색 공간(벽면녹화, 실내조경 등) 제공으로 업무효율 향상을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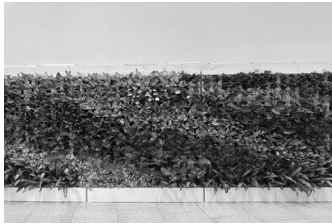
[표 7-2-5] 실내 다중이용공간 공기정화 식물 도입 추진상황

- **(1차 사업)** 세종청사(1~4동, SCC), 벽면녹화 13개소 392㎡ 조성(5억, '21. 11.)
- **(2차 사업)** 세종청사(5~6동) 모스벽면 2개소, 수직정원 4개소 등 387㎡ 조성(5억, '22. 12.)
- **(3차 사업)** 세종청사(중앙동, 7~15동) 실내정원 271.8㎡, 벽면녹화 11개소 129.4㎡, 모스벽면 4개소 50.28㎡, 걸이형 화분 17개 3.9㎡ 조성(14억, '23. 11.)

[그림 7-2-8] 실내 다중이용공간 공기정화 식물 도입



1차 사업 완료 사진



2차 사업 완료 사진



3차 사업 완료 사진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청사 내·외부 단조롭고 삭막한 공간에 다양한 식물과 편의시설을 도입하여 도심 속 친근한 녹색청사를 구현하고 입주기관 직원 및 방문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3개년('21.~'23.)간 추진한 도시숲 조성 사업에 대해 철저한 하자관리를 추진하며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부족한 시설물을 보완하여 유지보수에 주력하고자 한다.

2024년도에는 옥상정원 관람코스 확대(3코스 신설)로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노후 시설물 정비, 포토존 및 그늘막 조성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관람 만족도가 높았다.

옥상정원 관람이 국민들의 일상에 삶의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옥상정원을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

3. 정부청사 수급(需給)관리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 주무관 김 나 현

가. 추진 배경 및 개요

1980년 이전에는 정부기관의 청사 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각 기관이 예산편성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청사를 취득하였다. 이로 인해 기관별 예산 확보 유무에 따라 청사를 취득함으로써 기관 간 청사취득의 불균형 및 예산 낭비가 우려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0년에 정부청사관리규정을 제정하였고, 매년 정부청사 수급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정부청사 수급관리 대상기관⁵⁾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47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다. 청사의 수급 및 관리는 다음 연도에 청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기관의 요청을 받아 정부청사 수급관리계획 수립기준 및 청사 배정면적기준⁶⁾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총괄한다.

나. 추진 내용 및 성과

정부청사 수급관리는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1. 1. 5.)과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1. 9. 7.)에 따라 정부청사 수급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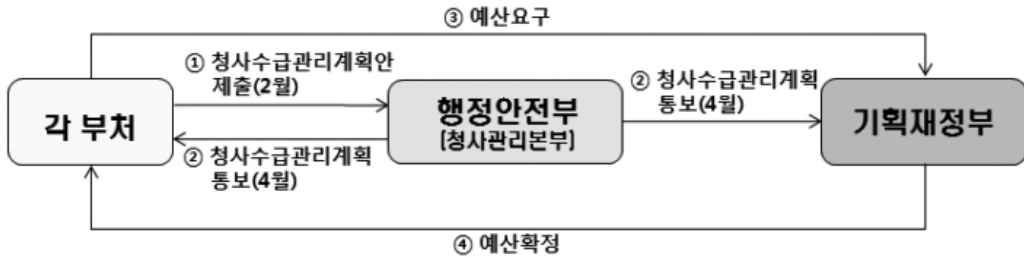
정부청사 수급관리의 조정·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정부청사관리규정 제4조(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기관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접수하여 4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와 수급대상기관에 통보한다.

또한 해당기관이 같은 규정 제5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에 따라 청사를 취득·관리하거나 청사의 수급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야 하며,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대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로 통보하여야 한다.

5) 국방(군사), 행정, 교육, 의료, 재외공관, 시험·연구, 관립집회, 전시기설 등은 제외(정부청사관리규정 [별표])

6)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1]

[표 7-2-6]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업무추진체계



2024년 4월 「2025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 시 농림축산식품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306건의 사업이 신청되었다. 용도별로는 사무용 시설이 103건, 주거용 시설이 203건이며, 유형별로는 임차 217건, 신·증축·매입 등 89건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기관별 시설 부족 현황, 시설 노후도, 기관 신설 및 이전 등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의 검토를 통해, 총 306개 요청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 등 161건(약 52.6%)을 조정·반영하였다. 반영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용 시설은 57건(임차 28건, 신·증축 등 29건)이고, 주거용 시설은 104건(임차 93건, 신·증축 등 11건)이다.

[표 7-2-7] 2025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 반영사유 및 건수

사무용 시설 (57건)	주거용 시설 (104건)
① 공간 부족 : 37건 (65%)	① 공간 부족 : 93건 (89%)
② 시설 노후 : 14건 (25%)	② 시설 노후 : 7건 (7%)
③ 임시 청사 : 3건 (5%)	③ 임시 청사 : 3건 (1%)
④ 기 타 : 3건 (5%)	④ 기 타 : 1건 (3%)

참고로, 전년도의 경우 각 기관에서 403건을 신청하여 214건(53%)이 반영되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수급요구 대비 반영은 338건 중 168건으로 반영비율은 약 49%이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사무용 시설은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을 위한 공간 확충·이전 신축 등에 대한 수요가 많고, 특히 주거용 시설은 저연차공무원 복지·편의 증진 등에 따른 신규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제반 여건 속에서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능률적인 행정업무 수행이라는 정부청사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적정하고 균형 있는 청사 취득 및 관리를 위해서는 장래의 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적이고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수급대상 및 특수시설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최적의 청사시설 규모 확보, 국유부동산 활용도 제고 등 국가 경제적 측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과 조직의 업무 효율성 증대로 이어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4. 효율적인 업무공간 혁신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 주무관 홍 윤 수

가. 추진배경 및 개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과거에 비해 더 넓은 범위에 더 빠른 속도로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발 빠른 대처 등 행정능력 향상을 위해 '일하는 방식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6조의7 제3항 '17.10.17 신설)을 마련하였고,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활성화 등 행정 효율을 높이고 조직 내 활발한 소통을 유도하는 업무공간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미래지향적인 업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유도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후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사무공간·회의공간·휴게공간·민원공간 등 업무공간에 대하여 공간 혁신 시범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다.

[표 7-2-8] 업무공간 혁신 시범사업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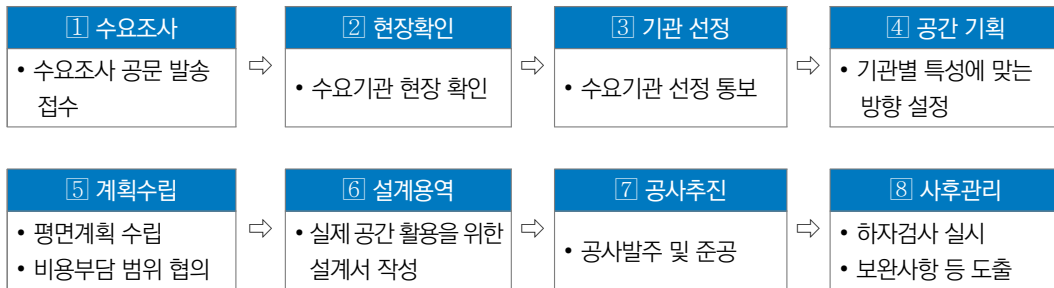
시범사업	('17년) 정부청사관리본부, ('19년) 기획재정부, ('20년) 보건복지부, ('21년) 조달청, ('22년) 교육부, ('23년) 통일부·산림청 ('24년) 문화체육관광부
------	---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24년 업무공간 혁신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을 위해 정부청사 입주기관 및 독립청사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4개 기관이 시범사업을 신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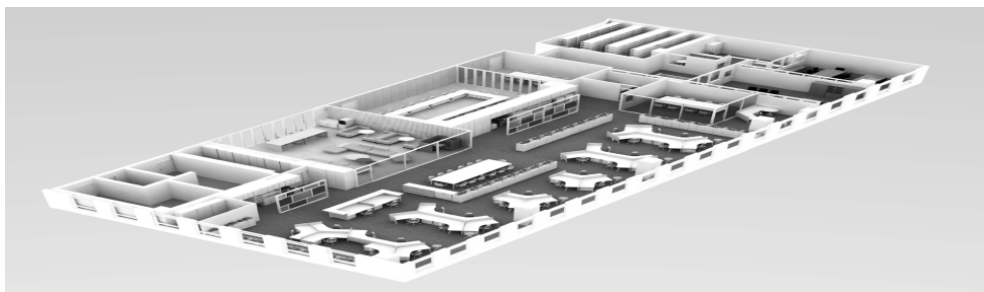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실시 후 ①사업추진 의지 및 환경, ②사업규모 및 홍보효과, ③업무공간 개선 필요성, ④가구 및 공간 활용도 등 4가지 분야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표 7-2-9]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 추진 절차



2024년 업무공간 혁신 시범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내 혼재되어 있는 여러 기능(사무, 소통, 지원)별 공간을 재배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림 7-2-9] '24년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 조성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업무공간

[그림 7-2-10] 사무공간



[그림 7-2-11] 휴게공간



[그림 7-2-12] 회의공간



사무공간은 부서 구성원간 교류·소통이 가능하도록 개방적·수평적 좌석 배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였고, 개인 책상의 파티션을 낮춰 직원들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회의공간은 목적, 사용인원 및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소·중회의실을 배치하였고, 필요시 두개의 회의공간은 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 벽체(폴딩도어)를 설치하여 회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휴게공간은 운영지원과 부서원뿐만 아니라 타 부서 직원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이 유리한 위치에 배치하였고, 직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휴식하면서 업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색채계획과 간접조명 등을 적용하였다.

업무지원공간은 부서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인사자료실·회계자료실·우편함실을 별도 공간으로 구획하였으며, 프린터 및 복합기는 개수를 최소화하여 두 곳에 통합 배치하였다.

그 외에도 실내조경인 플랜테리어를 통해 심리 안정과 공기정화 효과를 유도하여 쾌적한 업무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최근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업무공간 개선을 통해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추진 중이며, 정부기관에서도 행정 효율을 높이고 조직 내 활발한 소통을 유도하는 업무공간을 구성하는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업무공간 혁신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공간 혁신을 통하여 정부청사 입주기관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유연한 조직문화 등이 공직사회 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5. 스마트하고 편리한 정부청사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과 주무관 곽 준 석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세종·서울·과천·대전청사와 9개 지방합동청사를 포함한 13개 정부청사의 소관 시설물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총 155개 입주기관의 36,000여 명 입주직원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이 청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정기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는 동시에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확충하고 있다.

2024년도에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스마트 정부청사 통합관리체계 구축’ 1차 사업을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등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청사 운영이 가능토록 초석을 다지는 한 해가 되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지원을 위해 시작한 정부청사 차원의 스마트 정부청사 통합관리체계 구축 1차 사업(’22~’23년)에 대한 고도화 및 디지털 신기술 타청사 확대 도입을 위한 업무재설계(BPR)/정보화전략계획(ISP)를 추진하였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사용자의 수요 충족 및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부청사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항상 수요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등 전기차 화재 대응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질식소화덮개 등 화재진압 장비를 지속 확충하고, 화재예방형(스마트제어) 충전기로의 전환설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입주부처에 직접 찾아가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찾아가는 청사 운영 혁신 서비스’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입주부처의 건의·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개선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하고 편리한 정부청사 통합관리체계 구축

2022년~2023년도 진행된 1차년도 사업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서비스 구현(① 얼굴인식 출입관리시스템, ② 방문자 무인 안내시스템, ③ 모바일 공무원용 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통계기반 의사결정시스템),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① 시설·보안 통합관제 고도화(디지털트윈 포함), ② IoT 무선망(이음5G망))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10개월간 추진하였다.

청사출입 편의성과 보안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술을 연계한 출입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별도의 출입증 접촉인식(태그) 없이 출입이 가능하며, 정부세종청사 방문객에게도 얼굴인식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키오스크형 방문자 무인 안내시스템을 구축, 방문절차 간소화로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공무원용 모바일 앱 개발로 공무원이 방문객의 방문 예약한 내용을 모바일로 확인하여 언제, 어디서나 승인이 가능하며 공용회의실 예약, 안전·불편신고, 편의시설 안내 등을 하고 있다.

청사 시설물(시설, 보안, 주차 등), 청사 출입 데이터의 정량화, 수집·저장·분석을 통해 장비 생애주기 관리, 사전 예방조치 등 청사관리의 데이터를 통한 미래 예측 등 과학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 트윈 기술로 CCTV 카메라, 각종 관제물을 표현하여 시설·보안 관리업무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2024년에는 정부 주요행사 및 상황보고회의 등을 위해 서울청사에서 운영하고 있던 노후 회의중계시스템을 행정안전부 본부 이전(세종청사 중앙동)에 따라 세종청사에 재구축하여 동시 접속자 수의 증가 해소 및 고품질(고화질, 지연현상 개선 등) 영상을 송출하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한 이음5G망을 통해 울타리회전문 출입, 옥외 주차장·어린이집 원격관제가 가능해졌고, 각종 옥상에 온습도·강우량·미세먼지 센서를 설치하여 시설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능형(스마트) 정부청사를 구축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림 7-2-13] 스마트 정부청사 주요 기능



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설관리체계로 전환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3개의 정부청사를 약 2천 8백여 명의 현업직원(공무직) 및 연간 약 2909억 원에 달하는 유지관리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물 관리 중에 있으나, 종이 문서 기록 방식의 인력 중심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설관리체계로 전환하였다.

디지털 정부 추진 및 정보화 시대에 맞춰 시설물 유지관리의 디지털화 및 정부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표준화를 위해 2019년부터 5년 동안('19~'23년) 총 17억 원을 투입, 주요 시설관리 4대 분야 10개 기능 개발을 완료하였다.

2019년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시설관리 장비·자재에 대한 명칭 통일 등을 통해 자재·장비의 분류체계를 확립하였고, 공무원이 디지털 기술(모바일 앱)을 통해 점검·보수 활동을 손쉽게 입력하고 해당 활동 내용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2021년에는 근거리 무선통신 비콘⁷⁾을 도입하여 이동 동선상의 점검 항목을 자동으로 표출하여 점검방식 효율화 하였으며, 도면관리 기능을 추가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7) Beacon : 블루투스에 기반한 70m 이내의 근거리 무선 통신장치

2022년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세종청사에서만 운영 중이던 시설관리시스템을 12개 정부청사에 확대하였다.

2023년에는 정부청사 시설관리시스템 구축 5개년 사업의 마지막 차수인 정부청사 공무원들의 인사정보나 급여 계산 등을 수기로 처리하던 것을 시스템에 적용하여 업무절차를 개선했다.

2024년에는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험작업 관리 기능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인 기능 개발과 시스템 안정화를 통해 공무원 인사정보 통합관리, 임금 자동계산으로 정확한 업무처리 및 행정효율성이 향상되었다.

[그림 7-2-14] 정부청사 시설관리시스템 화면



3) 수요자가 만족하는 정부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최근 정부청사 내 전기차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입주직원 및 방문객의 전기차 충전 편의 증진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2021년까지 전국 13개 청사에 95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운영하였고, 2022년에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시행 '22.1.28.)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의 상향 조정(주차면의 2%) 및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편의를 위해 8개 정부청사에 충전기 216기를 설치하고, 세종청사 주변 BRT 도로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고 이용률이 높은 외부주차장에 15기 규모의 친환경 전기차 충전단지를 추가 조성하였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증가추세에 있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하고자 13개 정부청사에 충전기 188기를 추가 설치하여 총 515기(주차면의 3.6%)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에 62기를 추가하기 위한 인프라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그동안 전기차 충전기를 직접 설치·운영하던 방식에서 민간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정부청사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또한 민간이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차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여 충전요금 결제 중 오류, 충전기 고장 등의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 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여 충전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아울러 정부청사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를 위하여 우선 13개 정부청사의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등 전기차 화재 대응시설을 8월중에 일제히 점검하여 충전케이블 미세손상 등 10건의 경미한 지적사항을 즉시 보완조치 하였으며, 신속한 화재대응을 위하여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하여 일반형 완속충전기를 스마트제어형 충전기로 점진적 교체설치하고, 질식소화덮개 등 화재 진압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화재 대응시설 정기점검과 자체 화재대응 모의훈련도 지속할 예정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전기차 충전기의 이용시간, 사용빈도, 충전량 등의 데이터 통계 분석 기반으로 후속 관리 중이며,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의 이설·확충, 완속·급속 비율 등의 충전수요에 따라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림 7-2-15] 전기차 충전단지



[그림 7-2-16] 기차 화재진압 합동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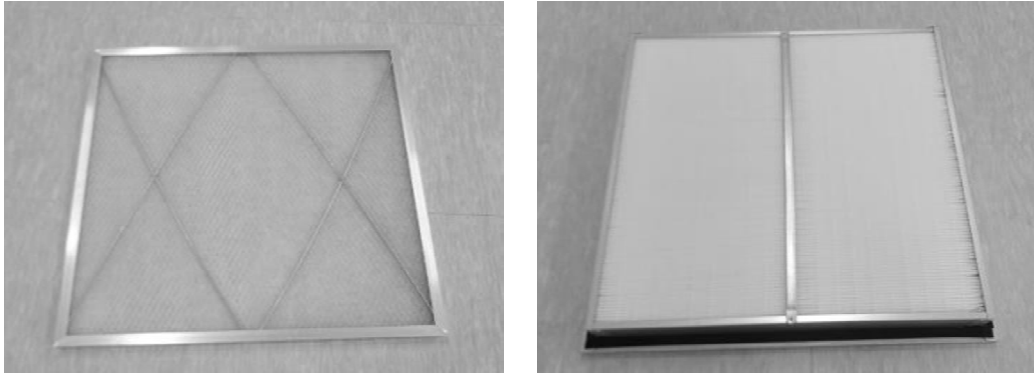
4) 맑은 물, 깨끗한 공기질 환경관리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청사 이용자의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을 위해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위한 실내환경 관리를 강화하였다. 우선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2024년에도 공기정화 필터를 전량(5,187개) 교체하고 일 2시간 이상 사무실 환기와 17시간 이상 공용공간 배기를 시행하였다. 또한, 입주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내공기질을 정밀 측정하는 등 깨끗한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세종청사의 26기 저수조 물 9,625톤의 수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염소 농도를 확인하고 반기마다 대형 저수조를 청소, 소독하여 항상 깨끗한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전문기관과 함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20,000여 명의 청사 근무자가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상시 관리 중에 있다.

앞으로도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부처에서 내부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폼알데하이드, 미세먼지) 발생 여부 측정을 지원하여 입주 기관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입주 기관과 함께 만들어가는 청사'를 구현해 갈 계획이다.

[그림 7-2-17] 공기조화기 필터 5,178개 교체(미디엄필터 및 프리필터)



5) 주차 환경 및 편의시설 개선

세종청사 입주직원 및 방문객의 통행 안전성 확보와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비포장 옥외 주차장(세종 옥외 주차장 11개소, 임시주차장 7개소 주차장) 중 진·출입로 바닥 패임이 심한 주차장에 대해 보수 공사를 완료하여 우천 시 차량 빠짐 등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였고, 세종컨벤션센터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 공사를 통해 가중되는 각종 행사에 대비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시설을 개선하였다.

또한 청사 주변에 배치된 복합편의시설 1~3 주차동에 대한 지주식 안내판 보수 등 청사 안내 시설물을 정비하여 보다 빠르고 편하게 위치를 식별하고 청사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인성을 확보하였다.

[그림 7-2-18]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 바닥 보수공사 및 안내판 정비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위와 같이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구현을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정부청사 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물 보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발로 뛰는 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찾아가는 청사운영 혁신서비스를 통해 입주공무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방문객이 편리하게 정부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앞으로도 계속 발굴·제공할 것이다.

6. 상생·협력의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정부청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 주무관 김 근 용
주무관 정 인 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시행으로 각 정부기관에서는 위탁용역, 파견근로자 등 간접고용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는 2017년 7월 중앙부처 최초로 본부 내 용역업무 중 상시·지속적인 업무와 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고용 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고, 총 2,365명의 용역근로자를 심사하여 2017년 말 1,330명(56.2%), 2018년 말 1,006명(42.6%), 2019년 말 29명(1.2%)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였다.

또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직무를 난이도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나눈 직무등급제를 도입하였고, 근무연수에 따른 단계급(보수등급) 상승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정부청사 유지관리 인력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2024년 행정안전부 공무원 단체협약 및 임금단체협약 체결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 내 공무원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을 위한 노사 간 단체교섭 권한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교섭대표 노동조합⁸⁾과 2024년 단체교섭(2년 주기) 및 임금단체교섭(1년 주기)을 실시하였다. 3월 14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총 12차례의 지속적인 실무교섭 등을 거쳐 단체협약 및 임금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하였다.

단체협약의 경우, 행정안전부 공무원 전환에 따라 2018년, 2020년 체결한 이후 세번째이다. 이번 협약에서는 근로자 형태 및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조합활동 참여권을 보장하고 병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한층 강화하였다.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선정

또한 임금실무교섭은 6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전체 공통 적용 사항은 정부청사관리본부 분과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부내 소속기관의 특성 고려가 필요한 사항은 부속합의서로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재직자의 사기진작과 우수 신규인력의 유입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임금수준 개선에 방점을 두고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공무원 근로자 기본급을 전년 대비 2.5% 인상에 합의하였다. 각 소속기관에서도 기본급 인상 및 보조 수당 지원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표 7-2-10] 분과별 부속합의서 주요 내용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주휴수당 운영 체계 개선		• 기본급 2.5% 인상 • 기술현업수당 일부 인상	• 기본급 1.2% 인상 • 명절휴가비 인상	• 기본급 2.5% 인상 • 직급보조비 일부 인상

정부기관의 성격상 한정된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노사가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고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하여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파업 없이 협상을 타결할 수 있었다.

[그림 7-2-19] 단체교섭 본교섭(상견례)
(‘24.3.14.)



[그림 7-2-20] 임금단체협약 체결식
(‘24.12.30.)



2)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한 공무원 노사협의회 개최

공무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고충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 및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이에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사협의회 등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노사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위원 7명 및 근로자위원 7명,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020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2024년에는 4차례 회의를 했고 총 20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표 7-2-11] 2024년 행정안전부 노사협의회 주요 논의 안건

구분	개최일	주요 안건
1분기	'24.3.27.(수)	• 협의(6건) : 공무원 출입 문제해결 요청 등
2분기	'24.6.27.(목)	• 보고(2건) : 혹서기 공무원 근로자 안전 관리대책 마련 등 • 협의(5건) : 청사 회전문 추가 설치 요청 등
3분기	'24.9.26.(목)	• 협의(5건) : 공무원 샤워실 보수 및 비품 확충 요청 등
4분기	'24.12.19.(목)	• 협의(2건) :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교육 요청 등

그 결과 공무원 출입 문제 해결, 청사 회전문 추가 설치 및 공무원 관리자급 리더십 강화 교육 실시 등을 실시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였다. 그 외 다양한 안건을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에 바탕을 둔 노사 파트너십의 관계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7-2-21] 1분기 행안부 노사협의회 ('24.3.27.)



[그림 7-2-22] 4분기 행안부 노사협의회 ('24.12.19.)



3) 공무원 근로자 역량개발을 위한 다채로운 교육과정 운영

공무원 근로자의 업무 분야 잠재력을 실현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형성해 나가기 위하여 2019년부터 매년 공무원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부청사 시설관리에도 신기술 및 응용 기술을 적시에 습득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에, 2022년부터 직무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근로자가 희망하는 기술 교육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4년에는 교육비 지원액을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하여 폭넓은 교육과정 선택권을 제공하였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23년부터 공무원 팀·부장급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직원 간 갈등을 관리하는 법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전 직원 대상으로 조직소통 교육을 추진하여 바람직한 동료 간 의사소통법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법정 폭력 예방 교육도 전 근로자가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동료애를 바탕으로 한 건강하고 차별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4~5월에는 전년도 정기 채용 시 입사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복무규정, 괴롭힘예방, 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교육 등을 내용으로 신규 공무원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하였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신입 직원들이 조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0월에는 당해 연도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 후 생애 설계, 진로 설계 등을 돕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24년에는 현장 최일선에서 방문고객 응대로 발생할 수 있는 감정노동을 해소하고, 고객응대 및 악성민원 대처를 위한 안내서비스 교육을 청사안내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여 직종별 교육을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직무 내외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공무원 근로자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부청사관리의 토대를 다져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다. 평가 및 발전 방향

공무직 제도 운영의 핵심은 정부청사 입주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청사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노사 간 소통을 통해 노사가 상생하고 연대해야 한다.

아직은 공무직 전환 초기로 제도운영 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고, 노사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한 갈등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 이해하고자 노력한 결과 단체협약과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노사 간 대화를 위한 장이 여러 차례 마련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상생의 노사문화 및 활기찬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노력할 것이다. 또한 단체협약과 임금단체협약의 합의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약내용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이행사항의 점검 및 관리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7.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편의 서비스 제공

정부청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 주무관 장 서 윤
주무관 임 재 현
주무관 이 보 애
주무관 최 효 원
주무관 오 윤 호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기관 직원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근무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후생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직장어린이집, 맛과 영양을 책임지는 구내식당, 원거리 통근자를 위한 통근버스,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각종 질환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입주직원의 수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청사의 후생복지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보육지원 서비스 제공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직원들이 육아 부담을 덜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1996년부터 정부청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2월 현재 10개 청사에 총 24개의 보육시설⁹⁾을 운영, 3,000여 명의 원아들이 재원 중이다.

9) 세종 11, 서울 2, 과천 2, 대전 3, 대구·인천·광주·경남·제주·고양 각 1개소

정부청사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이 많은 직장어린이집의 특성에 맞게 07시 30분부터 22시 30분(야간연장보육)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 8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교사와 보조교사 등 200여 명도 배치하고 있다.

정부청사 어린이집은 보육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킨더솔레 등 16개 기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탁기관은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실적 등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하여 선정되며, 계약기간 만료 시 재위탁 심의를 통해 적격성을 심사한다. 재위탁 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될 시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위탁업체를 재선정하게 된다.

또한,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 어린이집에 위탁사업비를 지원(법정 의무 보조 비율 50% 이상)하고 있다. 위탁사업비는 규모, 직원 호봉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별로 형평성 있게 배정하고 있다. 2024년에 정부청사에서 지원한 위탁사업비는 262억 원으로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등의 인건비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원장, 학부모들로 구성된 정부청사 어린이집 협의회(월1회 개최)와 어린이집별 운영위원회(분기 1회 개최)를 두어 보육현장의 의견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매년 재무회계·보건·위생 분야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여 입주직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2) 입주직원의 힘찬 하루를 위해 고품질 급식을 제공하는 구내식당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직원들에게 위생적이고 질 좋은 급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세종, 서울, 과천, 대전청사 등 전국에 소재하는 13개 청사별로 총 31개의 구내식당¹⁰⁾ 및 32개의 구내카페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세종, 서울, 과천, 대전청사 등 전국 13개 청사에 입주한 235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약 40,000여 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국 13개 청사 구내식당의 총면적은 약 33,000㎡이다. 구내식당 내에 약 10,000석 규모의 좌석을 마련하여 일 평균 약 17,000여 명의 인원이 증식시간에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10) 구내식당: 세종 12, 서울 2, 과천 2, 대전 6, 대구·인천·광주·경남·제주·춘천·고양·충남·경북 각 1개소
구내카페: 세종 16, 서울 2, 과천 4, 대전 2, 대구·인천·광주·경남·제주·고양 각 1개소

정부청사관리본부 구내식당에서는 이용자 수요에 맞춘 급식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 2회(상·하반기)에 걸쳐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품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주부처 직원이 참여하여 직접 급식품질 수준을 점검하는 급식품질관리 모니터링을 분기마다 실시하고 위탁업체 본부장급이 참여하는 급식품질관리협의회를 개최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품질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하절기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탁업체 간 교차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입주직원들이 안심하고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림 7-2-23] 구내식당 위생점검 당시 사진



너무나도 다른 입주직원들의 입맛을 모두 충족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사람들의 평가는 제각각이지만, 민원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평소에도 구내식당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전 부처의 구내식당 관련 문의 등을 받고 있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들어오는 내용은 해당 업체와 즉시 공유하여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자 배치 문제, 특정 식자재의 관리 문제 등 실질적인 부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한편, 2024년은 세종청사 3단계(7·16·17동) 및 중앙동 구내식당을 운영 중인 업체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해였다. 따라서 짧게는 2년 6개월부터 길게는 3년까지 위탁운영 할 전문업체를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모집하여 선정하였다. 세종청사 구내식당 운영에 관심이 있는 전문업체의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고 외부 전문가 및 입주기관 대표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제안을 한 업체를 선정하였다.

3) 입주직원의 원활한 출근 지원을 위한 통근버스 운영 및 관리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배우자의 직장, 자녀교육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원거리에서 출근하는 공무원을 위해 세종·서울·과천·대전청사에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은 1973년 서울청사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1982년 과천청사 개청과 함께 통근버스 운행이 확대되었고 이어 1999년 대전청사, 2012년 세종청사가 개청됨에 따라 통근버스도 추가 운영하게 되었다.

정부청사 세종 이전 완료 및 세종 중심 근무정착 방안 추진에 따라 2022년 세종-수도권 노선이 전면 폐지되었고, 2023년에는 전세 객차와 퇴근 버스 운영을 종료하였다. 세종청사 통근버스의 광역권 운행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는 세종 시내 및 충청권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노선(13개 노선, 일 평균 39대)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는 108대의 통근버스를 운행하였고 하루 평균 2,615명(세종 1,199명, 서울 573명, 과천 404명, 대전 439명)의 직원이 이용하였다. 하루 평균 세종청사는 39대, 서울청사는 31대, 과천청사는 21대, 대전청사는 17대의 통근버스가 직원의 출근을 지원하였다.

4) 입주직원의 건강보호와 질병 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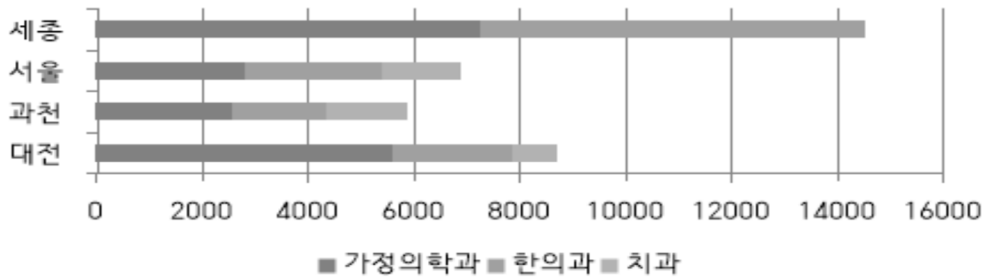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는 입주직원의 질병에 대한 치료·예방·관리 등 건강을 보호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의무실과 건강지원센터를 운영¹¹⁾하고 있다.

각 의무실은 가정의학과, 한의과, 치과 등 2~3개 과목의 부속의원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질병의 치료, 상담과 처방, 물리치료 등 기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무실은 청사 내 응급환자 또는 부상자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응급처치를 기본으로 하며 그 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의 정기적인 진료·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의무실 이용 건수는 35,914건이며, 청사별 이용 현황은 아래와 같다.

11) 의무실: 세종3, 서울1, 과천1, 대전 1개소
건강지원센터: 서울·대전·광주·대구 각 1개소

[표 7-2-12] 2024년 청사별 의무실 이용 현황



또한 청사 내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매뉴얼을 구축하고 위급상황 시 관내 병원으로 즉시 이송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모든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건강지원센터는 1999년 3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의무실 가정의학과와 연계하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자의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운동 부족, 과음, 흡연 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각종 질환에 대한 건강 상담과 체성분·골밀도·혈관 노화도 등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용건수는 15,692건이다.

5) 입주직원 건강 관리지원 시설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는 입주직원의 건강과 체력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실과 운동처방실을 운영¹²⁾하고 있다.

각 운동처방실 및 체력단련실에는 운동처방사·운동지도사가 상주·이동 근무하면서 운동 지도와 입주 직원들의 필요로 할 시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3개 청사 체력단련실·운동처방실 한해 총 이용 건수는 311,345(24.12.31.기준)명이다.

또한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스마트 헬스 플랫폼을 구축·운영으로 입주직원에게 스마트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헬스 플랫폼을 통하여 건강체력측정 및

12) 체력단련실 : 세종 10, 서울 2, 과천 3, 대전 1, 지방청사 각 1개소
운동처방실, 세종 3, 서울·대전 각 1개소

AI운동처방, 임산부 운동 프로그램, 그룹수업, 체력왕 선발대회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지원 서비스 질 향상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그림 7-2-24] 키오스크 AI 운동처방



[그림 7-2-25] 타깃층 그룹수업 (임산부 필라테스)프로그램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는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보다 높은 품질의 급식 서비스 제공, 전문적인 기초 의료서비스 제공 등 입주직원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25년에는 종사자들과 입주직원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되고 개선이 시급한 보육시설과 급식시설의 전면적인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스마트한 건강-의료 프로그램 발굴, 금연클리닉 상시 운영 도입 추진 등 보다 쾌적한 후생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8.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청사보안기획과 주무관 백 두 형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세종청사는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약 2만명의 상주직원과 1일 기준 약 2천명의 외부방문자가 출입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중요(보안)시설이다. 또한 「통합방위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중요(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의 협업 하에 높은 수준의 보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세종청사는 다른 국가중요(보안)시설과 달리 인구 유동성이 높은 도심지에 위치하고 많은 인원이 출입하는 시설의 특성으로 인해 국가주요자산 보호를 위한 보안수준 유지와 출입자의 출입 편의 증진이라는 상반된 가치 간 접점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방호인력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정부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호인력은 인원·차량 출입통제, 물품 검색,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험물 은닉 방식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어, 철저한 청사 방호를 위해서는 방호인력의 X-ray 검색·판독 능력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방호인력의 교육 수요에 대한 기대가 늘어나고 있으나,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직무교육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서 X-ray 검색·판독 임무를 수행하는 검색·판독요원을 양성하는 관세청 소속 공무원 교육 훈련 기관인 관세인재개발원과 2024년 3월 MOU 체결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2024년 4월 정부청사관리본부-관세인재개발원 간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엑스레이(X-Ray) 판독 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 5월에 제1기, 제2기 위탁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아울러 방호인력의 X-ray 검색·판독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9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자체 X-ray 검색·판독 경연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성적 우수자 시상을 통한 방호인력의 사기진작 등 정부청사 방호인력의 X-ray 검색·판독 역량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출입제한 대상자 처리 기준 강화

정부청사의 방호·보안관리를 위하여 방호직 공무원과 청원경찰 등 방호인력은 출입자를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방호인력의 정당한 출입증 제시 및 물품 검색 요구에 불응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행정안전부훈령) 개정을 통해 출입제한 처리 기준을 보다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청원경찰 등 방호인력의 검문·검색 요구에 불응하고 청사를 출입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미비했으나, 출입제한 대상자 처리 기준을 강화하여 방호인력에 의한 출입자 신원확인 및 물품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는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3개월간 출입을 제한하는 기준을 확립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청사 출입보안을 한 층 강화하였다.

3) 방문자 무인 안내시스템(키오스크) 운영·불편사항 개선

정부세종청사는 2023년 5월 2일부터 방문객의 출입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방문자 무인 안내시스템(키오스크)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청사 방문을 위해 방문자가 해당 부처(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방문 신청을 해야 했고, 담당 공무원이 출입관리시스템(GACS)에 방문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승인을 받아야 청사 출입이 가능하였으나, 키오스크 도입 이후에는 방문자가 직접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세종청사 방문예약' 탭에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은 출입관리시스템이나 스마트정부청사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출입을 승인할 수 있게 되어, 전반적인 출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용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되었다.

[표 7-2-13] 최근 5년간 정부세종청사 방문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5년 평균
세종	1,738	1,564	1,652	2,200	1,537	1,738

현재 정부세종청사 방문자의 약 50%가 방문자 무인 안내시스템(키오스크)을 통해 청사에 출입하고 있으며, 이용 빈도와 위치의 편리성 등을 분석하여 재배치, 오류 개선, 사용법 홍보와 바닥 동선 표시 및 안내 스티커, 안내간판 등 시각 안내 도구를 제작·설치하는 등 방문자 출입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출입 서비스 전반에 대한 운영 사항을 상시 점검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 평가 및 발전 방안

정부청사의 안정적인 방호·보안관리를 위해서는 시설관리주체인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뿐만 아니라 청사에 입주하여 상근하는 공무원, 공무원과 외부 방문자(민원인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 정부청사의 보안 유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출입자의 편의는 감소할 우려가 있기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방호인력 역량 강화, 관련규정 정비 및 지속적인 방문자 무인 안내시스템 개선 등으로 보안 강화와 출입 편의 증진이라는 상반된 가치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나아가, 잠재적 보안 위협 증가와 급변하는 방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물리보안 인적요소인 방호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그리고 정부청사의 물리적 취약 요소를 심층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청사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제3절

디지털 기록관리 기반 확대 및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1.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RAMP) 구축

국가기록원 디지털혁신과 주무관 문 신 혜

가. 추진배경

국가기록원은 디지털 시대에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이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도록 구축 방향을 다시 정립하였다. 먼저 제도 측면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기록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2023년에는 해당 근거를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이하 RAMP)을 설계·구축하였다. RAMP는 처리과에서 생산된 전자기록물이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기록물이 물리적으로 복제되며 이관되는 프로세스를 대체하며 기록관리시스템과 생산시스템이 저장소를 공유·통제하는 형태(통제형)로 설계되었다.

나. 추진 내용 및 성과

1) 업무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의 데이터 정비 및 이전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이하 온나라)과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기록관리시스템인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이하 cRMS)이 장기간 운영되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RAMP는 전자기록 생산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저장소를 함께 사용하는 형태인 통제형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보자원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2)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RAMP) 기능 개선

2023년 개발분에 이어 2024년에는 기록관 담당자가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능을 개발하였다. 또한 분류체계 검색을 포함한 통합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일반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기록관리 기능 중 기록물 이관 기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위한 기능으로 이관목록 확정, 이관 패키지 생성·전송, 이관확정결과 반영 등을 포함한다. 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기 위해서는 패키지 생성·전송에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RAMP에서는 패키지 인코딩하는 시간을 줄이고 보존포맷 변환 기능을 선택적으로 변경하여 패키지 생성에 소모되는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였다.

‘24년에는 분류체계 검색을 포함한 통합검색을 구현하였다. 분류체계 검색은 정부기능분류체계(BRM)의 가장 작은 단위인 단위과제 하의 단위과제카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단위과제카드 내에 편철된 기록물건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모든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기록물 본문과 붙임 파일 내 텍스트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구현하였다. 기관에서 과거 문서를 찾고자 하는 경우 편리하게 기록물을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붙임 파일까지도 키워드를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RAMP에서는 붙임 파일의 내용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본문과 붙임 파일의 내용을 텍스트로 추출하여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색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검색 기능 외에도 대시보드, 일반 통계, 자동 보존포맷 변환 등 다양한 기능을 개선하여 기록관리 기능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까지도 기록물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3) 중앙부처 시스템 배포

데이터 정비와 기능개선을 거친 RAMP는 2023년 시범 배포를 거쳐 총 48개 기관에 배포되었다. 48개 기관에서 RAMP를 사용하여 처리과-기록관의 하드웨어를 통합하고 동일한 기록물에 대하여 권한만을 이관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기록물의 이관 체계에서는 불가능했던 저장소 통합을 이루고 전자기록물의 진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 방안

국가기록원은 2024년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단계까지 관리 권한 이전 체계를 구축하였다. 향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까지 관리 권한 이전 방식을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25년에는 중앙기록영구관리시스템(이하 CAMS)까지 관리 권한 이전 체계를 설계하는 ISMP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후 도출한 설계안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는 RAMP와 CAMS가 통합된 시스템인 기록물 생산·관리통합시스템(가칭)을 구축할 계획이다.

2. 중앙행정기관 기록물 이관 및 관리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주무관 이 주 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생산 완료 후 10년이 경과한 다음 해에 이관받아 안전하게 보존하고,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에 기록물을 이관하는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포함), 군 기관이다. 2024년에 국가기록원에 이관되는 대상 기록물은 위 기관들이 생산·관리하는 일반기록물 중 2013년에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및 이관 시기를 연장한 후에 이관 시기가 도래한 기록물이며, 시청각기록물의 경우 2019년 이후 생산된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 행정박물은 국가기록원이 이관 대상으로 선별한 관인·공직자 선물류 등이 이관 대상이다.

국가기록원은 부처담당제를 기반으로 각급 기관과 기록물 이관 협의를 진행한 후 인수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기록물의 경우 이관 과정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기록물 인수

국가기록원은 2023년 10월에 국가기록원 기록물 이관 대상기관에 2024년도 이관대상 기록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24년도 공공기록물 이관·수집계획」을 수립하였다. 전자기록물 약 311만 건, 비전자기록물(문서·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 등)은 약 20만 5천여 첩(권)을 이관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전자기록물의 경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을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으로 교체하는 대상 기관인 행정안전부 및 국가기록원(23년 시범확산), 감사원 등(24년 확산) 125개 기관은 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서 이관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2024년에는 전자기록물 이관 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 또한 출범 시기가 최근으로 생산 기록물의 이관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5개 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재외동포청, 수원고등검찰청)도 이관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이관 대상 기관이 총 54개 기관이 되었다. 비전자기록물 이관 대상기관은 2024년도 이관대상 기록물 조사에서 이관량이 있다고 회신한 157개 기관이다.

2024년에 국가기록원이 인수받은 각급 기관의 기록물 수량은 전자기록물 약 314만 건, 비전자기록물 문서 25만 6천여 첩(권), 시청각기록물 8,836첩(점), 행정박물 181첩(점)이다.

전자기록물은 계획 대비 101%에 해당하는 약 314만 건을 이관받았다. 이관받은 전자기록물을 보존기간 별로 살펴보면, 보존기간 영구인 기록물이 전체의 36%(112만여 건)이며, 준영구인 기록물이 42%(130만여 건), 30년인 기록물이 22%(70만여 건)이었다.

[표 7-3-1] 2024년 인수 기록물 보존기간별 현황

(2024.12.29.기준)

구분	합계	영구	준영구	30년
비전자기록물 (첩·점·건)	256,454(100%)	52,657(20%)	160,305(63%)	43,492(17%)
전자기록물 (건)	3,138,413(100%)	1,121,917(36%)	1,308,386(42%)	708,110(22%)

국가기록원은 전자기록물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폐쇄망 이용 등으로 전자기록물 이관에 어려움이 있는 충청지방우정청 및 부산지방우정청 현장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법무부 산하 4개 지방교정청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던 수용기록부 등 이관 대상 비전자기록물의 이관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는데, 2023년에 시범이관 실시를 통해 마련한 이관 절차대로 기록물 이송, 임시서고 반입, 기록물철·건 검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총 11만 5천여 첩의 이관을 완료하였다.

2) 기록물 인수 세부 내용

국가기록원이 이관받은 중앙행정기관 기록물 중에는 감사결과 및 처리관련 기록물(감사원), 금융구조조정, 경제정책조정 회의(기획재정부), ASEAN 경제관계회의의 주요 정상급 외빈 방한, EU 정상회담 관련 기록물(외교부) 등이 있다.

[표 7-3-2] 2024년 중앙행정기관 주요 인수 기록물

- ▶ **감사원** : 감사원 감사결과 및 처리관련철
- ▶ **방송통신위원회**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인허가, 방사선 폐기물 폐기시설 인허가 및 변경
- ▶ **국가보훈부** :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심의의결서, 독립유공자 포상, 총무 보훈시행계획
- ▶ **법제처** : 법령안 대통령재가 및 공포, 국무회의 상정, 전시관계 법령집 송부 관련 기록물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료의약품 등록
- ▶ **행정안전부** : 관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생산평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 ▶ **교육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생산 징계처분취소 청구철 및 고충심사 청구철
- ▶ **국가유산청** : 유형문화재 정밀실측도면·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 도면
-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 역무고시제정, 법령협의를(전기통신사업법)
-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재심사청구철, 해외이주허가민원서류철
- ▶ **기획재정부** : OECD MAI 협상 그룹 회의 대책자료, 금융구조조정, 경제정책조정 회의
- ▶ **산업통상자원부** : EXPO공원개편, 융자금 상환계획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대통령기록관 건립 설계공모 설계설명서 등
- ▶ **환경부** : 저탄소 공원·녹지 확보방안 연구, 생태탐방로 연구용역 등
- ▶ **국토교통부**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서, 국가산업단지지정 변경승인서
- ▶ **외교부** : ASEAN 경제관계회의 주요 정상급 외빈 방한, EU출범 동향 및 EU 정상회담 등
- ▶ **국방부** : 월남참전유공자무공훈장공적서(마이크로필름)
- ▶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정비철, 법제도 정비 개선철, 북한주민접촉 승인철 등

소속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군기관 포함)의 기록물 중에는 정부청사신축 관련 서류(정부청사 관리소, 사전환경성 검토서(지방환경청), 내사종결, 미제사건, 첩보종결철(시도경찰청), 항박일지(지방해양경찰청) 등이 이관되었다.

[표 7-3-3] 2024년 소속기관 주요 인수 기록물

- ▶ **지방교정청** : 수용기록부
- ▶ **지방식약청** : 의약품 수입품목철,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등
- ▶ **지방우정청** : 상시위탁집배원 채용·계약 및 해지, 국유재산 사용허가, 체신공고
- ▶ **지방병무청** : 지침철, 방침철, 보존문서기록대장, 국외여행허가지침, 미귀국자·재외국민2세신청·등록철, 행정심판, 승선소집 보류자 명부 등
- ▶ **무형유산국** : 유형문화재 정밀실측도면·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 도면
-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중요무형문화재 시청각기록물
- ▶ **지방국세청** : 상속세조사, 국유재산매각, 소송기록, 심판기록
- ▶ **지방세관** : 행정심판청구, 관세법위반 사건철,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철
- ▶ **지방환경청** : 생태계 변화관찰 모니터링, 자연환경 보호지역 관리
- ▶ **지방노동청** :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 노동관계사건철
- ▶ **지방국토관리청**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사업, 민간투자사업
- ▶ **지방항공청** : 계류장 및 주차장 확장 기타공사 설계서, 항공기 사고 관련철
-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공사 기본설계 변경 설계, 감리용역,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책임감리용역
- ▶ **지방해양수산청** : 선박운항사업면허철, 공유수면매립면허, 해역이용협의서
- ▶ **시도경찰청** : 내사종결, 미제사건, 첩보종결철, 범죄사건부
- ▶ **지방해양경찰청** : 함정연혁사, 압수부, 영상녹화물관리대장, 번사종결철, 사건송치철, 내사종결철

다. 평가 및 발전방안

이전에는 기관의 기록물 이관 시기가 연말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특히 전자기록물 이관 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연내에 모두 해소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관 완료 기한을 10월로 정하여, 기관과 이관 대상 협의 단계부터 이를 준수하여 이관 장애 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이관 시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기관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치하여 이관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말에 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이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으로 전환이 완료된 46개 기관이 다시 온라인 연계를 통해 전자기록물을 원활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2025년 중 원내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시범이관을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해결해 나가며 대상 기관에 기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3. 기록물 보존기간 준칙 및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주무관 윤진원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주무관 박태연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영구 보존해야 하는 기록물의 평가·선별을 위해서는 정책개발과 더불어 관련 도구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다. 국가기록원은 2022년 기록물 평가도구의 고도화를 위해 그간 지침으로 운영하던 ‘처리과 및 기관공통업무 보존기간표’를 개선·보강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행정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을 제정하였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2020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기록관리기준표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하고, 기관의 단위과제 관리·운영을 지원해 오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중앙행정기관별 고유업무 기록물 보존기간 준칙 제·개정 추진

준칙의 개정을 위해 2023년 ‘준칙 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준칙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신설·변경 사항들을 현행화하고 준칙의 현장 적용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 준칙의 서식 및 작성 방법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기본계획의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준칙의 ‘명칭’을 기존 ‘중앙행정기관 기록물 보존기간 준칙’에서 ‘중앙행정기관별 고유업무 기록물 보존기간 준칙’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준칙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과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작성 ‘서식’을 개선하였다. ‘준칙요약표’, ‘주요단위과제’, ‘주요기록’, ‘연계시스템’ 등 항목을 추가하고 대분류별 ‘주요 기록물 현황’, ‘조직도’는 삭제하는 등 실무 참조에 필요한 항목을 늘리고 형식적으로 존재하던 항목은 제외하였다.

셋째, 준칙의 분류체계, 기능설명, 주요 단위과제, 관련 근거 등 준칙 ‘내용’을 보완·정비하였다.

2023년에 마련된 준칙 개정 기본계획에 따라 개선된 서식을 적용하여 제·개정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현재 4개 준칙을 제정하고, 14개 준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준칙 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내부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준칙 작성을 수행하면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항목 내용을 조정*하는 한편, 준칙 작성 지침을 보완하였다. 또한, 준칙 작성 후 해당 기관의 검토와 피드백을 통해 준칙 내용의 완결성,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중앙행정기관별 준칙의 전면 개정과 제정 작업은 기관별 기능분석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분류체계·과제설명·관련 근거 내용 보완, 용어정의·준칙요약표·주요기록 등 세부항목 추가

2) 중앙행정기관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지원 사업

국가기록원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9년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을 통해 기록관리기준표의 문제 유형을 도출하였으며, 단위과제 정비 절차를 상세 기술한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 정비 매뉴얼을 발간·배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중앙행정기관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20년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5개 년도(’20~’24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원 요청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다만, 사업 기간 중 추가 지원 요청 기관 및 신설 기관 등이 생겨남에 따라 2024년 추가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2025년까지 총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24년(5차년도)에는 감사원 등 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총 231개 부서의 7,493개 단위과제(10,028개 단위과제카드)를 정비하였다.

사업 추진 절차는 사전준비, 조사실시, 결과반영, 후속조치의 4단계로 구성된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국가기록원, 정비 대상 기관의 기록관, 조직 관리부서, 기관 내 각 부서, 온라인 시스템 관리부서 등 유관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업무 기능 분석, 개선안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실시 단계에서는 수집된 기초 자료들을 통해 용역수행사의 본격적인 기관 업무 기능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단위과제 문제유형 10종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적용하여 부서별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기관별 전담 인력을 두고 정기적인 기관 방문 및 실무자 대상 사전 방문 교육 등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업무분석 및 개선안 도출을 위해 중간관리자를 배치하여 업무분석서 초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하였다. 개선안 작성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리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를 통해 논의 및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업무분석서 내용의 적합성을 검증받고 정비 절차나 방식의 개선점, 정비 이후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결과 반영 단계에서는 단위과제 개선 결과를 BRM-온나라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시스템 탑재를 위한 데이터 정리 및 취합 등이 선행되며 「시스템 입력 매뉴얼」을 활용하여 기록관 담당자 및 용역수행사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진행하였다. 기관별 정비 일정에 따라 탑재 방식 및 시기를 사전 협의하였다. 기관 실무자들의 업무 연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시스템 입력 및 업무 반영 작업은 주말 낮시간을 활용하였지만, 신규 단위과제 입력 등과 같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작업은 주중에 미리 수행하였다.

후속조치 단계에서는 시스템 입력 결과(단위과제 및 단위과제 카드목록)를 재추출하여 점검하고, 기록관과 국가기록원 간 단위과제 보존기간 협의·확정 절차를 재수행하여 정비를 마무리하였다. 향후 경비 결과의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검토 계획을 세우거나, 정비 결과물을 활용하여 기관 실무자용 매뉴얼 또는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운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2024년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결과를 이전 사업(1차~4차)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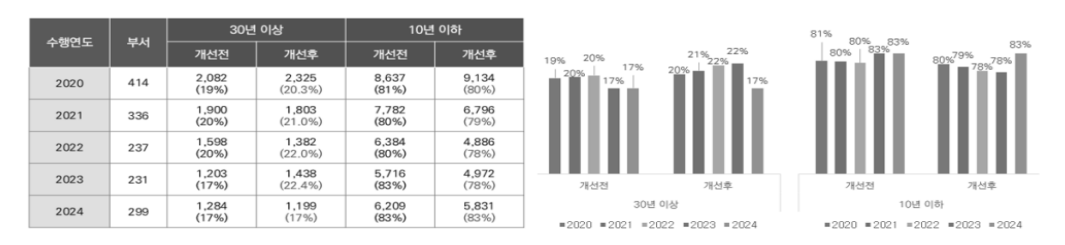
[표 7-3-4] '20년~'24년 개선 결과 비교 분석(단위과제)

수행연도	부서	개선전						개선후					
		단위과제	기관고유	각부처 공통	유사기관 공통	과단위 공통	단위과제 카드	단위과제	기관고유	각부처 공통	유사기관 공통	과단위 공통	단위과제 카드
2020	414	10,719	3,624	1,304	616	5,175	13,574	11,459 ▲7%	3,849 ▲6%	1,265 ▼3%	103 ▼83%	6,242 ▲21%	12,934 ▼5%
2021	336	9,447	2,707	1,797	501	4,438	13,885	8,595 ▼9%	3,352 ▲24%	1,500 ▼17%	131 ▼74%	3,609 ▼19%	10,913 ▼21%
2022	237	7,982	1,281	1,775	912	4,014	10,899	6,268 ▼21%	1,735 ▲35%	1,752 ▼1%	75 ▼92%	2,706 ▼33%	7,445 ▼32%
2023	231	6,919	1,154	1,499	1,112	3,154	9,477	6,410 ▼7%	1,889 ▲64%	1,537 ▲3%	443 ▼60%	2,541 ▼19%	7,725 ▼18%
2024	299	7,493	1,310	1,260	801	4,122	10,028	7,034 ▼6%	1,600 ▲22%	1,108 ▼12%	1,128 ▲41%	3,198 ▼22%	8,107 ▼19%

첫째, 5개년도 모두 정비를 통해 기관고유 단위과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차 사업은 일부 기관 업무 특성에 따라 유사기관공통 과제를 유지·신설함에 따라 해당 유형의 과제가 증가하였다.

과단위공통 과제의 경우 과제 수를 17개로 정비한 1차 사업 외에 11개 표준 과제를 적용한 2차~5차 사업 모두에서 그 수가 감소하였다.

[표 7-3-5] '20년~'24년 개선 결과 비교 분석(보존기간)



둘째, 1~4차 사업까지는 정비를 통해 보존기간 30년 이상 단위과제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5차 사업은 정비 전후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일부 기관의 유사기관공통 과제를 유지·신설이 보존기간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국가적으로 영구 보존해야 하는 기록물을 평가·선별하기 위하여 평가정책과 구체적인 기준들은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중앙행정기관별 고유업무 기록물 보존기간 준칙 개정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고유업무 준칙 제·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책정 기준을 제시하고 준칙의 품질과 활용성을 높여나가고자 한다.

중앙행정기관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지원 사업은 2019년 시범 사업을 포함하여 다년간 사업을 반복해오면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매년 개선된 절차 및 방법을 통해 정비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년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기관 실무자들이 단위과제, 보존기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사업 절차 중 부서 협의 시 두드러지게 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서 협의용 서식을 개선하거나, 사업 초반 출장 교육을 추가 시행하여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회성 교육보다는 기관 자체적으로 장기 실행할 수 있는 교육이나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비 결과를 유지하고 사후 통제하기 위한 기록관의 단위과제 관리 권한 부여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

제4절 최고의 법과학 서비스 제공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 주무관 방 지 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법의학·법과학·법공학 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 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의해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주로 하는 과학수사 중심기관이다.

국과수가 통보하는 감정 결과는 재판의 판결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사람의 생명·자유·재산 등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감정관들은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이라는 사명 아래 과학적 진실 규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업무를 수행해 왔다.

매년 증가하는 감정량에 대응하면서도 국민적 관심 사건·사고 발생 시 경찰 등 과학수사 부서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정확하게 감정 결과를 회보했으며, 그동안 분석기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감정분야에 대한 분석기법을 새롭게 정립했고, 나아가 대내외적으로 한국형 법과학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힘써왔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국민적 관심 사건·사고의 신속·정확한 감정

2024년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여러 대형사고가 발생한 해였다.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시청역 급발진 주장 사고 등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중대한 사건들이었다. 국과수는 이들 사건·사고의 발생 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희생자 신원확인을 통한 유가족 치유를 위해 즉각 현장대응팀 체재를 구성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이들 사고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해 국과수가 수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하여 외벽 충격 후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한 건으로, 이로 인해 기장과 승무원, 승객 등 총 179명이 사망하였다.

당시 국과수는 사고 당일 현장 대응팀을 구성 후 임시 검안실을 운영하여 총 219건의 검안을 진행하였고, 총 18차에 걸쳐 시신과 훼손되어 분리된 시신편을 포함한 변사자 및 유가족 시료 총 3,479종에 대한 DNA 신원확인 감정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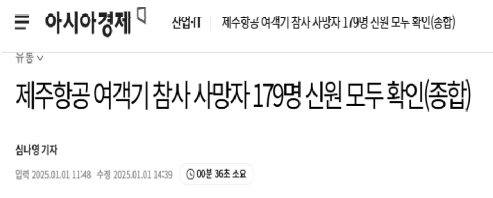
[그림 7-4-1] 유관기관 현장 회의



[그림 7-4-2] 검안조 편성 및 유의 사항 전파



[그림 7-4-3] 참사 희생자 신원확인 기사



사고 현장 및 DNA 분석 실험실 등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속하게 감정에 매진한 덕분에 사고 발생 5일만인 2025년 1월 3일 새벽에 희생자 179구 전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마쳤다. 특히 105구 시신에 대해서는 부분시신의 신속한 DNA 검사를 통해 시신을 최대한 재구성하고 신원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인도함으로써 유족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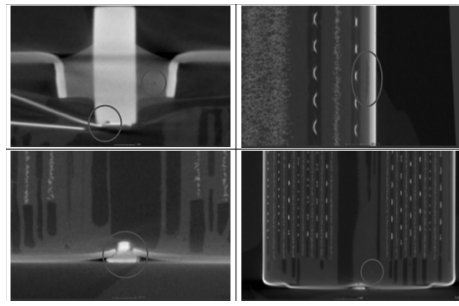
둘째,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AriCell)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하여 2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이다. 국과수는 사고 이후 즉시 긴급사건 현장 업무팀을 구성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더불어 시신에 대한 신원확인 감정을 진행하였다.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 등의 과학수사 부서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합동 화재 감정을 진행하였으며, 최초 발화 지점을 공장 3동 2층의 배터리 패키징 작업대 옆에 쌓여 있는 리튬 배터리 셀로 특정하여 화재 원인을 밝혀내었다. 이와 더불어 희생자에 대한 긴급 부검 및 DNA 검사를 진행하여 23명의 신원도 모두 확인하였다.

[그림 7-4-4] 아리셀 공장 화재 당시 CCTV



[그림 7-4-5] 일차전지 X-ray 사진



셋째, 2024년 7월 1일 G80 차량 운전자가 서울 중구 북창동 소재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좌측 인도를 올라타 보행자들을 충격하여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이른바 시청역 페달 오조작 사고는, 당시 운전자가 급발진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국과수는 G80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를 추출 및 분석하고, 블랙박스 영상 내 음향 주파수를 이용한 엔진회전수와 주행속도 분석으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사고 재현 시뮬레이션을 통해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한편, 운전자의 신발 바닥에서 가속 페달의 패턴이 식별되었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제동장치 검사를 통해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으며, 운전자가 사고 당시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하는 등 가속 페달을 밟아서 발생한 사고임을 밝혀냈다.

[그림 7-4-6] 사고 당시 현장



[그림 7-4-7] 국과수 현장 조사



2) 지능화·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감정기법 개발

범죄 수법이 날로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 업무도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과수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의 감정 이론과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켰다. 특히 새롭게 정립한 분석 기법은 감정 업무 및 수사현장에서 다수 사용되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음주운전 입증에 유효한 ‘한국형 위드마크’식을 개발하고 도입하였다. 위드마크는 단속현장에서 호흡측정 및 채혈을 못한 경우에 시간당 알코올 분해 값을 역으로 계산하는 등 당시 음주 상태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기존 위드마크는 서양인을 대상으로 고안된 데다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국과수에서는 기존 남녀로만 구분하던 상수를 성별, 나이(만), 키, 몸무게 등 ‘개인별 체수분량’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위드마크 상수(r)를 개선하여 정확도를 높였다.

[그림 7-4-8] 위드마크식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지침 v.1.0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지침

Guidelines for Alcohol Calculations

Version 1.1

2024. 12.



[그림 7-4-9]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보고서 프로그램



특히 2024년은 유명가수가 음주 뺑소니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셨던 일명 술타기 사건의 발생으로 지능형 음주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됐던 시기였다. 따라서 과학적 정확성이 개선된 한국형 위드마크식의 개발로 지능형 음주 범죄사건을 해결하고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나아가 국과수에서는 해당 감정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위드마크식 계산 보고서 자동완성 앱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둘째, 신종 마약류에 대한 탐색기술 기반을 구축하였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만연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신종 마약류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이들 신종마약류의 경우 표준물질 구입 및 분석법 개발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어 감정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했다.

이에 국과수에서는 신종마약류 남용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감정 백서를 제작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감정정보시스템(NFIS) 사업과 연계하여 물질별 통계 분석이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통계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신종마약 통계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내에 유통 중인 신종마약류를 최초로 발견하고, 이를 규제기관인 식약처 등과 공유함으로써 임시마약류로 신속히 지정하도록 하는 등 신종마약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 우려 사안들에 대한 과학적인 통계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마약류 확산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범정부 마약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나아가 신종마약류 확산을 차단하여 마약 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해도 안걸린다”는 인식에서 “하면 걸린다”는 인식으로 전환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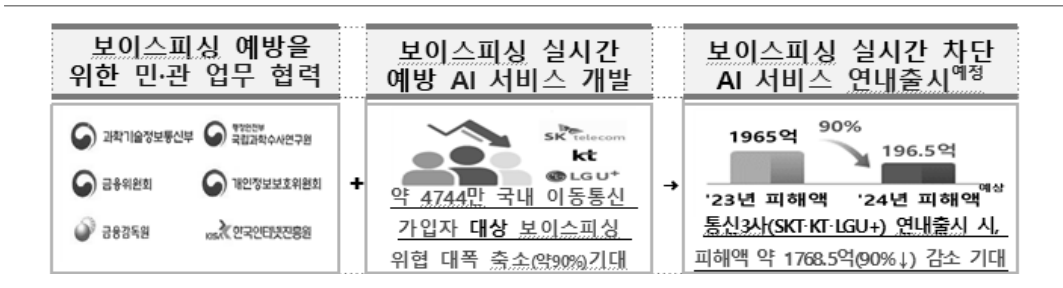
[그림 7-4-10] 마약류 통계프로그램 구동 개요 [그림 7-4-11] 마약류 감정백서(국문 및 영문판)



셋째, 보이스피싱 범죄 탐지·차단 AI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기존에 국과수에서는 점점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협업하여 범죄자의 음성정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수사기관용 보이스피싱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수사 및 예방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특히 해당 서비스를 수사에 적용하였을 때, 경찰의 수사기간이 1개월에서 최대 1일로 단축되는 효과를 보였으며, 실제 2023년 10월 경기남부 경찰청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51명을 검거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림 7-4-12] 이동통신 3사 보이스피싱 실시간 차단 AI 서비스



국과수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원천 차단을 위해 범죄자의 음성정보 데이터와 AI를 결합한 보이스피싱 범죄 탐지 차단 AI 서비스를 개발하여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성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범죄 상황을 AI가 실시간으로 인식하여 알림 및 통화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법공학동 준공을 통한 감정·연구역량 강화

법공학 분야(화재, 폭발 등)는 각종 범죄, 사건·사고 현장 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이를 재현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실험공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원 내에는 실험공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원거리의 나대지에서 진행하거나 타 기관의 실험실을 빌리는 등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감정을 수행하기 위해 2019년 1일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에 완공된 법공학동은 ‘공간과 기술의 결합’을 모토로 하여 실제 사건·사고 현장을 재현할 수 있는 모의 실험공간, 첨단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실험공간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그림 7-4-13] 법공학동 전경



[그림 7-4-14] 법공학동 개청식



이들 실험실은 크게 안전, 교통, 디지털 분야로 구분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실제 사고현장을 재현할 수 있는 모의 실험공간을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3D로 스캔·구현하여 감정의 정확도를 높였다. 교통 분야는 감정 유형별 대응력 확보를 위해 급발진 사고(의심)차량, 미래형 차량(자율주행차량 등) 전용 실험공간, 실차 기반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공간을 마련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첨단기술(AI, 인공지능) 기반 관련 분야 연구·개발 공간을 구성하여 연구원 내 기술 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표 7-4-1] 법공학동 분야별 주요 실험공간

안전	창의융합실험실	초대형 안전사고실험실로, 초고속카메라를 이용한 추락 모의실험 가능
	시사실	총기감정 의뢰 시, 실제 발사실험을 실시하여 탄환비교, 사격거리 등 측정
	혈흔형태실험실	혈액을 이용하여 유혈사건 현장을 구성하고 이를 3D스캔하여 형태 분석
	3D파노라마피어리뷰실	화재사고 현장을 2차원(평면)의 사진이 아닌 3D로 보존·구현하여 감정
교통	차량성능검사실	실외 주행을 구현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각종 진단장비와 데이터 수집장치 연동
	첨단모빌리티검사실	자율주행·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차량의 센서 및 데이터 등 정밀분석
	드라이빙시뮬레이터실	실제 교통사고 현장을 가상공간에 재현하여 운전자 관점에서의 사고분석 수행
디지털	보이스피싱실험실	신속한 사건해결을 위해 시각화 도구를 활용하여 피싱사건 관계도를 가시적으로 제시
	디지털포렌식참관실	형사사건 관련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포렌식 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AI 기술지원실	연구원 내 첨단기술(AI 인공지능) 기반 관련 분야 연구·개발 지원·협업

법공학동의 개청으로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전용 실험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감정 결과 도출이 가능해졌다. 즉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법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이는 감정 신뢰도 제고로 이어져,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한국형 법과학 위상 제고

국과수는 “정확하고 신속한 감정”이라는 기본 책무를 지키기 위해 과학수사 정착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감정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일선 수사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찰, 군, 지자체 등 수사 관계자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 증거물 감정의 이해과정, 아동학대 사망의 이해과정,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실무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기본·심화교육으로 세분화하여 각종 사건 사고 해결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표 7-4-2] 교육수료자 현업 적용 사례

- 준강간사건에서 음주대사체, 남성 유전자형 등의 결과값을 확인하여 사건 종결
- 미세섬유 분석에 대한 내용을 통해 대구 관내 발생한 6개월 남아 침대 비구폐색 질식사에서 변사자의 비강 및 구강의 미세섬유를 채취하여 분석 시도
- 전기차 배터리 화재 강의를 통해 얻게 된 지식으로 전기차 등 배터리 관련 화재 현장에서의 주요 감식포인트 정립

또한 국과수는 감정 인력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감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한 감정결과를 얻기 위해 국내외 우수기관 및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관계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각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표 7-4-3] 2024년 국내외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날짜	체결 대상	체결 내용
1.11.	원주시 외 협약기관	공교육 분야 지원, 지역 균형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 등
3.19.	경북대학교	흔적 및 총기감정물의 연구 및 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 등
5.16.	한국가스안전공사	사고조사 협력 및 공동학술교류
6.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외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 협력
6.4.	원주시·이전공공기관	상생발전 및 기관 협력체계 강화
7.5.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AI 데이터 기반 동반성장을 위한 데이터협력 등
7.9.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딥페이크 탐지분야 연구 협력 등
8.26.	태국 법무부 중앙법과학원	법과학기술 및 연구협력, 교육 등을 위한 직원 상호교환

이밖에 개발도상국의 법과학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제 사회의 안전과 협력 증진을 위해 공적개발원조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몽골·스리랑카·인도네시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마무리 과정에 있으며 2024년부터는 볼리비아와 법의학 DNA,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다. 기자재 지원, 현지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법과학 분야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볼리비아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림 7-4-15] 對 몽골 사업 종료보고회



[그림 7-4-16] 對 볼리비아 사업 착수보고회



이들 활동은 대내외적으로 국과수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법과학 분야의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이들 협력 과정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양국 법과학 전문가들의 교류와 지식 공유를 촉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나아가 법과학 분야 전반에 걸쳐 역량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및 국민 안전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다. 평가 및 발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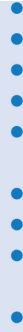
현대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사고에 대한 감정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과수는 사회적 현안 발생 시 신속·정확한 감정을 수행하는 한편 신중 범죄기법에 대응하기 위한 감정기법을 개발하고 확립시켜 감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왔다.

앞으로도 국과수는 과학수사를 한층 더 발전시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신뢰할 수 있는 감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각종 새로운 감정기법 개발,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과학수사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4

행정안전백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PART
VIII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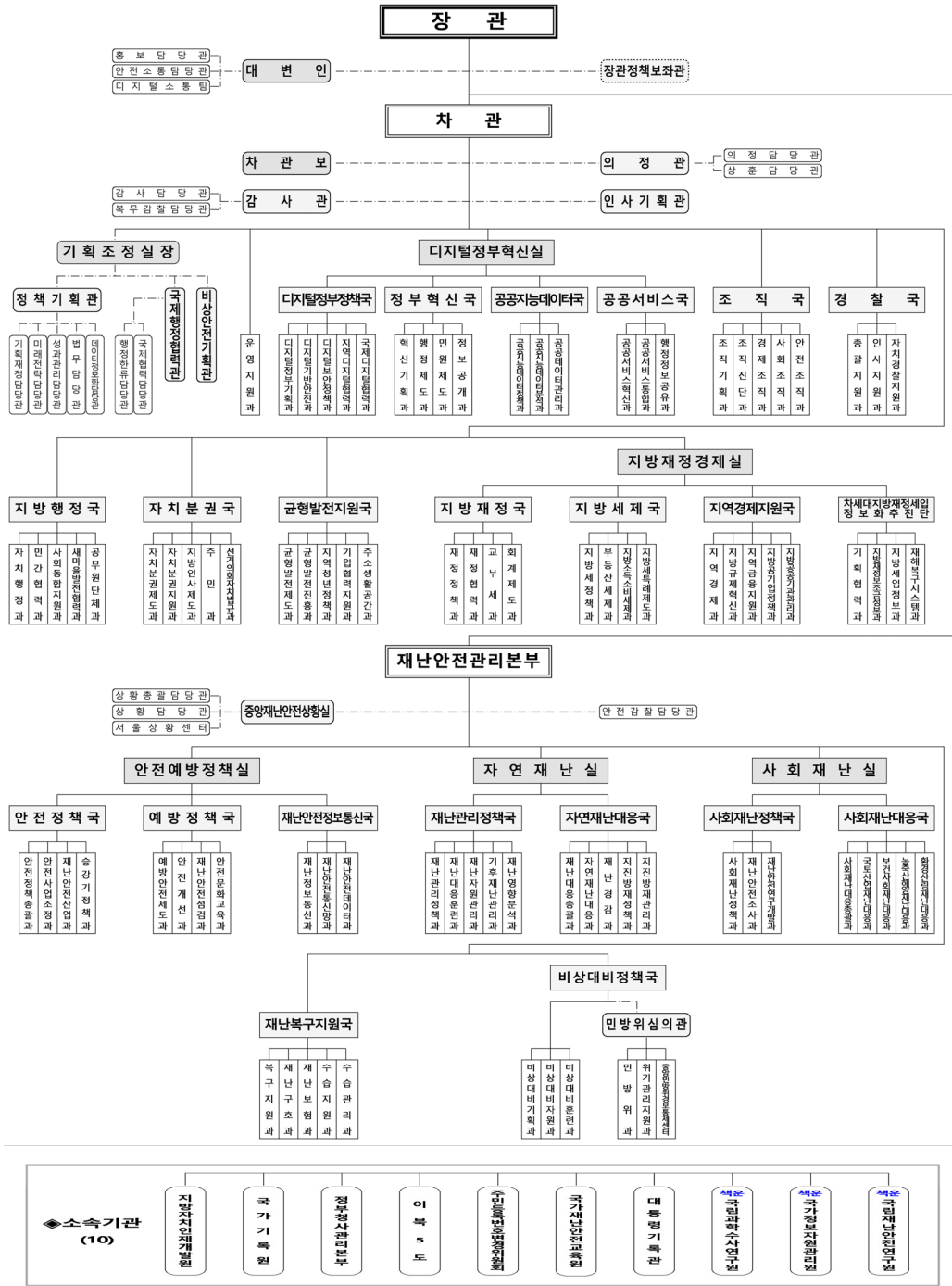


1. 기능·기구·정원·연혁

가. 기능(정부조직법 제34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부 문	주 요 기 능
국가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회의의 서무 • 법령 및 조약의 공포 • 정부조직과 정원 • 상훈 • 정부혁신 • 행정능률 • 전자정부 • 정부청사의 관리 •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지방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 낙후지역 등 지원 •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나. 기구(1차관 1본부 1차관보·6실·1대변인 28국·관 1상황실 1단 116과, 10소속기관) (‘24.12.31. 기준)



다. 정원

■ 행정안전부

('24.12.31.)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계		3,845	9	3,775	19	42
본 부		1,671	3	1,628	8	32
소속 기관	소 계	2,165	5	2,145	5	10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08		108		
	국가기록원	251		251		
	정부청사관리본부	754		754		
	이북5도	45	5	35	5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13		12		1
	국가재난안전교육원	47		47		
	대통령기록관	76		76		
	국립과학수사연구원	455		446		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326		326		
	국립재난안전연구원	90		90		
	국가경찰위원회	3	1	2		
전직대통령비서관 등	6			6		

라. 연혁

■ 행정자치부

연 대	연 혁
1998. 2.28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총무처'와 '내무부'를 통합하여 행정자치부로 출범 - 1실 1본부, 10국 5관, 46과 8담당관
1998. 7.22	○ 행정관리국의 행정정보화심의관 폐지 - 차관 밑에 행정정보화계획관(3급) 신설 ○ 감사관을 복무감사관으로 개편 - 인사복무국의 공무원 복무관련 기능 이관 ○ 인사복무국과 고시훈련국을 통합하여 인사국으로 개편 ○ 지방재정경제국과 지방세제국을 통합하여 지방재정세제국으로 개편 - 지역경제심의관을 폐지하고, 지방세제심의관 신설 ○ 5개과 51명 감축
1998.12.31	○ 교육훈련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설치(7부 15과) • 기획지원부, 자치행정연수부, 교육행정연수부, 농업 연수부, 건설교통연수부, 국제특허연수부, 통계연수부 설치 - 중앙공무원교육원(△2담당관 △34명) • 교수부의 교육1담당관·교육2담당관 폐지 - 중앙소방학교(△9명)
1999. 5.24	○ 의정국을 의정관으로 개편 ○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방재국을 통합하여 민방위방재국으로 개편 ○ 민방위방재국장밑에 방재관(3급) 신설 ○ △2국 + 2관 △ 7개과 △ 114명
1999.10. 1	○ 정보화 관련조직 개편 - 행정정보화계획관실에 정보화총괄담당관을 신설하고, 정부전산정보관리소의 기획과를 폐지
2000. 6. 7	○ 방재관을 민방위방재국에서 분리하여 민방위재난통제 본부장 직속으로 조정 - 방재관 직급조정(3급 → 2~3급) - 방재관실에 방재계획담당관, 재해대책담당관 및 재해복구 담당관을 신설하고, 민방위방재국의 방재계획과, 재해 대책과 및 재해복구과를 폐지 ○ 민방위방재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개편 -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민방위기획과, 민방위운영과 및 재난관리과를 설치

연 대	연 혁
2001. 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제심의관을 지방재정세제국에서 분리하여 차관 직속으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제심의관을 지방세제관으로 명칭변경 - 지방세제관실에 지방세제담당관·지방세정담당관 및 지적담당관을 신설하고, 지방재정세제국의 세제과·세정과 및 지적과를 폐지 ○ 지방재정세제국을 지방재정경제국으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경제국에 지역경제과를 신설하고, 자치행정국의 실업대책과를 폐지 - 재정경제과를 재정과로 개편
200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무감사관을 감사관으로 개편, 복무업무를 인사국으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관실의 복무조사담당관실을 조사담당관실로 개편 - 인사국에 복무과 신설 ○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지도과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과와 지도과를 통합하여 기획지도과로 개편 ○ 중앙소방학교에 의무소방원 교육업무 담당인력 증원(14명)
2002. 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119구조대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기능 구조·구급체제 강화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기능 보강 등 정원 증원(25명)
2002.1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중앙청사 별관 신축에 따른 1개과 신설 및 인력 증원(46명) ○ 주민등록전산시스템 백업시스템 구축 및 운영인력 증원(4명)
2004. 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관리국을 조직혁신국·행정혁신국, 자치행정국을 지방자치국, 지방재정 경제국을 지방재정국으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혁신국에 혁신총괄과, 조직기획과, 조직진단과, 인력운영과, 행정혁신국에 참여정책과, 공개행정과를 신설하고, 조직정책과, 조직관리과, 행정제도과는 폐지 - 지방자치국에 분권지원과, 평가조정과를 신설하고 자치운영과는 폐지 - 지방재정국에 재정정책과, 재정조정과, 경영지원과, 지역균형발전과를 신설하고 재정과, 교부세과, 공기업과, 지역진흥과는 폐지 - 지방세제국에 세제과, 세정과, 지방세심사과, 지적과를 신설하고 세제담당관실, 세정담당관실, 지적담당관실은 폐지 - 전자정부국에 전자정부정책과, 행정정보화과, 지역정보화과, 정보자원관리과를 신설하고, 정보화총괄담당관실, 행정정보화담당관실, 자치정보화담당관실은 폐지 ※ 6개과 51명 증원
2004. 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내 행정혁신업무 총괄을 위해 기획관리실의 행정관리 담당관실을 혁신담당관실로 개편
2004. 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국에 전자정부지원과를 신설하여 전자정부기능 보강 ○ 정부기록보존소를 국가기록원, 정부전산정보관리소를 전자정부지원 센터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록원에 평가 분류과와 전자정부지원센터에 정보화지원과를 신설하여 기능보강

연 대	연 혁
2004.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정책관(민방위안전정책담당관·국가기본체계보호 담당관) 신설 및 민방위재난 통제 본부의 소방방재청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민방위교육과, 국립방재연구소, 중앙소방학교, 중앙 119구조대는 신설되는 소방방재청으로 이관 ※ 소방방재청으로 정원 310명 이체
2004. 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관을 폐지하고 의정관리국(의정과·상훈과·연금복지과 및 복무과)으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관리국의 의정담당관실, 상훈담당관실은 폐지 ○ 인사국(인사과·교육훈련과·고시과)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공무원교육원, 소청심사위원회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 ※ 중앙인사위원회로 정원 210명 이체
2004.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개혁본부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혁신국을 혁신기획국으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총괄·혁신평가·정책혁신·혁신교육과 및 홍보협력팀 - 행정혁신국을 혁신지원국으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혁신·운영혁신·제도혁신·참여혁신과 및 혁신과제팀 - 전자정부국을 업무프로세스 체제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기획·사업지원·서비스정보화·프로세스 정보화·정보자원관리과 및 프로세스혁신팀 - 지방자치국에 지방행정혁신과 신설 및 평가조정팀 설치 ○ 행정개혁본부를 정부혁신본부로 명칭 변경 ○ 혁신담당관을 혁신기획관으로 명칭 변경 ○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을 자치인력개발원으로 개편하고 연수부를 각각 관련 부처로 이관
2005.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담당관을 혁신기획관으로 명칭 변경
2005. 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자치부 본부 전면 팀제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관보·1실·1본부·7국·4관·1센터·45과·4팀(64) → 5본부·8관·1단·10아카데미·48팀(63) • 5본부 : 정책홍보관리본부·정부혁신본부·전자정부본부·지방행정본부·지방지원본부 - 기능 개편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홍보관리본부 : 기획관리실, 공무원관련기능 • 정부혁신본부 : 혁신기획국, 혁신지원국 • 전자정부본부 : 전자정부국, GCC 기능 • 지방행정본부·지방지원본부 : 지방자치국, 지방재정국, 지방세제국 • 혁신기획관 국장급 확대 : 부내혁신전략팀, 성과관리팀, 부내정보화팀 • 감사관 : 공직윤리(재산심사)는 정책홍보관리본부로 이관 • 홍보관리관 : 공보관 • 의정관 : 의정관리국(연금복지, 공무원단체는 정책홍보관리본부로 이관)

연 대	연 혁
2005. 4.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홍보기능 인력 및 재정기획인력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기능인력 2인(4급1, 5급1) 및 재정기획인력 1인(5급) 보강 ○ 홍보관리관 밑에 홍보관리팀 신설(48팀 → 49팀)
2005. 5.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록원 팀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 신설 : 3[4과·1지원·1사무소·1기획단·2팀(9) → 1단·9팀·2센터(12)] - 증원 : 36인[기록원 16인, 기록관리혁신단 20인]
2005. 6.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동부분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신설 : 1분소[2부·10과·3분소(15) → 2부·10과·4분소(16)] - 증원 : 18인[4급 또는 연구관1, 4·5급1, 5급1, 6급1, 6급 또는 연구사1, 7급1, 7급 또는 연구사1, 연구관6, 연구사5, 경정1, 경감-1]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통신인력 34인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시스템운영센터 → 정부청사관리소 - 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른 2급 내지 4급 공무원 직무 보직규정 - 재정기획팀장 직급 상향 조정(4급 → 3급)
2005. 7.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차관제 도입에 따른 관장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관 : 의정관, 운영지원팀, 정책홍보관리본부, 정부혁신본부, 전자정부본부 - 제2차관 : 안전정책관, 지방행정본부, 지방지원본부 ○ 증원 : 3인[차관1, 행정사무관1, 비서(6급상당)1]
2005. 1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 중앙행정기관 민원사무 개선 및 운영실태 확인·평가 등의 기능이 국민처리위원회에서 우리부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 인력 이체(정부혁신본부 제도혁신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관 3인, 행정주사 3인 ○ 우리부 전산장비의 운영·관리기능이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 인력 이체(2005. 11. 13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팀 : 전산사무관 1인, 전산서기 1인 - 지적팀 : 지적주사보 1인 ○ 우리부 전산장비의 운영·관리기능이 정부통합전산 센터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 인력 이체(2005. 11. 13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운영센터 : 전산주사보 1인, 전산서기 1인, 기능6급 기계장 1인, 기능 8급 통신원 1인, 기능9급 사무원 2인, 기능10급 통신원 3인, 기능10급 사무원 4인 - 연구기획팀 : 기능10급 사무원 1인 - 주민제도팀 : 전산주사 1인, 전산주사보 1인, 기능7급 통신장 1인
2005. 1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 : 본부 팀제 보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본부·8관·1단·10아카데미·49팀(64) → 5본부·9관·1단·2센터·53팀(70)(증6) 〈5본부〉 : 정책홍보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세제본부

연 대	연 혁
2005.12. 9	<p>〈9관〉 : 혁신기획, 감사, 의정, 국제협력, 안전정책, 균형발전지원, 홍보관리, 비상계획, 지방행정혁신관</p> <p>〈1단〉 : 조직혁신</p> <p>〈2센터〉 : 정보능력개발, 부동산정보관리센터</p> <p>〈53팀〉 : 부내혁신전략, 성과관리, 부내정보화, 고객만족행정, 감사총괄, 지방감사, 조사, 의정, 상훈, 국제협력팀, 안전기획, 국가기반보호, 지역경제, 균형발전, 참여여성, 운영지원, 재정기획, 법무행정, 공무원 단체복무, 연금복지, 공직윤리, 홍보관리, 기획홍보, 혁신전략, 지식행정, 혁신평가, 교육개발, 제도혁신, 공개행정, 조직기획, 조직관리, 기능분석, 전략기획, 전자정부제도, 행정정보화, 서비스정보화, 전자정부 표준화, 정보 자원관리, 전자정부보안, 정보화교육기획, 정보화교육운영, 지방혁신전략, 지방혁신관리, 자치행정, 자치제도, 지방공무원제도, 주민제도, 분권지원, 재정정책, 교부세, 지방세제, 지방세정, 지적</p> <p>○ 자치인력개발원 → 지방혁신인력개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부 → 기획지원부, 교수부 → 인력개발부, 혁신연구 개발센터 신설 - 총무과 → 행정지원팀, 기획협력과 → 기획협력팀, 교육총괄과 → 인력개발 총괄팀, 교육1과 → 인력개발1팀, 교육2과 → 인력개발2팀, 연구개발팀 및 혁신교육팀 신설 <p>○ 기구 신설·개편 및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6) - 국제협력관, 국제협력팀, 기획홍보팀, 기능분석팀, 전자정부제도팀, 부동산정보관리센터 - 개편(11) - 균형발전지원관, 지방재정세제본부, 지방행정혁신관, 정보화능력개발센터, 지식행정팀, 공개행정팀, 조직관리팀, 전자정부표준화팀, 전자정부보안팀, 정보화교육기획팀, 정보화교육훈련팀, - 폐지(11) - 지방지원본부, 지방재정기획관, 지방세제관, 전자정부아카데미, 과제관리팀, 혁신홍보팀, 진단평가팀, 연구기획팀, 사업지원팀, 시스템운영센터, 정보화 인력개발팀 <p>○ 정원 : 8인 증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 증원 4인 〈증원〉 : 12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관 : 1인(행정·별정2,3급) ◦ 공무원단체복무팀 : 7인(행정4.5급1, 행정5급3, 행정6급3) ◦ 공직윤리팀 : 4인(행정6급) 〈감원〉 : 8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원 이체 및 직급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체 3인 : 전산5급1, 행정7급1, 전산7급1 • 직급조정 5인 : 전산8급1, 기능10급사무원3, 기능10급 운전원1

연 대	연 혁
2005.1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 : 증원 8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원 : 행정3급1, 행정4급2, 행정5급1, 행정·전산5급1, 전산5급1, 행정7급1, 전산7급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정원에서 이체 및 직급조정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체 3인 : 전산5급1, 행정7급1, 전산7급1 • 직급조정 5인 : 전산8급1, 기능10급사무원3, 기능10급 운전원1 -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기획관실, 고객만족기능 → 혁신기획관 기능 ◦ 국제협력 기능 → 국제협력관 신설 기능 ◦ 균형발전기능 → 균형발전지원관 기능 ◦ 기획홍보기능 → 홍보관리관 기능 ◦ 혁신홍보 기능 → 혁신전략 기능으로 흡수 ◦ 행정공개기능 강화 → 행정공개팀 설치 ◦ 기능분석기능 강화 → 기능분석팀 설치 ◦ 전자정부제도, 전자정부표준, 전자정부보안 기능 → 전자정부본부 신설 기능 ◦ 지방행정혁신 기능 총괄 → 지방행정혁신관 설치 ◦ 분권지원 기능 → 지방행정본부로 이관 ◦ 재정과 세제 기능 연계 → 지방재정세제본부 개편
2006.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과수 책임운영기관화에 따른 직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제에 국과수를 책임운영기관화하는 근거 마련
2006. 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노조관련 인력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부서인 운영지원팀에 5급 1인 증원
2006. 4.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내 정보화 인력 복수 직렬화 및 국가기반보호팀장의 직위 복수직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내정보화 3인 등
2006.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적 조직진단체계 마련 및 균형발전총괄 부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구 : 1본부 감1관 1센터 6팀 설치 - 정 원 : 48인 증원
2006. 7.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혁신을 위한 인사혁신팀 설치
2006. 9.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부여를 위한 직제 개편(41개직위)
2006. 10.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단체복무팀을 근무지원팀과 단체교섭팀으로 분리 설치
2006. 1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정책관 설치 및 국가기록원 확대 개편, 제주청사관리소 설치 등을 직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 증2관 감1팀 ◦ 소속 : 2부·5팀·1소·1센터 - 정원 : 99인 증원

■ 행정안전부

연 대	연 혁
2008. 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부+인사위+비기위+정통부 일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부 : 1장관 2차관 6실(본부) 16관·단·센터 77팀 5소속기관(2,184명 - 본부 883 <876+운영정원 7>, 소속기관 1,301<1,286+경찰위 3+전직 대통령비서관 12>) - 인사위 : 1위원장(장관급) 1처 1실 5국 25과 2소속기관(433명 - 본부 262<256+운영정원 6>, 소속기관 171) - 비기위 : 1위원장(차관급) 1처 1관 2국 1상임위원 13과(87명- 86+운영 정원 1) - 정통부(일부) : 1국 1관 4팀 1소속기관(341명 - 본부 59, 소속기관 28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관보 5실 3국 22관·단(△5) 92과·팀(△27) 8소속기관(18부·센터 72과) ☞ 7개 팀(4·5급 팀장) : 단체지원팀, 교섭협력팀, 성과관리팀, 정보화팀, 고객만족행정팀, 국제협력팀, 위기관리상황팀 ○ 주요 개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홍보본부' ⇒ '기획조정실' - '정부혁신본부' ⇒ '혁신조직실' - 중앙인사위원회 ⇒ '인사실' - '안전정책관' + 비상기획위원회 전체 ⇒ '재난안전실' - '전자정부본부' + 정통부 일부 ⇒ '정보화전략실' - '지방행정본부' ⇒ '지방행정국' - '지방재정세제본부' ⇒ '지방재정세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심사 → 총리실(14명 : 4·5급 1, 5급 6, 6급 5, 기능10급 2), 지적 → 국토해양부(29명 : 3.4급 1, 4급 1, 4.5급 3, 5급 9, 6급 11, 7급 1, 기능10급 3) 이관 - '균형발전본부' ⇒ '지역발전정책국' - 지방혁신인력개발원 ⇒ 지방행정연수원
2008. 3.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정책국'에 '기업협력지원과(3명:차체상계)' 신설
2008. 5.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과체계의로의 전환(2차 조직개편) ○ 1장관 2차관 1차관보 5실 3국 22관·단 92과·팀 8소속기관(18부·센터 72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관보 5실 3국 21관·센터(△1) 64과(△28) 8소속기관(16부·센터(△2) 60과 <△12>) ※ 팀제 폐지 ○ '혁신조직실' ⇒ '조직실'
2008. 8.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통근차량 관리 이전 '의정담당관' → '정부청사관리소': 별정6급 1명 이체
2008.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청사관리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원 11명(2,864명) - 증가내역 : 입주부처 청사관리요원 기능직 11명 이체
2009.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 이관 (← 지식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 1(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사무국) 이관 - 정원 10명 이체(2,874명)

연 대	연 혁
2009. 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성장기능 신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활성화과 → 지역녹색성장과, 안전정책협력과 → 민간협력과, 재난총괄과 → 재난안전정책과, 위기관리상황과 → 재난위기종합상황실, 대통령기록관 정책운영과 → 지원홍보과, 대통령기록관 기록수집과 → 기획수집과
2009. 9.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진단센터 폐지, 행정선진화기획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진단과 폐지, 선진화담당관 신설 - 자치제도과 1명 보강(선진화담당관실 △1)
2009. 1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복무관을 인사실에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단체과 신설 ○ 지방성과관리과 폐지 → 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 신설 ○ 재난안전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기능 조정(재난안전정책과 → 재난대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 이체 ○ 감사관실 전산감사기능 조정(조사담당관 → 감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명 이체
2010. 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거한 전직대통령 배우자 비서관 신설 : 증원 4명 ○ 전직대통령 비서관 정원 감축 : △8명 ○ 안전문화 기능 이관(← 소방방재청): 4명 이체 ○ 소속기관 정원 본부 이체 : 7명
2010. 8.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과수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증원 15명, 정원 2,88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칭변경(국립과학수사연구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기관장 등급조정(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나' 등급 → '가' 등급) - DNA-DB법 관련 증원 : 15명(연구관 4, 연구사 11) ○ 개방형 직위 변경(정부통합전산센터장 → 대변인) ○ 기능직 일반직 전환(39명)
2010. 9.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직위 변경(청사기획관 → 비상대비기획관)
2011.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전략실 소속 변경(2차관 ⇒ 1차관) ◦ 윤리복무관 소속 변경(인사실 ⇒ 2차관직속) - 기구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정책국 소속 '생활공감정책과' 신설(← 기업협력지원관 폐지) ◦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 신설(1차관 직속) ◦ 지방재정세제국 소속 '재정관리과' 신설 ◦ 본부 정보화교육 기능 중공교 이관(정보화인력개발과 폐지, 10명 이체) ◦ 기타 기능 조정 등 : 회계공기업과 → 공기업과, 유비쿼터스기획과 → 미래정보화과, 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 → 지방경쟁력지원과, 지식제도과 → 행정제도과, 인력개발기획과 → 인력기획과 - 정원 조정(증원 18명, 정원 2,90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공직인사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등 18명 증원

연 대	연 혁
2011. 7.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관리소 세종시 공사관리인력 : 증원 6명 ○ 정부통합전산센터 및 본부 정보보호인력 : 증원 8명 ○ 정부통합전산센터 기능직 감축 : △4명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인력 증원 : 증원 26명 ○ 과장급 개방형 직위 지정 : 조직진단과장, 균형인사정보과장, 비상대비훈련과장
2011. 8.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직 일반직 전환 : 39명
2011. 9.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정책과 신설
2011. 10.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방재연구원 신설 (46명-이체 28, 증원 16) ○ 자전거정책과 신설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실무인력 : 증원 5명 ○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실무인력 : 증원 4명 ○ 개방형직위 변경 중공교 교수부장 → 국립방재연구원장
2012. 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정책국 지역녹색정책관 신설 ○ 고졸자 채용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 4명 증원 ○ 새마을금고 지도점검 확대 및 관련 제도개선 : 2명 증원 ○ 자전거인프라구축 및 자전거이용활성화 : 1명 증원 ○ 중공교 국제교류협력요원 : 1명 증원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정책협력관 폐지
2012.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10급 폐지 : 기능10급 385명 감 ⇒ 기능9급 385명 증 ○ 총액인건비 직급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통합전산센터 8급 6명 감 ⇒ 7급 6명 증
2012. 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신설 : 4과, 22명 (본부 이체 3, 증원 19) ○ 대구청사관리소 신설 : 19명 (타부처 이체 13, 증원 6) ○ 국과수 연구기획과 신설 및 연구인력 증원 :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과 폐지, 행정지원과 신설 ○ 국립방재연구원 청사이전 인력 : 2명 증원
2012. 1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통합전산센터 사이버안전과 신설 ○ 본부 4급 1명 ↔ 소속기관 4·5급 1명
2013.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청사관리소 신설 및 운영 인력 : 2과 93명 증원 ○ 세종청사 영상국무회의 운영 : 2명 증원 ○ 국립방재연구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 상담센터 관리일원화에 따른 인력 이체 : 8급 1명(청사관리소 → 연금복지과)
2013. 2.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대통령비서관 증원 : 4명

■ 안전행정부

연 대	연 혁
2013. 3.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정원 : 1본부 5실 4국 20관 67과 12소속 / 3,116명(기준정원 3,102명) ※ 본부 1,160명, 소속 1,944명, 전직대통령비서관 12명 ○ 공통지원부서 인력 감축 : △8명 (5급 2, 6급 3, 7급 1, 8급 1, 기능 1) ○ 주요 개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실’ ⇒ ‘창조정부전략실’ - ‘정보화전략실’ ⇒ ‘전자정부국’ ※ ‘미래창조과학부’로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안, 정보문화 기능 이관 및 기구 (1국 3과)·인력(31명) 이체 - ‘재난안전실’ ⇒ ‘안전관리본부’ - ‘지방행정국’ ⇒ ‘지방행정실’ - ‘지방재정세제국’ ⇒ ‘지방재정세제실’ - ‘국립방재연구원’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3. 6.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청사관리소 신설 : 10명 (타부처 이체 5, 증원 5)
2013. 9.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 인력 보강 : 1명 증원 ○ 개인정보보호 조사 및 단속 인력 : 4명 증원 ○ 보행안전관련 정책 추진 인력 : 1명 증원 ○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및 행정사제도 운영 인력 : 2명 증원 ○ 재정투융자심사제도 운영 인력 : 1명 증원 ○ 지방세입 정보관리 인력 : 5명 증원 ○ 정부 3.0 운영 인력 : 1명 증원 ○ 지방행정연수원 교육기자재 및 시청각시설운영 인력 : 3명 증원 ○ 국가기록원 중간기록 관리시설 운영 인력 : 2명 증원 ○ 정부청사관리소 고양지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인력 : 5명 증원 ○ 정부통합전산센터 전자정부 사이버위협 대응인력 : 8명 증원 ○ 세종청사관리소 2단계 기구 및 인력 : 1과(시설2과) 61명 증원 ○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운영 인력 중 2명 감축 (14명 ⇒ 12명)
2013. 1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과수 지역법의관사무소(서울대) 운영인력 : 2명 증원 ○ 국과수 디지털포렌식 분야 감정인력 : 2명 증원 ○ 재난안전연구원 재난 및 안전사고 원인조사 전담인력 등 : 3명 증원
2013. 11.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과수 본원 개편 및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신설(동부분원 폐지)
2013. 12.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과수 대구과학수사연구소 신설 및 증원 : 20명 증원
2013. 1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홍보인력 : 1명 증원 ○ 통합정원 감축 : △28 (본부 10, 소속 18) ○ 세종청사 2단계 타부처 인력 이체 : 14명

연 대	연 혁
2013. 12. 31	○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 11명
2014. 4. 2	○ 승강기안전과, 행정한류담당관, 지방세입정보과 신설 : 증원 12명 ○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 폐지 및 본부이관 ○ 국고보조금 관리강화, 전자정부 수출지원 인력 등 : 증원 7명 ○ 타 부처 기능이관에 따른 인력 이체 : 4명(국토부1, 방재청2, 통계청1)
2014. 8. 27	○ 정부세종청사 추가이전에 따른 필요한 인력 보강(방호과 신설) : 증원 32명

■ 행정자치부

연 대	연 혁
2014. 1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정원 : 4실 1국 16관 49과 7소속 / 2,655명 ※ 본부 819명, 소속 1,821명, 전직대통령비서관 12명, 경찰위원회 3명 ○ 주요 개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안전 조직(1본부 3국 11과 1소속, 189명)’ ⇒ ‘국민안전처’ 이관 - ‘공무 인사·윤리·복무·연금 조직(1실 5관12과 2소속, 431명)’ ⇒ ‘인사혁신처’ 이관
2015. 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과 신설(+14명) ○ 정부3.0‘성과관리과’ 신설(+2명) ○ ‘지방규제혁신과’ 신설로 지역경제활성화(+2명) ○ ‘글로벌전자정부과’ 신설(+2명) ○ ‘자전거정책과’ 폐지 및 ‘지역생활기반과’ 대체신설 ○ 지역공동체활성화(+2명), 지방공기업 혁신(+3명), 협업조직(+2명), 클라우드 등 실무인력(+2명) 보강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및 감정인력 보강(+13명) ○ 세종청사 입주기관 시설관리인력 이체(+4명) ○ 통합정원 감축(△21명)
2015. 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규제 혁신 실무인력 보강(+2명) ○ 대통령기록관 세종시 이전에 따른 실무인력(+4명) ○ 국세청 세종청사 입주에 따른 방호인력 이체(+3명) ○ 당직총사령 운영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 이체(△1명, 인사처)
2014. 5.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내 개인정보보호 강화(+1명) ○ 자치단체 정부3.0전략 수립 보강(+1명), 원문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2), 정부3.0성과관리체계 구축 등(+2)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 인력 보강(+2명) ○ 재정관리과 → 회계제도과로 변경 ○ 재정협력과(+3) 및 통합센터 빅데이터분석과(+4) 신설(한시조직) ○ (국과수) 경상해 교통사와 감정인력 등 보강(+13)
2015. 8.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총액인건비제 시행(49개)
2015. 1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유정책관 폐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관 신설 ○ 개인정보보호협력과 신설(+7명) 및 행정정보공유과 기능 이체(전자정부국 → 창조정부조직실) ○ 정부청사관리소 조직 개편(본소이전 : 서울△51 → 세종44) ○ 새마을금고 재정 건정성 제고를 위한 지역금융지원과 신설(한시조직, +1명)

연 대	연 혁
2015. 11. 30.	○ 사이버보안관리 역량강화 인력 보강(+2명)
2015. 12. 30.	○ 통합정원 감축(△16, 책임운영기관 포함) ○ 국가기록원 조직개편(전자기록관리과 신설, '보전연구과'를 '기록보존복원센터'로 개편, '기록관리교육과'를 '기록관리교육센터'로 개편, '수집기획과'와 '공공기록관리과'를 통합하여 '수집기획과'로 개편)
2016. 3. 1.	○ 국민참여정책과 신설(+4명) ○ 행정한류 콘텐츠 개발(+1명), 신설기구 성과평가제 운영(+1명), 지구촌 새마을운동 추진(+2명), 지방계약지원센터 설치(+1명), 세종2청사 관리 지원(+1명)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및 감정인력 보강(+26명) ○ 전직대통령비서관 정원 조정(△2명)
2016. 7. 8.	○ (부서명칭 변경) 행정제도혁신과→공공서비스혁신과, 민원제도과→민원서비스정책과, 지방행정연수원 교육1과→정책리더양성과, 교육2과→전문역량교육과
2016. 8. 11.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이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2016. 12. 27.	○ 통합정원 감축(△17명, 책임운영기관 포함) ○ 전직시험 합격자 정원 조정(±16명) ○ 자치법규과 신설(+8명) ○ 정부청사관리소→정부청사관리본부(명칭변경), 청사보안기획과 신설(+5명) 및 중간 관리자 보강(+3명), 공간디자인 기능 강화(+1명) ○ 지진대응 인력보강(+1명) 등
2017. 2. 28.	○ 재난안전상황실 구축(+1명), 민원서비스 종합평가(+1명), 조직관리시스템 구축·운영(+1명),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1명), 일하는 방식 혁신(+1명), 대국민 정책참여 활성화(+1명), 정부3.0 글로벌협력 강화(+1명), 지능정보기반 행정혁신(+1명), 지방인사·조직혁신(+2명),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지원(+1명), 차세대 지방세 정보화(+1명), 지방핵심인력역량개발센터 신설(+2명), 대통령기록관 보존장비 운영(+4명), 청사공간관리 및 시설관리 강화(+4명), 클라우드 운영 및 사이버위협 침해 대응 등(+3명) ○ 지역경제지원관 및 공기업정책과 신설(+4명) ○ 방위사업청 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인력 이체(+6명)
2017. 5. 8.	○ 재정협력과 정규직제화(+1과, +3명)
2017. 5. 30.	○ 주민등록번호변경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사무국) 및 심사지원과 신설(한시조직, 정원 +13명(한시정원 6명 포함))
2017. 6. 20.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학수사 감정인력 보강(+25명)

■ 행정안전부

연 대	연 혁
2017. 7.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분야가 통합되어 행정안전부로 개편 ○ 재난안전관리본부(3실·조정관 1국 9관 1상황실 42과, +531명) (한시조직 1관 8과, 한시정원 13명 포함) ○ 조직 확대에 따른 공통부서 인력 보강(+47명) ○ +2소속기관(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23명(한시정원 6명 포함)
2017. 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금융지원과 정규직제화(+1과, +1명)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대전지방과학수사연구소 이공학과 정규직제화(+2명)
2017. 1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인건비 활용 일반임기제공무원 +14명(본부 +10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명, 정부청사관리본부 +1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명)
2018. 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참여정책과 정규직제화(+1과, +4명)
2018. 3.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 해외수출 지원 강화 및 외국인 이주민 지원 등(+7명), 중앙재난안전상황실 파견자 직제 정원화 및 민방위대피시설 확충 등(+20명),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 상설화(+1명), 중요기록물 복원 및 대통령기록관 전시·교육 운영 등 (+5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검안 확대시행 및 DNA 긴급감정체계 강화 등 (+21명), 전자정부 인프라 관리 개선 및 클라우드 공동기반 구축 등(+7명), 재난안전 R&D 기획·평가·관리 전문화 인력 등(+6명)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업무 국토교통부로 이관(6급 1명 국토부 이체) ○ '국제안전협력담당관'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지역발전과'를 '지역균형발전과'로 명칭 변경
2018. 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과'를 '지역일자리경제과'로 명칭 변경
2018. 9.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협력실'을 신설(재난안전조정관 상계), 하부조직으로 재난협력정책관, 사회 재난대응정책관 설치(안전조사지원관, 특수재난협력관 상계) - '기후재난대응과', '수습지원과' 신설 및 재난안전 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27명) ○ '자치분권지원과' 신설 및 국정과제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인력 증원(+9명) ○ 총액인건비제 활용 직급조정(~'20.9.30., 본부 4명, 소속기관 7명) 및 '디지털소통팀' 신설(~'21.9.30.) ○ '국민참여정책과'를 '국민참여혁신과'로, '민원서비스정책과'를 '민원제도혁신과'로, '자치분권과'를 '자치분권제도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대책연구실'을 '지진방재 센터'로 명칭 변경
2019.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밀착형 사회혁신 추진을 위한 '지역혁신정책관' 및 '지역사회혁신정책과, 주민참여협업과' 신설(+20명)

연 대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담당관'을 '복무감찰담당관'으로 부서명칭 변경 ○ '국가기록원' 조직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과(지원기준과, 공공지원과, 보존인수과) -3과(콘텐츠기획관, 서울기록관 수집공개과, 서울기록관 보존서비스과)
2019. 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확대(+2명),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대상 확대 등(+5명), 지방인사제도 개선(+4명),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안정적 운영(+6명), 지방규제 허신(+2명),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 변경(+1명), 지방의회 대상 교육 및 클라우드 기반 기록관리(+11명), 빅데이터 분석 강화(+3명)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 신설(+13명) ○ 청사관리본부 조직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과(노사후생과, 청사기획과, 시설관리과, 청사건축과), △4과(방호안전과, 청사 기획디자인과, 시설지원과, 공사관리과), +1소(인천청사관리소)
2019. 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 +3과(총괄기획과, 시스템개발과, 인프라구축과) +18명 ○ '지방세제정책관'을 '지방세정책관'으로 명칭변경 및 기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운영과 → 부동산세제과, 지방세입정보과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2019. 1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인건비 활용 일반임기제 공무원 정원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운영지원과)
202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인건비 활용 일반임기제 공무원 정원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채용 5명(본부 5명/ ~'22.6.30.), 기간연장 11명(본부 8명, 지방자치인재 개발원 1명, 정부청사관리본부 1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명/ ~'21.12.31.)
2020. 2.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지소(대전청사관리소 충남지소·경북지소) ○ 관보 편집·발행(+1명), 부내 조직관리 효율화(+1명), 사이버보안 강화(+1명), 국무·차관회의 운영(+1명), 조직관련 제도 운영(+1명),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운영(+1명), 공공자원 개방·공유시스템 구축·운영(+1명), 자치분권사전협의회 대응(+1명),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1명),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리(+1명), 공유재산 관리(+1명),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1명), 내해수면 선박제도 운영(+1명), 재난관리 국제협력(+1명), 예·경보시스템 고도화(+1명), 재난안전통신망제2센터 운영(+8명), 위기징후제도 운영(+1명), 지방공무원 역량교육·평가(+1명), 대통령기록관 정보시스템 강화 등(+2명), 충남·경북지소 관리(+10명), 재난안전체험관 운영(+1명), 합동법과학감정실 구축(+2명), 인공지능 기반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등(+2명), 사회재난 안전기준 적정성·영향력 연구(+1명), 공무수행근로자 정책지원(+10명), 서거한 전직대통령 배우자의 비서관 등(△2명)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신설
2020. 4.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정부 구현을 위해 '전자정부국'을 '디지털정부국'으로 개편

연 대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변경 : 전자정부국 → 디지털정부국, 정보기반보호정책관 → 공공데이터정책관, 전자정부정책과 → 디지털정부정책과, 정보자원정책과 → 디지털정부기반과, 정보기반보호정책과 → 디지털안전정책과, 지역정보지원과 → 지역디지털협력과, 글로벌 전자정부과 → 국제디지털협력과, 빅데이터분석과 → 빅데이터분석활용과, 스마트 서비스과 → 공공지능정책과, 지능행정기반과 - 기능이관 : 디지털정부국 9과 → 12과(+3과), 정부혁신조직실 12과 → 10과(△2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8과 1팀 → 7과 1팀(△1과)
2020. 6.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인건비제 활용 벤처형조직(디지털서비스개발담당관) 신설(+2명, ~'22.5.31.) ○ 총액인건비제 활용 직급조정 기간 연장(11명, ~'22.9.30.)
2020. 8.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구·인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과(개인정보보호정책과, 개인정보보호협력과) △39명 ○ 디지털기록관리 혁신을 위한 국가기록원 조직개편(±2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기록관리과 + 기록정보기반과 → 디지털기록혁신과, 지원정책과 → 지원총괄과·행정 기록지원과, 지원기준과 → 특수기록지원과, 공공지원과 → 공공기록지원과, 공개서비스과 → 서비스정책과, 행정운영과 + 기획제도과 → 행정기획과, 생산지원과 신설 ○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공무수행 근로자 지원(+3명) ○ 신설기구 성과평가에 따른 정규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습지원과(6명)
2020. 9.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 통합관리를 위한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확대 개편(+2과 +1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변경 :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 →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시스템개발과 → 지방세정보화사업과 - 신설 : 재정정보화사업과,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 ○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1명)
2020. 1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기구 성과평가에 따른 정규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혁신정책관(1명), 지역사회혁신정책과(8명)
2021. 2.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과(지구촌새마을과,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 감염병재난대응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자치역량센터) ○ 정부포상 관리(+1명),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감사(+1명), 지자체 보안감사(+1명), 국민참여 활성화(+1명), 범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1명), 미래행정조직 장기전략과제 수립(+1명),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연계 및 제공(+1명), 인공지능 기반 대국민서비스 제공(+1명),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활성화(+2명), DMZ 평화의 길 조성 및 운영(+1명), 지자체 전환사업 관리(+1명), 지방세 송무 지원(+1명), 종합부동산세 운영(+1명), 지방세 조례 감면제도 운영(+1명), 어린이이용시설 실태조사(+1명), 지자체 안전예산 분석·관리(+1명), 재난안전통신망 관리(+6명), 위기관리매뉴얼 관리(+1명),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상시점검체계 구축(+2명), 재난현장 수습 지원(+2명), 후방지역종합상황실 관리(+1명),

연 대	연 혁
	<p>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1명), 정부청사 조경관리(+1명), 이북5도 방호체계 개선(+1명), 재난안전사업 평가(+1명), 전직대통령비서관 등(△4명)</p> <p>○ 감염병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협력실 조직개편 - ‘감염병재난대응과’를 신설하고 ‘보건재난대응과’를 ‘가축질병재난대응과’로 명칭 변경 - 감염병재난대응과(+4명), 가축질병재난대응과(+1명), 수습지원과(+2명) 인력 증원</p>
2021. 3. 9.	<p>○ +1소속기관(대통령기록관) - 대통령기록관 소속 변경 : 국가기록원 소속 → 행정안전부 소속</p>
2021. 5. 31.	<p>○ △2과(재난안전담당관, 자치법규과), ‘선거의회과’를 ‘선거의회자치법규과’로 명칭 변경 ○ 재난안전담당관(△1명), 자치법규과(△1명) ○ 신설기구 성과평가에 따른 정규조직화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6명)</p>
2021. 9. 7.	<p>○ 청년정책 강화(+3명)</p>
2021. 9. 24.	<p>○ 신설기구 성과평가에 따른 정규조직화 - 자치분권지원과(3명) ○ 총액인건비제 활용 기구 운영기간 연장(디지털소통팀, ~'23.9.17.) ○ 총액인건비제 활용 일반임기제공무원 △1명(정부청사관리본부△1명), 존속기한 연장 10명 (8명 ~'22.12.28., 2명 ~'23.12.31.)</p>
2021. 11. 23.	<p>○ 산업안전·보건안전 관리 강화(+11명)</p>
2021. 12. 14.	<p>○ +1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 ○ 공공데이터 분석·활용체계 정립을 위해 ‘정부혁신조직실’과 ‘디지털정부국’ 조직개편 - 정부혁신조직실 : +2과(3관 10과 → 3관 12과), 디지털정부국 : △2과(1관 10과 → 1관 8과) - 명칭변경 : 공공데이터유통과 → 공공데이터관리과, 빅데이터분석활용과 → 통합데이터분석센터, 지역디지털협력과 → 지역디지털서비스과, 디지털정부기반과 → 디지털자원정책과, 지능행정기반과 → 스마트행정기반과 - 신 설 :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서비스정책과, 폐 지 :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혁신과 - 이 체(디지털정부국 → 정부혁신조직실) : 공공데이터정책과, 공공데이터관리과, 통합데이터분석센터 ○ 공공데이터 분석·활용(+9명), 부내 데이터 관리(+3명), 지방의정연수 기획 및 운영(+5명) ○ 공공기록관리 내실화를 위한 국가기록원 조직개편 - 기록관리지원부 → 기록관리부, 기록보존서비스부 → 기록서비스부, 연구협력과 → 기록협력과, 디지털기록혁신과 → 디지털혁신과, 지원총괄과 → 기록관리정책과, 행정기록지원과 → 사회기록과, 특수기록지원과 → 경제기록과, 공공기록지원과 → 특수기록과, 보존인수과 → 보존관리과</p>

연 대	연 혁
2022. 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운영(+1명), 자치경찰제 운영 지원(+1명), 특정 금융거래정보 지방세 분야 활용(+2명), 부동산 세제 개편 및 지방계약 업무 지원(+2명), 어린이·보행자 및 저수지 등의 안전관리 강화(+3명), 재난안전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1명), 디지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1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 추진(+2명한시), 대통령기록물 열람 업무 등 수행(+3명), 마약·약물 범죄 감정(+2명) ○ 신설기구 성과평가에 따른 정규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관리지원과(2명)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내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획과 → 기획전략과, 법과학교육센터 → 법과학교육연구센터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액인건비제 활용 직급조정 사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급환원 ±1명, 신규 직급조정 ±1명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총액인건비제 활용 기구 및 인력운영 사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팀 폐지 및 운영정책팀 신설, 일반임기제공무원 △1명
2022. 5.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대통령비서관 등(+4명)
2022.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인건비제 활용 벤처형조직(디지털서비스개발담당관) 폐지(△2명, 직급환원 ±1명) ○ 총액인건비제 활용 직급조정(11명, ~'23.9.17.) 및 일반임기제공무원(5명, ~'24.6.30.) 존속 기한 연장 ○ 총액인건비제 절감재원 마련을 위한 운영정원 감축(△2명)
2022. 8.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국(경찰국) +3과(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 경찰국 신설(+13명)
2022. 9.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보좌역(+1명)
2022. 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관리(+10명)
2022. 1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과(균형발전제도과), ±1과(주민참여협업과를 폐지하고 재난안전데이터과 상계신설) ○ 새정부 국정철학 및 기능 변화 반영을 위한 하부조직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명칭 : 지방자치분권실 → 지방자치균형발전실 - 관명칭 : 지역혁신정책관 → 지역기반정책관, 지역발전정책관 → 균형발전지원관 - 부서명칭 : 협업정책과 → 행정제도과, 국민참여혁신과 → 국민참여과, 민원제도혁신과 → 민원제도과, 정보공개정책과 → 정보공개과, 지역균형발전과 → 균형발전사업과, 지역사회혁신정책과 → 지역활성화정책과, 지구촌새마을과 → 새마을발전협력과, 지역일자리경제과 → 지역경제과, 공기업지원과 → 공기업관리과, 주민참여협업과 → 재난안전데이터과,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 → 재난안전통신망과, 송강기안전과 → 송강기정책과 ○ 지방자치균형발전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 편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균형발전실 : 주민과(지방행정정책관 → 지역기반정책관), 주소정책과 및 생활공간정책과(균형발전지원관 → 지역기반정책관), 지역공동체과(지역기반정책관 → 균형발전지원관)

연 대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관리본부 : 재난정보통신과 및 재난안전통신망과(재난관리실 재난관리정책관 → 안전정책실 안전관리정책관, 재난경감과 및 재난영향분석과(안전정책실 예방안전정책관 → 재난관리실 재난관리정책관, 안전제도과 및 재난안전산업과(안전정책실 안전관리정책관 → 안전정책실 예방안전정책관) ○ 정책 홍보 강화(+1명), 데이터기반 행정 구현(+1명), 온라인 종합상황실 기획·구축(+1명), 데이터공유플랫폼 구축(+1명), 정부서비스의 민간 개방(+2명), 모바일 신분증 확대(+2명), 특례시 등 지원(+1명), 청년마을 조성사업 확산(+1명), 섬 발전 업무 추진(+1명),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2명),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1명), 새마을금고 관리·감독(+1명), 지방공공기관 혁신(+1명), 재난관리체계 개선(+1명), 안전 사각지대 예보·경보시스템 구축(+1명), 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 관리(+1명), 재난안전데이터 통합관리(+2명), 균형발전제도과 신설(+2명), 마약 분석(+4명),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 구축·운영(+1명), 지방 전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관리 인력(한시정원 1명) 존속기한 연장(~'26.12.31.) ○ 통합활용정원 감축 △3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14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명, 국가기록원 △2명, 정부청사관리본부 △6명, 이북5도 △1명, 대통령기록관 △1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4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명 ○ 정보시스템 이관에 따른 소속기관 간 정원 이체(국가기록원 △1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1명) ○ 총액인건비제 활용 일반임기제공무원 △9명(본부 △7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명)
2023.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개편(△1과, △7명) 및 존속기한 연장(~'24.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 5과(총괄기획과, 재정정보화사업과,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 지방세정보화사업과, 인프라구축과) → 1단 4과(기획인프라과, 재정정보화사업과,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 지방세정보화사업과)
2023. 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업무 추진(+1명), 청원제도 운영(+1명),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 균형 발전 업무 추진(+2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운영(+1명)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 변경 관련 한시정원 감축(△1명)
2023.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2명), 신종위험 예방·관리 강화(+2명),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2명)
2023. 6.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을 통합관리 하기 위한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대구센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센터 +4과(운영총괄과, 클라우드서비스과, 신기술기반과, 보안통신과), +35명
2023. 7.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홍보·소통 필요성 증대에 따른 대변인 직무등급 상향 조정(고위공무원단 나등급 → 가등급)

연 대	연 혁
2023. 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집중 지원 및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본부 조직개편(±1차관보·1실, ±4실, ±18국·센터·관, △1관, +4과, △6과, ±2담당관,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정부실 설치(1실3국) : 디지털정부국(1국1관) + 공공데이터정책관(1관) - 혁신조직국 설치(1국1관) : 정부혁신기획관(1관) + 조직정책관(1관) - 차관보 신설 :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을 상계하여 신설 - 재난안전관리본부 개편 : 재난관리업무 프로세스(예방-대비-대응-복구)에 따른 기구 개편* 및 재난수습 역량 강화를 위한 수습관리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재난협력실 → 안전예방정책실, 자연재난실, 사회재난실, 재난복구지원국 ○ 신설기구 성과평가에 따른 정규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재난대응과(5명)
2023. 9.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인건비제 활용 기구 운영기간 연장(디지털소통팀, ~'24.9.17.) ○ 총액인건비제 활용 직급조정 사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 직급환원 ±4명, 신규 직급조정 ±4명(~'25.12.31.)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직급환원 ±2명, 신규 직급조정 ±2명(~'25.12.31.) - 국가기록원 : 직급환원 ±2명, 신규 직급조정 ±2명(~'25.12.31.) - 정부청사관리본부 : 직급환원 ±2명, 신규 직급조정 ±2명(~'25.12.31.) - 이북5도 : 직급환원 ±1명 - 대통령기록관 : 신규 직급조정 ±1명(~'25.12.31.)
2023. 1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과(본부 안전조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디지털안전상황실) ○ 홍보 강화를 위한 촬영 전문인력(+1명), 부내 시설물 관리(+1명), 안전조직과 신설(+3명, ±1명), 지방자치단체 기업행정 지원(+2명),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2명), 시스템 장애분석 및 구조진단(+2명) ○ 통합활용정원 감축 △3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14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명, 국가기록원 △2명, 정부청사관리본부 △5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3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명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총액인건비제 활용 기구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정책팀 폐지 및 구조진단지원단 신설
2024.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인건비제 활용 일반임기제공무원 감축(본부 △1명)
2024. 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총액인건비제 활용 기구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진단지원단 폐지 및 사이버장애지원단 신설(~'27.2.7.)
2024. 3.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 ±1과(지역활성화과를 폐지하고 지역청년정책과 상계신설) ○ 정부혁신 방향 명확화를 위한 '디지털정부실' 과 '혁신조직국' 조직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정부실(1실 3국) → 디지털정부혁신실(1실 4국) - 혁신조직국(1국 1관) → 조직국(1국)

연 대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변경 : 디지털기반정책과 → 디지털기반안전과, 디지털안전정책과 → 디지털보안정책과 ○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1명),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1명), 사회재난 상황관리 강화(+3명),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1명), 마약 감정(+5명), 보이스피싱 음성데이터 감정·분석(+1명), 사이버보안 담당(+1명), 소하천 홍수 관리(+1명), 재난 위험요소 평가·선정(+2명), 범정부 전산서비스 장애 예방·대응(+3명한시), 타부처 정보시스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관에 따른 정원 이체(+4명) ○ 조직개편에 따른 공통 인력 감축(△1명)
2024. 4.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하부조직 명칭변경 및 총액인건비제 활용 기구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변경 :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독성화학과 → 독성마약과 총액인건비제 활용 기구 신설 : 서울과학수사연구소 화학분석팀(~'25.12.31.)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액인건비제 절감재원 마련을 위한 운영정원 감축(△1명)
2024. 4.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인건비제 활용 기구 운영기간 연장(디지털소통팀, ~'27.3.31.) ○ 총액인건비제 활용 일반임기제공무원 존속기한 연장(본부 3명, ~'24.12.31.) ○ 총액인건비제 활용 직급조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 ±8명(~'27.3.31.) - 정부청사관리본부 : ±3명(~'27.3.31.)
2024.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개편 및 존속기한 연장(~'25.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인프라과, 재정정보화사업과,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 지방세정보화사업과 → 기획협력과,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 지방세입정보과, 재해복구시스템과 ○ 신설기구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대상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5명) ○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 및 운전기사 감축(△2명) ○ 총액인건비제 활용 일반임기제공무원 감축(본부 △2명)
2024. 8.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부 소관 공동구 재난관리 사무 국토부 이관에 따른 정원 이체(△1명)
2024. 9.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재난 관련 각 부처와의 협업 강화를 위한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국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재난대응총괄과, 산업교통재난대응과, 보건의료재난대응과, 가축질병재난대응과, 환경재난대응과 → 사회재난대응총괄과, 국토산업재난대응과, 보건사회재난대응과, 농축산 해양재난대응과, 환경산림재난대응과 ○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통령기록관 조직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획과, 생산지원과, 기록관리과, 기록서비스과, 보존복원과 → 행정기획과, 생산지원과, 지정기록관리과, 기록보존과, 기록서비스과 ○ 신설기구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대상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재난대응과(4명)

연 대	연 혁
2024. 11. 4.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액인건비제 활용 기구 운영기간 연장(지방과학수사연구소(부산·대구·광주·대전) 유전자분석과, ~'26.12.31.)
2024.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업무 수행을 위한 디지털정부혁신실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변경 : 공공데이터국 → 공공지능데이터국, 공공데이터정책과 →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통합데이터분석센터 → 공공지능데이터분석과, 공공지능정책과 → 행정정보공유과 - 편제조정 : 지역디지털협력과(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서비스국 →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정책국) ○ 자연재난 관련 정책과 집행 기능 간 연계 강화 등을 위한 재난안전관리본부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변경 : 재난안전정보센터 → 재난안전정보통신국, 기후재난대응과 → 기후재난관리과 - 편제조정 : 재난경감과(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국 →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국), 기후재난관리과(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국 →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국) ○ 소속기관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록원 : 나라기록관 → 성남분원, 역사기록관 → 부산분원, 행정기록관 → 대전분원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제주출장소 → 제주분원 ○ 정부혁신 국제협력 강화(+1명), 자치자치 및 균형발전 분야 홍보기능 강화(+1명), 공유재산 관리 강화(+1명),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3명), 승강기 사고 관리 주관(+2명), 해양유도선 사고 관리 주관(+1명), 다중운집인파 사고 관리 주관(+1명), 청사 사고 관리 주관(+2명) ○ 통합활용정원 감축 △3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14명, 국가기록원 △2명, 정부청사관리본부 △5명, 국가재난안전교육원 △1명, 대통령기록관 △1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4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3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명 ○ 총액인건비제 절감재원 마련을 위해 감축한 운영정원 환원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1명, 정부청사관리본부 +1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명

2. 전국 행정구역

('23.12.31.)

구분 시·도	시·군·구				행정시·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출장소			
	계	시	군	구	시	구	계	읍	면	동	계	시·도	시·군·구	읍·면
계	226	75	82	69	2	35	3,562	235	1,176	2,151	83	9	12	62
서울	25	.	.	25	.	.	426	.	.	426
부산	16	.	1	15	.	.	205	4	1	200	1	.	1	.
대구	9	.	2	7	.	.	150	7	10	133	2	.	.	2
인천	10	.	2	8	.	.	156	1	19	136	6	1	1	4
광주	5	.	.	5	.	.	96	.	.	96	1	1	.	.
대전	5	.	.	5	.	.	82	.	.	82
울산	5	.	1	4	.	.	55	6	6	43	1	1	.	.
세종	24	1	9	14
경기	31	28	3	.	.	20	604	37	102	465	7	1	4	2
강원	18	7	11	.	.	.	193	24	95	74	7	1	.	6
충북	11	3	8	.	.	4	153	16	86	51	5	3	.	2
충남	15	8	7	.	.	2	208	25	136	47	5	1	1	3
전북	14	6	8	.	.	2	243	15	144	84
전남	22	5	17	.	.	.	297	33	196	68	27	.	1	26
경북	22	10	12	.	.	2	322	38	192	92	14	.	1	13
경남	18	8	10	.	.	5	305	21	175	109	7	.	3	4
제주	2	.	43	7	5	31

구분 시·도	통·리			반			인구(명)	면적(km ²)	세대수
	계	통	리	계	동	읍면			
계	102,240	64,034	38,206	521,238	385,212	136,026	51,217,221	100,503	24,118,928
서울	12,947	12,947	.	91,280	91,280	.	9,331,828	605.25	4,482,063
부산	4,705	4,516	189	28,330	26,310	2,020	3,266,598	771.32	1,570,403
대구	4,062	3,546	516	26,499	23,105	3,394	2,363,629	1,499.49	1,104,130
인천	5,035	4,765	270	24,628	23,064	1,564	3,021,010	1,069.51	1,373,827
광주	2,512	2,512	.	12,350	12,350	.	1,408,422	500.96	658,075
대전	2,662	2,662	.	15,137	15,137	.	1,439,157	539.78	687,757
울산	1,651	1,267	384	11,529	9,416	2,113	1,098,049	1,062.86	495,378
세종	591	333	258	3,334	2,029	1,305	390,685	465.01	163,432
경기	18,263	13,997	4,266	102,767	84,605	18,162	13,694,685	10,201.26	6,058,202
강원	4,506	2,197	2,309	23,987	13,089	10,898	1,517,766	16,875.86	764,834
충북	5,127	2,013	3,114	20,727	9,879	10,848	1,591,177	7,407.03	787,756
충남	5,924	1,430	4,494	25,989	7,785	18,204	2,136,574	8,247.53	1,052,129
전북	8,347	3,030	5,317	25,059	14,094	10,965	1,738,690	8,073.34	864,608
전남	8,789	1,858	6,931	25,613	9,824	15,789	1,788,819	12,363.01	912,412
경북	7,975	2,846	5,129	42,181	17,847	24,334	2,531,384	18,428.14	1,291,568
경남	8,385	3,528	4,857	36,214	21,996	14,218	3,228,380	10,542.53	1,537,492
제주	759	587	172	5,614	3,402	2,212	670,368	1,850.21	314,862

3. 예산 현황

■ 행정안전부

(단위: 억 원)

구 분	'22예산	'23예산	'24예산
행정안전부	706,649	804,878	724,473
[일반회계]	695,137	788,433	697,588
- 인 건 비	3,378	3,471	3,608
- 기본경비	383	380	384
- 지방교부세	650,560	752,883	667,593
보통교부세	551,042	666,446	598,439
지역현안특별교부세	6,817	8,245	7,403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704	2,061	1,851
부동산교부세	73,828	57,133	41,098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521	10,306	9,254
소방안전교부세	8,648	8,692	9,548
- 사 업 비	40,815	31,699	26,003
일반사업	27,687	21,512	15,789
정보화사업	11,999	8,937	9,167
R&D	1,005	1,087	872
ODA	125	163	175
[특별회계]	11,512	16,446	26,885
- 지역균형발전	11,512	16,446	26,885

■ 지방자치단체(세출 순계 기준)

(단위: 억 원)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증 감				
		당 초	최 종	당 초 대비		최 종 대비		
				금 액	%	금 액	%	
총규모	계	3,260,149	3,100,818	3,521,121	159,331	5.1	△260,972	△7.4
	일반회계	2,884,840	2,737,003	3,122,278	147,836	5.4	△237,438	△7.6
	특별회계	375,309	363,815	398,842	11,494	3.2	△23,533	△5.9
1. 광역자치단체		2,153,411	2,034,471	2,238,386	118,939	5.8	△84,975	△3.8
특별시 (1)	예산액	417,169	394,949	409,044	22,220	5.6	8,125	2.0
	평균액							
광역시 (6)	예산액	584,524	560,033	635,166	24,491	4.4	△50,642	△8.0
	평균액	97,421	93,339	105,861	4,082	4.4	△8,440	△8.0
특별자치시 (1)	예산액	18,788	17,922	19,268	866	4.8	△480	△2.5
도 (8)	예산액	1,061,255	992,848	1,103,407	68,406	6.9	△42,152	△3.8
	평균액	132,657	124,106	137,926	8,551	6.9	△5,269	△3.8
특별자치도 (1)	예산액	71,675	68,719	71,501	2,957	4.3	175	0.2
2. 기초자치단체		1,106,738	1,066,347	1,282,734	40,391	3.8	△175,996	△13.7
시 (75)	예산액	651,649	624,281	742,298	27,368	4.4	△90,649	△12.2
	평균액	8,689	8,324	9,897	365	4.4	△1,209	△12.2
군 (82)	예산액	294,879	284,989	348,066	9,889	3.5	△53,187	△15.3
	평균액	3,596	3,475	4,245	121	3.5	△649	△15.3
자치구 (69)	예산액	160,211	157,076	192,371	3,134	2.0	△32,160	△16.7
	평균액	2,322	2,276	2,788	45	2.0	△466	△16.7

■ 세입예산(순계 기준)

(단위: 억 원)

세 원 별	2025년도	2024년도			증 가 율(%)	
		당초예산 (A)	최종예산 (B)	증 가 액 (B - A)	당 초 예산 대비	최 종 예산 대비
총 규모	3,260,149	3,100,818	3,521,121	420,302	5.1	△7.4
지방세수입	1,150,667	1,107,331	1,116,607	9,276	3.9	3.1
세 외 수 입	305,644	275,111	412,325	137,214	11.1	△25.9
지방교부세	616,731	602,495	650,988	48,493	2.4	△5.3
보 조 금	892,186	837,093	860,555	23,462	6.6	3.7
지방채	59,209	42,719	55,556	12,837	38.6	6.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35,712	236,069	425,089	189,020	△0.2	△44.5

■ 세출예산(순계 기준) ※ 2024년 최종예산

(단위: 억 원)

분 야	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보조사업	자체사업		
계	3,521,121	2,930,171	1,722,306	1,207,865	406,428
일반공공행정	214,431	151,053	17,052	134,001	0
공공질서 및 안전	72,478	59,508	28,053	31,455	0
교 육	164,321	163,521	7,704	155,817	0
문화 및 관광	180,676	174,370	76,860	97,510	-257
환 경	331,127	313,838	134,269	179,568	0
사회복지	1,152,479	1,136,919	1,032,596	104,322	0
보 건	60,099	58,568	42,528	16,040	0
농림해양수산	246,540	242,455	167,170	75,285	0
산업·중소기업	102,154	93,067	48,220	44,847	0
교통 및 물류	300,053	277,197	87,151	190,046	0
국토 및 지역 개발	224,850	204,257	78,911	125,346	0
과학기술	4,383	4,317	1,157	3,160	0
예비비	33,431	33,195	613	32,582	0
기타	434,098	17,906	22	17,884	406,685
인력운영비	385,413	0	0	0	385,413
기본경비 등	48,685	17,906	22	17,884	21,272

주) 인력운영비: 보수, 직급보조비, 기타직보수, 무기계약직보수, 연금부담금, 성과상여금, 연금지급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 지방세 세목별 예산액 비교 ※ 2024년 최종예산

(단위: 억 원)

단체별 세목별	계	특 별 광역시세	특 별 자치시세	도 세	특 별 자치도세	시 세	군 세	자치구세	구성비 (%)	
계	1,116,607 (1,133,703)	415,460 (432,557)	8,305	331,346	18,569	221,253	39,039	82,634	100.0	
보 통 세	소 계	1,015,878 (1,032,975)	371,538 (388,634)	7,643	282,572	16,832	216,859	38,432	82,003	91.0
	취득세	247,906	108,515	1,908	133,149	4,334	0	0	0	22.2
	등록면허세	20,267	307	155	10,569	326	0	0	8,910	1.8
	주민세	27,114	8,479	143	0	172	12,184	1,669	4,466	2.4
	재산세	150,057	18,224	1,093	0	1,946	60,014	7,858	60,922	13.4
	자동차세	75,399	30,437	543	0	1,223	36,360	6,835	0	6.8
	레저세	9,308	2,465	5	6,123	716	0	0	0	0.8
	담배소비세	35,354	13,473	175	0	601	17,537	3,569	0	3.2
	지방소비세	251,852	79,752	2,710	132,731	5,940	14,207	8,807	7,705	22.6
	지방소득세	198,621	109,886	911	0	1,575	76,557	9,693	0	17.8
	소 계	90,597	40,057	597	48,202	1,475	266	0	0	8.1
	목 적 세	지역자원시 설세	19,429	7,858	148	10,960	197	266	0	0
지방교육세		71,167	32,199	449	37,241	1,278	0	0	0	6.4
지난 연도 수입	10,132	3,865	65	573	262	4,128	607	631	0.9	

주: ()는 총계 예산 기준이며, 서울 본청과 자치구 간 재산세 공동 과세 중복 부분을 서울 본청에서 공제하여 순계와 차이가 남

■ 지방세 시·도별 신장 추세

(단위: 억 원)

시·도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08→'24
							신장률(%)
계	904,572 (917,572)	1,020,485 (1,036,256)	1,127,976 (1,145,490)	1,185,710 (1,205,005)	1,106,155 (1,122,750)	1,107,331 (1,124,058)	244.6 (241.0)
서울	222,682 (235,682)	255,317 (271,088)	283,825 (301,339)	287,821 (307,117)	265,324 (281,919)	266,789 (283,517)	218.3 (205.4)
부산	51,919	61,996	64,680	68,063	63,702	63,311	244.1
대구	34,761	39,594	42,465	43,631	41,915	43,226	265.6
인천	48,095	51,877	59,239	61,439	58,550	59,215	259.5
광주	20,279	22,680	23,927	26,353	24,019	24,534	272.1
대전	19,910	22,524	25,111	26,355	24,099	24,253	227.7
울산	20,407	20,939	22,164	24,559	23,835	22,582	200.4
세종	6,669	7,952	8,771	8,605	7,552	8,518	715.2
경기	241,380	258,010	297,359	305,186	277,634	280,569	239.5
강원	21,687	26,537	28,754	32,221	29,968	29,518	274.7
충북	25,732	27,705	31,493	34,958	32,393	31,542	286.0
충남	35,603	41,256	45,951	51,308	50,587	48,500	278.8
전북	22,919	29,218	30,627	33,048	32,114	32,183	285.7
전남	27,148	35,647	37,307	42,527	40,176	39,911	319.4
경북	39,228	45,896	48,983	54,067	51,792	50,746	265.0
경남	50,958	57,319	60,462	65,859	63,949	63,193	219.3
제주	15,196	16,018	16,857	19,710	18,546	18,738	421.0

주1) 2022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3년은 최종예산, 2024년 이후는 당초예산, ()는 총계예산 기준

주2) 세종시의 신장률은 '12→'24 신장률

4. 행정안전부 법령 현황

■ 법률 : 188건

(‘24.12.31. 기준)

연번	법령명	제정일	소관 부서
1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2021.07.20	사회통합지원과
2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990.08.06	사회통합지원과
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22.06.10	자치분권제도과
4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6.01.05	사회통합지원과
5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13.06.04	자치분권지원과
6	경기도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2007.01.19	자치분권지원과
7	경기도고양시설치와강원도춘성군외명칭변경에관한법률	1991.12.14	자치분권지원과
8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1994.08.03	자치분권지원과
9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1997.12.17	자치분권지원과
10	경기도양주시·포천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2003.07.18	자치분권지원과
11	경기도위치변경에관한법률	1963.12.16	자치분권지원과
12	경기도파주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1995.12.06	자치분권지원과
13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1995.05.10	자치분권지원과
14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2000.12.20	자치분권지원과
15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2010.03.12	자치분권지원과
16	경상남도사무소의소재지변경에관한법률	1981.04.13	자치분권지원과
17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2023.01.03	자치분권지원과
1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021.10.19	균형발전진흥과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996.12.31	정보공개과
2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999.01.29	정책기획과
2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3.07.30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22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2021.01.12	지방인사제도과
23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998.02.24	공무원단체과
2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05.08.04	공유재산정책과
2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004.01.29	주소생활공간과
26	광명시등시설치와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1981.04.13	자치분권지원과
27	광주직할시및송정시설치에관한법률	1986.05.08	자치분권지원과
28	광주직할시와전라남도의관할구역변경및송정시·광산군폐지에 관한법률	1987.11.28	자치분권지원과
29	구리시등11개시설치와군관할구역의조정및금성시명칭변경에 관한 법률	1985.12.28	자치분권지원과
30	구미시설치및부산시·경상남도간관할구역조정에관한법률	1977.12.19	자치분권지원과

연번	법령명	제정일	소관 부서
31	국가장법	1967.01.16	의정담당관
32	국경일에 관한 법률	1949.10.01	의정담당관
3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12.07	사회통합지원과
3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2016.05.29	안전문화교육과
35	군행정부역변경에관한법률	1957.11.06	자치분권지원과
3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07.07.27	재난경감과
3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951.11.17	민간협력과
38	남양주군설치와군관할구역등변경에관한법률	1979.12.28	자치분권지원과
39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004.03.05	사회통합지원과
40	농어촌도로 정비법	1991.12.14	균형발전제도과
41	대구시설치에관한법률	1962.11.21	자치분권지원과
42	대구시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1964.06.01	자치분권지원과
43	대구직할시및인천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	1981.04.13	자치분권지원과
4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0.03.22	사회통합지원과
45	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	1988.12.31	자치분권지원과
4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007.04.27	행정기획과
47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2003.02.04	조직기획과
48	대한민국국기법	2007.01.26	의정담당관
49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1990.12.31	지역금융지원과
5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0.06.09	공공데이터정책과
51	도로명주소법	2006.10.04	주소생활공간과
52	동해시등시설치와 시·군관할구역 및 명칭변경에관한 법률	1979.12.28	자치분권지원과
53	면폐합읍설치에관한법률	1957.10.21	자치분권지원과
54	민방위기본법	1975.07.25	민방위과
5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997.08.22	민원제도과
56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00.01.12	사회통합지원과
5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2001.07.24	사회통합지원과
58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1991.12.31	새마을발전협력과
59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1948.08.30	법무담당관
6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2012.02.22	안전개선과
6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2012.12.01	주민과
62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13.06.04	사회통합지원과
63	부산광역시등4개시·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2000.01.12	자치분권지원과
64	부산시구설치에관한법률	1956.12.17	자치분권지원과

연번	법령명	제정일	소관 부서
65	부산시정부직할에관한법률	1962.11.21	자치분권지원과
66	부산직할시강서구설치및시·도의관할구역변경에 관한 법률	1988.12.31	자치분권지원과
67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1984.08.04	비상대비기획과
68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000.01.12	민간협력과
69	삼례읍설치에관한법률	1956.07.08	자치분권지원과
70	상훈법	1963.12.14	상훈담당관
71	새마을금고법	1982.12.31	지역금융지원과
7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1980.12.13	새마을발전협력과
73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1946.09.18	자치분권제도과
74	서울특별시·도·군·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1962.11.21	자치분권지원과
75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1994.12.22	자치분권지원과
76	서울특별시및경기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1973.03.12	자치분권지원과
77	서울특별시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 법률	1964.06.01	자치분권지원과
78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2010.12.27	균형발전진흥과
79	섬발전촉진법	1986.12.31	균형발전진흥과
8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10.12.27	자치분권제도과
8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5.07.24	재난경감과
82	소하천정비법	1995.01.05	재난경감과
83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	1962.11.21	자치분권지원과
84	승강기 안전관리법	1991.12.31	승강기정책과
85	시·군관할구역변경및면의폐지에관한법률	1962.11.21	자치분권지원과
86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법률 제452호)	1957.11.06	자치분권지원과
87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법률 제453호)	1957.11.06	자치분권지원과
88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법률 제454호)	1957.11.06	자치분권지원과
89	시·군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1955.06.29	자치분권지원과
90	시설치와군의관할구역및명칭변경에관한법률(법률 제1068호)	1962.05.10	자치분권지원과
91	시설치와군의관할구역및명칭변경에관한법률(법률 제1249호)	1962.12.31	자치분권지원과
92	시설치와군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법률 제390호)	1956.07.08	자치분권지원과
93	시설치와군의폐치분합에관한법률	1973.03.12	자치분권지원과
94	신안군설치에관한법률	1968.12.31	자치분권지원과
9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007.01.26	안전개선과
96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0.05.26	안전개선과
97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021.07.20	사회통합지원과
98	연호에 관한 법률	1948.09.25	의정담당관

연번	법령명	제정일	소관 부서
99	오산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군외명칭변경에관한법률	1988.12.31	자치분권지원과
100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962.01.20	주소생활공간과
101	온천법	1981.03.02	균형발전진흥과
102	울산광역시시설치등에관한법률	1996.12.31	자치분권지원과
10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1980.01.04	재난안전점검과
104	읍·면설치와행정구역및면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1956.07.08	자치분권지원과
105	읍설치에관한법률(법률 제1177호)	1962.11.21	자치분권지원과
106	읍설치에관한법률(법률 제359호)	1955.06.29	자치분권지원과
107	읍설치에관한법률(법률 제537호)	1960.01.01	자치분권지원과
108	읍설치에관한법률(법률 제538호)	1960.01.01	자치분권지원과
109	읍설치에관한법률(법률 제539호)	1960.01.01	자치분권지원과
110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2.01.20	총무과
111	인감증명법	1961.09.23	주민과
11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2022.06.10	균형발전제도과
113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2018.03.20	자치분권지원과
114	인천시구설치에관한법률	1967.03.30	자치분권지원과
115	자연재해대책법	1967.02.28	재난관리정책과
11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2005.08.04	민간협력과
11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995.01.05	새마을발전협력과
1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04.03.11	안전정책총괄과
119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3.01.17	재난자원관리과
120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2022.01.04	재난안전산업과
121	재난안전통신망법	2021.06.08	재난안전통신망과
12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07.07.19	예방안전제도과
123	재해구호법	1962.03.20	재난구호과
12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2007.08.03	재난경감과
125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08.06.05	재난경감과
126	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1994.12.22	자치분권지원과
127	전라남도여수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1997.12.17	자치분권지원과
12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23.01.17	자치분권제도과
129	전자정부법	2001.07.01	디지털정부기획과
13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1969.01.22	의정담당관
13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2000.01.21	균형발전진흥과
132	정부조직법	1948.07.17	조직기획과
13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000.01.12	사회통합지원과

연번	법령명	제정일	소관 부서
134	제주시설치에관한법률	1955.08.13	자치분권지원과
1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6.02.21	자치분권제도과
136	주민등록법	1962.06.20	주민과
13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2006.05.24	선거의회자치법규과
138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2021.10.19	선거의회자치법규과
139	주민투표법	2004.01.29	선거의회자치법규과
14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2006.03.03	균형발전진흥과
14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07.13	자치행정과
142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	2003.05.29	자치분권지원과
143	지방공기업법	1969.01.29	지방공기업정책과
144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1995.04.01	지방인사제도과
145	지방공무원법	1963.12.02	지방인사제도과
146	지방교부세법	1961.12.31	교부세과
147	지방세기본법	2010.03.31	지방세정책과
148	지방세법	1949.12.22	부동산세제과
149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지방세정책과
150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03.31	지방세특례제도과
151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2001.01.08	균형발전제도과
15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2005.08.04	재정정책과
15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1.01.12	재정협력과
15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14.03.24	지방공기업정책과
15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05.08.04	회계제도과
156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1994.12.22	조직기획과
157	지방자치단체의폐지분합및구역변경에관한법률(제360호)	1955.06.29	자치분권지원과
158	지방자치단체의폐지분합및구역변경에관한법률(제451호)	1957.10.29	자치분권지원과
159	지방자치단체의폐치에관한법률	1956.07.08	자치분권지원과
16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0.01.12	지방공기업정책과
161	지방자치법	1949.07.04	자치분권제도과
16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06.09	자치분권제도과
163	지방재정법	1963.12.16	재정정책과
164	지방행정동우회법	2020.03.31	자치행정과
165	지방행정정제·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2013.08.06	지방소득소비세제과
166	지방회계법	2016.05.29	회계제도과
16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0.05.01	지역금융지원과
16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2008.03.28	지진방재정책과

연번	법령명	제정일	소관 부서
169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04.03.22	새마을발전협력과
17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999.01.29	조직진단과
171	청원법	1961.08.07	민원제도과
172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11.08.04	자치분권지원과
173	충청남도 계룡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3.07.18	자치분권지원과
174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2013.01.23	자치분권지원과
175	충청북도 제원군 등 4개군의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1990.12.31	자치분권지원과
176	풍수해보험법(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2024.5.14. 시행예정)	2006.03.03	재난보험과
177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1989.03.31	새마을발전협력과
178	한국지방행정공제회법	2003.05.15	회계제도과
17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1986.05.08	자치분권제도과
18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2008.12.31	경제조직과
181	행정대집행법	1954.03.18	법무담당관
182	행정사법	1961.09.23	행정제도과
183	행정절차법	1996.12.31	행정제도과
184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3.12.26	기업협력지원과
185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2024.01.16	균형발전진흥과
186	승강기산업 진흥법	2024.01.30	승강기정책과
18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24.01.30	자치분권지원과
188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2024.05.21	사회재난정책과

■ 대통령령 : 297건

(24.12.31. 기준)

연번	법령명	제정일	소관 부서
1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01.21	사회통합지원과
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0.08.17	사회통합지원과
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1973.03.30	의정담당관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2020.08.04	조직진단과
5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96.04.06	사회통합지원과
6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1962.09.03	사회조직과
7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19.08.13	자치분권지원과
8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19.08.13	자치분권지원과
9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19.08.13	자치분권지원과
10	경기도고양군위치변경의건	1961.08.07	자치분권지원과
11	경기도남양주군조안면등면설치와음·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 규정	1986.03.27	자치분권지원과
12	경기도시흥군의왕읍등35개읍설치에관한규정	1980.10.21	자치분권지원과
13	경기도양주군회천읍등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85.09.26	자치분권지원과
14	경기도위치변경에관한법률시행일에관한규정	1967.06.23	자치분권지원과
15	경상남도거제군위치에관한건	1953.01.22	자치분권지원과
16	경상남도하동군과산청군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2000.07.27	자치분권지원과
17	경상남도함안군위치변경에관한건	1954.11.12	자치분권지원과
18	경상북도 안동시와 예천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15.03.11	자치분권지원과
19	경상북도문경군청위치변경에관한건	1949.04.27	자치분권지원과
2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991.07.23	안전조직과
2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981.04.08	경제조직과
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7.10.21	정보공개과
2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9.12.07	정책기획과
2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10.30	공공데이터정책과
25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1.04.13	지방인사제도과
26	공무원 제안 규정	1973.07.02	정보공개과
27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8.12.31	공무원단체과
28	공용차량관리규정	1973.02.05	행정제도과
2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005.12.30	공유재산정책과
30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1981.04.03	경제조직과
3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4.07.29	주소생활공간과
32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2008.01.08	사회통합지원과

연번	법령명	제정일	소관 부서
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07.26	경제조직과
34	관보규정	1969.02.01	법무담당관
35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970.08.21	경제조직과
36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규정	2011.08.19	자치분권지원과
37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18.05.08	자치분권지원과
38	광주광역시북구등4개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98.02.24	자치분권지원과
39	광주시구설치에관한규정	1973.03.12	자치분권지원과
40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03.23	사회조직과
41	구의증설및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75.09.23	자치분권지원과
42	국가공무원총정원령	1998.12.31	조직기획과
43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04.11	사회조직과
44	국가안보실 직제	2013.03.23	조직기획과
45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2.02.04	사회조직과
46	국가장법 시행령	1970.06.29	의정담당관
47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1966.07.12	사회조직과
48	국무조정실과 그소속기관 직제	2013.03.23	조직기획과
49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2013.03.23	조직기획과
50	국무회의규정	1963.12.31	의정담당관
51	국민 안전교육 진흥기본법 시행령	2017.05.08	안전문화교육과
52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02.29	사회조직과
53	국민 제안 규정	2006.05.30	정보공개과
54	국민투표법 시행령	1962.10.12	선거의회자치법규과
55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948.12.07	안전조직과
56	국새규정	1949.05.05	의정담당관
57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966.02.28	경제조직과
58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7.05.16	조직기획과
59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03.23	경제조직과
60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02.29	경제조직과
6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07.23	재난경감과
6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52.01.28	민간협력과
63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963.02.12	안전조직과
64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02.29	조직기획과
65	나라문장규정	1963.12.10	의정담당관
66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4.06.29	사회통합지원과

연번	법령명	제정일	소관 부서
67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03.23	경제조직과
68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1992.04.25	균형발전제도과
69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962.03.29	경제조직과
70	대구광역시달서구등5개자치구및군의회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2003.11.27	자치분권지원과
7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2019.03.19	경제조직과
7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0.04.20	사회통합지원과
73	대전광역시 중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11.11.07	자치분권지원과
74	대전광역시동구등4개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99.08.06	자치분권지원과
75	대전시구설치에관한규정	1977.08.27	자치분권지원과
76	대청면설치에관한규정	1974.05.25	자치분권지원과
77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07.26	조직기획과
7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07.26	행정기획과
79	대통령비서실 직제	2013.03.23	조직기획과
80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3.02.04	조직기획과
81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2007.07.27	의정담당관
8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2.08	공공데이터정책과
83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2007.04.05	주소생활공간과
84	모범공무원 규정	1973.12.28	상훈담당관
85	무역위원회직제	1987.05.23	경제조직과
86	국가유산청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05.14	사회조직과
8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02.29	사회조직과
88	미금읍등53개읍설치에관한규정	1979.04.07	자치분권지원과
89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1975.08.22	민방위과
9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7.12.31	민원제도과
9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1999.05.24	사회조직과
9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0.07.10	사회통합지원과
9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2001.07.24	사회통합지원과
94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1992.02.29	새마을발전협력과
95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02.29	경제조직과
96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5.12.28	안전조직과
9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948.11.04	사회조직과
98	법제처 직제	1961.10.02	조직기획과
99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962.10.31	안전조직과

연번	법령명	제정일	소관 부서
100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02.29	사회조직과
10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08.23	안전개선과
10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1.12	주민과
103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12.04	사회통합지원과
104	부산광역시 강서구 등 3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	2008.05.21	자치분권지원과
105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13.04.22	자치분권지원과
10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15.11.26	자치분권지원과
107	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19.08.13	자치분권지원과
108	부산광역시 서구 등 4개 시·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05.06.23	자치분권지원과
10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20.05.12	자치분권지원과
110	부산광역시동래구등3개자치구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2004.03.29	자치분권지원과
111	부산광역시부산진구및사상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97.06.26	자치분권지원과
112	부산시북구설치및구관할구역조정에관한 규정	1977.11.29	자치분권지원과
113	부산직할시사하구설치및구관할구역조정에관한규정	1983.10.08	자치분권지원과
114	부의설치및구의명칭·관할구역변경의 건	1949.08.13	자치분권지원과
115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84.11.17	비상대비기획과
11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2000.04.17	민간협력과
11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2007.09.14	사회조직과
118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5.11.30	복구지원과
119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966.12.27	안전조직과
120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03.23	경제조직과
121	상훈법 시행령	1967.02.28	상훈담당관
122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1983.04.11	지역금융지원과
123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1981.03.02	새마을발전협력과
124	새만금개발청 직제	2013.09.03	경제조직과
125	서울특별시 강북구 등 4개 자치구와 충청남도 홍성군 등 2개 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	2010.11.02	자치분권지원과
126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금천구 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	2008.02.05	자치분권지원과
127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15.11.26	자치분권지원과
128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1.07.01	자치분권제도과
129	서울특별시강서구설치및구관할구역조정에관한규정	1977.08.27	자치분권지원과
13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와은평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2001.10.20	자치분권지원과
131	서울특별시성북구와노원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2000.05.16	자치분권지원과

연번	법령명	제정일	소관 부서
132	서울특별시송파구등13개구설치와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87.12.31	자치분권지원과
133	서울특별시은평구등7개구설치및구관할구역조정에관한규정	1979.09.26	자치분권지원과
134	서울특별시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73.03.12	자치분권지원과
135	서울특별시중구등8개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99.05.13	자치분권지원과
136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2011.01.28	균형발전진흥과
137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1987.08.14	균형발전진흥과
138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2011.01.28	자치분권제도과
139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05.17	재난경감과
140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07.26	안전조직과
141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1995.07.01	재난경감과
14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1992.06.30	승강기정책과
143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면설치등에관한규정	1983.01.10	자치분권지원과
144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면의명칭변경에관한규정	1986.12.23	자치분권지원과
145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 규정	1973.03.12	자치분권지원과
146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629호)	1995.04.20	자치분권지원과
147	시·도의관할구역및구·군의명칭·위치·관할구역 변경의 건	1949.08.13	자치분권지원과
148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2557호)	1988.12.22	자치분권지원과
149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3046호)	1990.07.09	자치분권지원과
150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006호)	1993.11.19	자치분권지원과
151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434호)	1994.12.22	자치분권지원과
152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2020.12.31	안전조직과
15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03.23	안전조직과
154	안동군월곡면의폐지와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74.05.25	자치분권지원과
15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2007.12.07	안전개선과
156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1.24	안전개선과
157	여성가족부 직제	2005.06.23	사회조직과
158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2.01.21	사회통합지원과
159	예술원사무국직제	1990.01.03	사회조직과
16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1.01.08	주소생활공간과
161	온천법 시행령	1981.06.18	균형발전진흥과
16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03.23	조직기획과
163	우정사업본부 직제	2013.06.21	사회조직과
164	울산광역시남구와울주군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2002.07.30	자치분권지원과

연번	법령명	제정일	소관 부서
165	울산시의구설치및단양군단양읍·매포읍의관할구역조정에관한 규정	1985.06.29	자치분권지원과
166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0.25	안전조직과
167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1980.04.10	재난안전점검과
168	읍설치에관한건(대통령령 제99호)	1949.05.07	자치분권지원과
169	읍설치에관한건(대통령령 제156호)	1949.08.13	자치분권지원과
170	읍설치에관한건(대통령령 제162호)	1949.08.13	자치분권지원과
171	읍설치에관한규정	1973.03.12	자치분권지원과
172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의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1980.08.26	총무과
173	이북5도위원회 규정	1962.07.16	총무과
174	익산군북일면의폐지와시·군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74.05.25	자치분권지원과
175	인감증명법 시행령	1962.06.12	주민과
176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조직기획과
177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17.03.20	자치분권지원과
178	인천광역시 중구 등 6개 시·군·자치구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05.02.11	자치분권지원과
179	인천광역시 중구와 동구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06.10.26	자치분권지원과
180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1996.06.21	복구지원과
18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1967.02.28	재난관리정책과
182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2006.02.06	민간협력과
18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5.06.15	새마을발전협력과
18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04.05.29	안전정책총괄과
185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2021.12.07	재난안전통신망과
18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01.19	예방안전과
187	재해구호법 시행령	1962.12.12	재난구호과
18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8.01.31	재난경감과
189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06.02	재난경감과
190	전라남도 나주시 등 4개 시·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07.02.08	자치분권지원과
191	전라남도 목포시와 무안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	2008.08.21	자치분권지원과
192	전라남도장성군북상면의폐지와시·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75.09.23	자치분권지원과
193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13.11.27.	자치분권지원과
194	전라북도정읍시등5개시·군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97.02.06	자치분권지원과
195	전라북도정읍시등6개시·군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98.08.01	자치분권지원과
196	전자정부법 시행령	2001.07.01	디지털정부기획과
19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69.01.29	의정담당관

연번	법령명	제정일	소관 부서
19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2000.08.28	균형발전진흥과
199	정부 표창 규정	1962.08.22	상훈담당관
200	정부청사관리규정	1980.08.26	청사기획과
201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03.04.07	조직기획과
202	정책자문위원회규정	1981.01.28	경제조직과
20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0.05.10	사회통합지원과
20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06.06.29	자치분권제도과
205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961.10.02	경제조직과
206	주민등록법 시행령	1962.05.12	주민과
20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05.23	선거의회자치법규과
20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2006.09.04	균형발전진흥과
209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07.26	경제조직과
210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01.06	자치행정과
21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2015.06.15	자치행정과
21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1958.12.31	지방인사제도과
213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1969.12.16	지방공기업정책과
21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1995.04.20	지방인사제도과
215	지방공무원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13.12.12	지방인사제도과
216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1981.10.27	지방인사제도과
21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1963.12.02	지방인사제도과
218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005.03.18	지방인사제도과
21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964.01.24	지방인사제도과
220	지방공무원 임용령	1950.02.10	지방인사제도과
221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1979.07.21	지방인사제도과
22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2019.08.06	공무원단체과
223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1963.12.06	지방인사제도과
224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2018.07.10	지방인사제도과
225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961.12.31	교부세과
226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1998.10.16	사회조직과
227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2013.12.11	지방인사제도과
22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0.09.20	지방세정책과
229	지방세법 시행령	1950.03.27	부동산세제과
230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017.03.27	지방세정책과
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9.20	지방세특례제도과

연번	법령명	제정일	소관 부서
232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2001.07.07	균형발전제도과
23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2005.12.28	재정정책과
23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07.13	재정협력과
235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08.06.05	지방인사제도과
23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09.24	지방공기업정책과
23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12.30	회계제도과
23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1962.03.10	감사담당관
23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4.12.31	조직기획과
240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2020.03.11	안전조직과
241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01.06.30	지방인사제도과
24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994.12.31	자치분권제도과
24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0.07.10	지방공기업정책과
244	지방자치법 시행령	1949.08.13	자치분권제도과
245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2006.06.29	지방소득소비세제과
24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07.07	자치분권제도과
247	지방재정법 시행령	1964.01.15	재정정책과
248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2013.11.20	지방인사제도과
249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08.06	지방소득소비세제과
250	지방회계법 시행령	2016.11.29	회계제도과
25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07.01	지역금융지원과
25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2009.03.25	지진방재정책과
253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4.06.22	새마을발전협력과
254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0.09.11	안전조직과
255	차관회의규정	1961.08.26	의정담당관
25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9.07.29	조직진단과
257	청원법 시행령	2021.12.21	민원제도과
258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09.09.15	자치분권지원과
259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14.08.06	자치분권지원과
260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990.12.27	조직진단과
26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969.01.29	사회조직과
262	특별감찰관 직제	2014.06.17	사회조직과
263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949.05.23	조직진단과
264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2006.05.10	재난보험과
265	학술원사무국직제	1985.08.12	조직기획과

연번	법령명	제정일	소관 부서
26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1986.09.11	자치분권제도과
267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07.26	안전조직과
26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03.23	경제조직과
269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1991.06.19	행정제도과, 정보공개과
27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970.03.09	사회조직과
27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03.31	경제조직과
272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2022.05.09	혁신기획과
27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1977.03.26	조직기획과
274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1954.10.07	법무담당관
275	행정사법 시행령	1962.03.27	행정제도과
27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07.26	안전조직과
277	행정절차법 시행령	1997.12.15	행정제도과
27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2005.11.30	경제조직과
27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990.01.03	안전조직과
280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2.05.30	사회통합지원과
281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06.07	사회통합지원과
282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2.07.01	디지털정부기획과
28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09.13	균형발전진흥과
284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2022.09.27	사회조직과
28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2022.12.27	균형발전제도과
286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2023.01.17	자치분권제도과
287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23.02.21	자치분권지원과
288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2023.01.03	재난안전산업과
289	재외동포청 직제	2023.04.05	조직기획과
290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2023.04.17	자치분권제도과
291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01.09	재난자원관리과
292	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	2024.01.16	자치분권제도과
293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03.29	경제조직과
29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06.04	자치분권제도과
295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06.25	기업협력지원과
296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2024.07.30	승강기정책과
29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12.24	자치분권제도과

■ 부령 : 84건

(24.12.31. 기준)

연번	법령명	제정일	소관 부서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97.11.11	정보공개과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99.12.30	정책기획과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10.30	공공데이터정책과
4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1974.12.17	정보공개과
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4.07.29	주소생활공간과
6	관보규정 시행규칙	1969.02.01	법무담당관
7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2017.05.30	안전문화교육과
8	국민 제안규정 시행규칙	2006.05.30	정보공개과
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07.31	재난경감과
10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1992.05.22	균형발전제도과
11	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2.11.26	균형발전제도과
1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12.10	공공데이터정책과
13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2007.04.11	주소생활공간과
14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1976.05.17	민방위과
1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97.12.31	민원제도과
16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008.10.27	균형발전진흥과
1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08.23	안전개선과
18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1990.08.01	지방소득소비세제과
19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85.03.21	비상대비기획과
2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2015.09.07	민간협력과
21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1983.06.04	지역금융지원과
2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07.25	재난경감과
23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2015.07.03	안전사업조정과
24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1995.07.06	재난경감과
25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992.07.01	승강기정책과
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07.12.14	안전개선과
27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11.27	안전개선과
28	온천법 시행규칙	1981.07.01	균형발전진흥과
29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1993.12.31	재난안전점검과
30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1996.06.24	복구지원과
3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1967.07.05	재난관리정책과
3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95.07.08	새마을발전협력과
33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1995.07.28	새마을발전협력과

연번	법령명	제정일	소관 부서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2004.06.12	안전정책총괄과
3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09.11	예방안전제도과
36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2002.09.27	재난구호과
37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08.02.01	재난경감과
38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06.05	재난경감과
39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1981.03.06	청사기획과
40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968.09.30	주민과
41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2000.01.10	감사담당관
42	주소정보시설규칙	2009.08.26	주소생활공간과
43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1970.06.26	지방공기업정책과
44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1991.09.19	지방인사제도과
45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2015.11.19	지방인사제도과
46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1967.12.30	지방인사제도과
47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1991.12.31	지방인사제도과
48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1994.02.19	지방인사제도과
49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1988.12.31	교부세과
50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2010.12.23	지방세정책과
51	지방세법 시행규칙	1950.03.28	부동산세제과
5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2017.03.28	지방세정책과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0.12.23	지방세특례제도과
5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09.07	재정협력과
55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2008.03.11	회계계약제도과
56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2000.03.02	재정정책과
5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2006.07.26	재정정책과
58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2006.10.17	회계계약제도과
5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6.01.02	회계계약제도과
60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표시에 관한 규칙	2006.07.19	조직기획과
6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994.12.31	자치분권제도과
6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2022.01.21	자치분권지원과
6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989.01.07	재정협력과
64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1992.08.06	재정정책과

연번	법령명	제정일	소관 부서
65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08.07	지방소득소비세제과
6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07.01	지역금융지원과
67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1967.12.30	자치행정과
68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시행규칙	2009.03.26	지진방재정책과
69	청원법 시행규칙	2021.12.22	민원제도과
70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2006.05.10	재난보험과
7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991.09.30	행정제도과, 정보공개과
72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1999.12.09	자치분권지원과
73	행정사법 시행규칙	1976.05.11	행정제도과
74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972.11.10	법무담당관
7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07.26	성과관리담당관
76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1977.04.22	지방인사제도과
77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1997.12.30	행정제도과
78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975.01.20	자치분권지원과
79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85.07.13	비상대비지원과
80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2022.08.02	법무담당관
81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2022.12.30	디지털정부기획과
8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2022.01.04	재난안전산업과
83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칙	2023.01.26	재정정보화사업과
84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01.17	재난자원관리과

■ 훈령 : 139건

(24.12.31. 기준)

연번	행정규칙명	발령번호	소관 부서
1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0호	감사담당관
2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88호	공무원단체과
3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시행세칙	제54호	운영지원과
4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6호	사회통합지원과
5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95호	재난안전조사과
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182호	디지털기본정책과
7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을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38호	복구지원과
8	국외 파견 공무원 활용 및 지원지침	제179호	행정한류담당관
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86호	사회통합지원과
1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칙	제186호	사회통합지원과
11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제304호	국제디지털협력과
12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57호	기업협력지원과
13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제186호	민방위과
14	민방위대 검열규정	제232호	민방위과
15	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0호	민원제도과
16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호	성과관리담당관
17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0호	환경재난대응과
18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38호	재난영향분석과
19	사무관리규정시행세칙	제14호	정보공개과
20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제163호	새마을발전협력과
21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210호	수습지원과
22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제15호	예방안전제도과
23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운영규정	제132호	안전문화교육과
24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6호	재난안전데이터과
25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호	안전정책총괄과
26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136호	안전감찰담당관
27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제191호	복구지원과
28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4호	자치분권지원과
29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4호	재난안전조사과
30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335호	재난대응정책과
31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192호	복구지원과
32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	제38호	재난경감과

연번	행정규칙명	발령번호	소관 부서
33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86호	감사담당관
34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6호	디지털정부기획과
35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1호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36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333호	조직기획과
37	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11호	상훈담당관
38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319호	지방세특례제도과
39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196호	주소생활공간과
40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236호	주소생활공간과
41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30호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42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343호	재난자원관리과
43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78호	재난구호과
4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180호	복구지원과
4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제49호	복구지원과
46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1호	위기관리지원과
47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4호	지진방재관리과
48	지구촌 새마을 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호	새마을발전협력과
49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211호	지방공기업정책과
50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325호	부동산세제과
51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49호	부동산세제과
52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1호	지방세정책과
53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제318호	지방세특례제도과
54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317호	지방세특례제도과
55	지방인사혁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86호	지방인사제도과
56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제332호	회계계약제도과
57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제169호	회계계약제도과
58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6호	자치행정과
59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312호	재정정책과
6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11호	자치행정과
6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9호	회계제도과
62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심의위원회 규정	제36호	회계제도과
63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제324호	재정협력과
64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342호	재정협력과
65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	제186호	자치행정과
66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62호	자치행정과

연번	행정규칙명	발령번호	소관 부서
67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74호	지진방재관리과
68	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제339호	자치행정과
69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365호	청사보안기획과
70	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63호	사회재난대응총괄과
71	행정사 자격심의회위원회 운영규정	제211호	행정제도과
72	행정안전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211호	기획재정담당관
73	행정안전부 계약심의회위원회 규정	제211호	운영지원과
74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206호	법무담당관
75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73호	주소생활공간과
76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1호	감사담당관
77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233호	감사담당관
78	행정안전부 공무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14호	성과관리담당관
79	행정안전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86호	감사담당관
80	행정안전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309호	미래전략담당관
81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3호	국제협력담당관
82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호	법무담당관
83	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216호	운영지원과
84	행정안전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제186호	성과관리담당관
85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	제344호	성과관리담당관
86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5호	운영지원과
87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186호	법무담당관
88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8호	운영지원과
89	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2호	인사기획관
90	행정안전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	제106호	감사담당관
91	행정안전부 부패신고자 보호규정	제186호	감사담당관
92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처리지침	제217호	운영지원과
93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320호	성과관리담당관
94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75호	재난안전연구개발과
95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86호	디지털안전정책과
96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323호	운영지원과
97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	제201호	감사담당관
98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운영심의회 규정	제84호	안전정책총괄과
99	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	제32호	안전감찰담당관
100	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제186호	안전문화교육과

연번	행정규칙명	발령번호	소관 부서
101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329호	기획재정담당관
102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제330호	기획재정담당관
103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	제326호	성과관리담당관
104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331호	인사기획관
105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제186호	감사담당관
106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209호	감사담당관
107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11호	성과관리담당관
108	행정안전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65호	법무담당관
109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021-215호	미래전략담당관
110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08호	운영지원과
111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207호	데이터정보화담당관
112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340호	미래전략담당관
113	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6호	비상안전기획관
114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61호	재정정책과
115	행정안전부 직원휴양시설 이용규정	제1호	운영지원과
116	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2호	감사담당관
117	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345호	성과관리담당관
118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118호	데이터정보화담당관
119	행정안전부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규정	제82호	운영지원과
120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54호	운영지원과
121	행정안전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70호	행정제도과
122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6호	환경재난대응과
123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0호	미래전략담당관
124	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51호	사회재난대응총괄과
125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334호	미래전략담당관
126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322호	지방규제혁신과
127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88호	부동산세제과
128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293호	재정정보화사업과
129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258호	복구지원과
130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13호	재난관리정책과
131	자율기구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5호	성과관리담당관
132	자율기구 재난안전전략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1호	성과관리담당관
133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37호	부동산세제과
134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41호	재정협력과

연번	행정규칙명	발령번호	소관 부서
135	협업별도정원 운영을 위한 협업직무에 관한 규정	제347호	조직기획과
136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제한에 관한 규정	제353호	감사담당관
137	정부의전행사 근무수당 지급 규정	제369호	의정담당관
138	행정안전부 공무원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374호	성과관리담당관

■ 예규 : 87건

(24.12.31. 기준)

연번	법령명	발령번호	소관부서
1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제266호	재정협력과
2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155호	공공데이터정책과
3	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	제1호	정보공개과
4	국제관계대사 운영지침	제155호	지방인사제도과
5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	제212호	기록관리교육센터
6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	제264호	예방안전제도과
7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제200호	주소생활공간과
8	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	제261호	비상대비자원과
9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제155호	행정정보공유과
10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100호	행정정보공유과
11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제105호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12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	제11호	민원제도과
13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262호	비상대비자원과
1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241호	지역디지털협력과
15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제63호	정보공개과
16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06호	공공서비스통합과
17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	제91호	지역디지털협력과
18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256호	민원제도과
19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제275호	재난대응정책과
20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238호	공공서비스혁신과
21	입체도로 등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세칙	제163호	주소생활공간과
2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169호	재난영향분석과
23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155호	지역디지털협력과
24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제189호	지방인사제도과
25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제111호	재난자원관리과
26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 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155호	재난정보통신과
27	재난대비훈련지침	제173호	재난대응훈련과
28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268호	상황총괄담당관 재난정보통신과
29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80호	복구지원과
30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2호	재난영향분석과
31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40호	디지털정부기획과
32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92호	디지털정부기획과

연번	법령명	발령번호	소관부서
33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01호	디지털기반정책과
34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34호	행정정보공유과
35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37호	행정정보공유과
36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제269호	조직기획과
37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제62호	조직진단과
38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제68호	심사지원과
39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호	주민과
40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265호	상황총괄담당관
41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제154호	복구지원과
42	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운영지침	제155호	지방인사제도과
4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제240호	지방인사제도과
44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제258호	지방인사제도과
45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186호	지방인사제도과
46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제254호	지방인사제도과
47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74호	지방인사제도과
48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276호	지방인사제도과
49	지방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 특례지침	제1호	지방인사제도과
50	지방교부세 감액 세부운영기준	제194호	교부세과
51	지방교부세조정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2호	교부세과
52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제190호	지방인사제도과
5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73호	재정협력과
54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	제444호	지방공기업정책과
55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18호	지방세정책과
56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74호	지방세정책과
57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제71호	재정정책과
58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제171호	재정정책과
59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제10호	재정정책과
60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제155호	지역디지털협력과
6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77호	회계계약제도과
6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72호	회계계약제도과
63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제132호	재정정책과
64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제56호	재정정책과
65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35호	지방인사제도과
6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제151호	회계제도과

연번	법령명	발령번호	소관부서
67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3호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포털개발팀
68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제58호	행정정보공유과
69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	제178호	혁신기획과
70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107호	국제협력담당관
71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	제153호	국제협력담당관
72	행정안전부 국제개발협력 사업 내부평가지침	제278호	국제협력담당관
73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제263호	비상대비자원과
74	행정안전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181호	홍보담당관
75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1호	행정제도과
76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84호	운영지원과
77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60호	행정정보공유과
78	지방교부세위원회 운영규정	제228호	교부세과
79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제226호	운영지원과
80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	제224호	민원제도과
81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255호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82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259호	예방안전제도과
83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270호	법무담당관
84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규알코드에 관한 규정	제267호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85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99호	감사담당관
86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303호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87	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제304호	운영지원과

2024 행정안전백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발행일	2025년 9월 30일
발행처	행정안전부
주소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215호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화	044-205-1408
팩스	044-205-8717
인쇄	(사)에스디윌크 서울지사